#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차 현 숙



#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차 현 숙

#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br> The Study on Reorganization of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연구자 : 차현숙(부연구위원)<br>Cha, Hyun-sook

2012.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square$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 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 하여 국가사회적 뒷받침의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교육 관 계 법령이며, 교육 관계 법령의 근간은 헌법임
$\square$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의 교육제도에 대한 국가 정 책을 담고 있는 교육 관계 법령은 현재 약 60 여개의 법률 및 180 여개의 하위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square$ 교육 관계 법령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개별법상의 규율 관계를 입법체계정비의 관점에서 재정립하여 법령을 간소화하고 집행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 을 제고하고 교육 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square$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현황
○ 현행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육법 시대를 거쳐 교육기본법 제정 및 교육 관계 법률 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교육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 및 단계별 학교 교육에 관한 법 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이 있 으며, 교원에 관한 법률, 교육 관련 지원•진흥 법률 등으로 구 성되어 있음

○ 교육 관계 법령은 그 양적 규모의 방대함과 더불어 특별법•특 례법의 증대, 지원•진흥법제의 증가, 각종 기관 설치 근거 법 률의 증가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법률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의 수도 다른 분야의 법령에 비하 여 많은 것으로 나타남
$\square$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
○ 교육기본법의 역할 부재

○ 특별법•특례법의 증가

○ 시혜적•특혜적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원•진흥 관련 법령의 증가
○ 다수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 존재
$\square$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 특별법•특례법의 정비

- 특별법•특례법 중 현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혜적•은사적 특별법•특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이 재정 당시와 같이 현재에도 실효 성을 가지는지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존폐를 결정하고 폐지 필요성이 있다면 폐지
- 지원•진흥의 기준을 교육기본법 또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 하여 법률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 고려

○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정비

- 특수법인을 설치하는 근거 법률이 약 14 개로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국립학교의 공공성과 연계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기관과의 형평 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검토 필요

○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 관련 사항

- 법률에 명시적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개정시 위임근거 마련 혹 은 폐지 필요
-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 사항 반영 필요
-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요 한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여야 함


## III. 기대효과

$\square$ 교육 관계 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등을 발굴하 여 입법체계에 적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향후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에 활용함

2 주제어 :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 관계 범령, 교육기본볌, 초•중 등 교육볌, 고등교육볍, 입볍체계 정비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square$ Education means the entire process and measure to teach and learn all acts necessary to conduct human life,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ork on the basis of state social support for education, and the Constitution is the foundation of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quare$ Embodying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 right to education, independence, expertis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etc., and containing national policy for education system,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urrently consist of about 60 acts and more than 180 subordinate statutes.
$\square$ This study, in terms of maintenance of legislation system, seeks to redefine unnecessary or excessive regulations on individual laws in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reby simplifying laws and regulations and gaining the efficiency of the executive system, to uplift the transparency of educational adminstration, and to improv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contribute the efficient allocation of education finance.

## П. Main Content

Current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o Current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reached today, through Education Act, with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maintenance of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onsist of Framework Act on Education, acts on step by step schooling-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Higher Education Act, and Lifelong Education Act, acts on teachers, and acts on education-related support and promotion.

O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characterized by the increase of special act and exceptional case act, the increase of legislations on support and promotion, and the increase of legal grounds on the setup of various institutions in addition to the breadth of the quantitative scale.

- The subordinate statutes embodying acts appear to be a lot compared to those of other sectors.
$\square$ The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 The Absence of the role of Framework Act on Education

O The Increase of special act and exceptional case act

- The Increase of laws on the setup of the dispensational or preferential institutions
- The Increase of failed laws to achieve the purpose on support and promotion
- The Presence of a large number of statutes whose authorization is unknown
$\square$ The Reorganization of legislation system in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The Reorganization of special act and exceptional case act
- The Review of abolition of the law if the purpose of that is currently achieved
- The Necessity not to enact dispensational or preferential special act and exceptional act
o The Reorganization of laws on education support and promotion
- With the analysis and the evaluation on the current effectiveness, the decision on maintenance or abolition, and if necessary, the abolition
- The plan to rebase the standard of support and promotion in Framework Act on Education, or in a separate act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laws
- The Reorganization of legal grounds on the institution establishment
- The presence of about 14 legal grounds on the special corporation establishment
- The necessity of the review regarding the fairness of special support related to education's independence,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public of national school, among the same qualified other institutions

O The enactment of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authorization-related matters

- If no explicit authorization in law, the necessity of the applicable provisions or the abolition, when revising the law
- If the applicable provisions in the repealed law, the need to reflect in the amendment
- When the delegated matters as Municipal Ordinance are stipulated in Ordinance of Ministry, if necessary, the delegated matters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through the law revision.


## III. Legal Improvements

$\square$ This study is to pick out the case that the basis of delegation provisions is not clear, to improve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fit for legislation system, and to make use of future maintenance of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2) Key Words : right to education,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Higher Education Act, Maintenance of legislation system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7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 ..... 20
제 3 절 연구추진방법 ..... 21
(1) 국내외 관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 ..... 21
(2) 법령조사 및 분석 ..... 23
(3) 현안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숍 ..... 24
(4) 입법체계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24
제 4 절 연구의 구성 ..... 24
제 2 장 교육 관계 법령의 법원과 연혁 ..... 27
제 1 절 교육 관계 법령의 연혁 ..... 27
I. 교육법 제1기(1948년~1960년) ..... 27
ㅍ. 교육법 제2기(1960년~1961년) ..... 29
III. 교육법 제3기(1961년~1979년) ..... 29
IV. 교육법 제4기(1980년~1986년) ..... 31
V. 교육법 제5기(1987년~1992년) ..... 32
VI. 교육법 제6기(1993년~1997년) ..... 32
제 2 절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 34
I.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 34
ㅍ.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의 연혁 ..... 35
III.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 ..... 38
IV.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요내용 ..... 39
V.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 41
VI.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 ..... 45
제 3 장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 49
제 1 절 교육 관계 법률의 현황 ..... 49
제2 절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 전반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53
I. 특별법•특례법의 증대 ..... 54
ㅍ.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의 증대 ..... 67
III.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증대 ..... 75
IV. 하위법령 제정과 위임 관련 사항 ..... 87
제 3 절 교육 관계 법령 분야별 문제점 및 정비방안 ..... 96
I . 교육기본법 ..... 96
ㅍ. 조직 관련 법령 ..... 112
III. 학교 교육 관련 법령 ..... 117
IV. 학력 인정 관련 법령 ..... 139
V .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 142
VI. 사립학교 관련 법령 ..... 149
VII. 교원 관련 법령 ..... 156
VII. 장학 관련 법령 ..... 163
IX. 교육 재정 관련 법령 ..... 165
X. 평생교육 관련 법령 ..... 174
XI. 학교보건 - 생활 관련 법령 ..... 181
제 4 장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 185
제 1 절 표적집단심층면접 실시 및 결과 ..... 185
I. 표적집단심층면접(FGI) 개관 ..... 185
․ 표적집단심층면접시 사용한 인터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187
III. 표적집단심층면접의 주요내용 ..... 190
IV. 분석 및 정리 ..... 196
제 2 절 교육 관계 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 197
I. 조사의 배경 ..... 197
ㅍ. 조사목적 ..... 197
III. 조사의 개요 ..... 198
IV. 조사 결과 요약 ..... 200
V . 결과 분석 ..... 205
제 3 절 결론 및 요약 ..... 266
참 고 문 헌 ..... 271
《부 록》
부록 1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주제별 분류표 ..... 281
부록 2 : 전문가 조사 통계표 ..... 297
부록 3 : 전문가 조사 설문지 ..... 34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사람은 태어나서 교육받고 훈련되면서 사회적 존재로 거듭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때 교육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 삶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교육（敎育）${ }^{1}$ ）은 사전적으로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 전체를 일컫기도 한다．다시말해서 인간의 본질과 존재가치는 평생을 통한 부단한 학 습과 창조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실현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이다．인류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이러한 학습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학습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인류문화의 향상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가운데 개인의 차이가 고려되면서 이루어져야하며，타고난 권리로서 향유해야 할 성질의 것 이다．${ }^{2)}$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교육의 역사는 오랫동안 군왕을 위하 여 군왕이데올로기와 그에 충실한 생산자나 병사가 되는 충군교육단 계를 거쳤고，근대에 이르러서야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의 자유를 획득하였으며，극히 최근에 이르러 비로소 교육이 사람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생각，즉 교육권에

[^0]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3）하고 있다．또한 교육은 백년 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있어서 인재양성 수 단이 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연관을 갖는 분야 중 하나이다．이 와 같은 교육에 관하여 국가사회적 뒷받침의 근거가 되는 것이 교육 관계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체계상 교육 관계 법령의 근간은 헌법이라 할 것이다．우리 헌 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 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및 민주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격 완성 을 위한 전제가 된다．우리 헌법은 또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 학의 자율，평생교육 진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제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담고 있는 것이 교육 관계 법령이다．교육 관계 법령 중에서「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 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교육 관계 법령은「교육기본법」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 여 먼저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유아교육，초•중등교육，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으며，교육조직의 관점에서는 교육 공무원•사립학교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3）정태수，독자적 법리로서의 교육권론，교육법학 창간호，대한교육법학회，1988，1－2면．

나아가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급식•보건•시설-안전 등 개 별 영역별로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관계 법 령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이 약 60 여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 며, 관련 하위법령에 더하여 교육 관련 영역별 행정규칙 및 자치조례 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기관별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별로 별도로 운영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서 각 학교별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 육의 보편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관련 조직 법률에 있어서도 체 계화 내지 통합화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 어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급식 - 보건 - 시설 - 안전 등 개별 영 역별로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서 각 법률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예산 및 조직의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 다. 교육에 관한 지원 및 진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제•과학• 법 •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또는 영재•장애인 • 공무원 • 재외국민 등 각 직군별로 지원과 진흥에 관한 개별 법률을 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교 육자치에 따른 교육조례와 교육관련 행정규칙의 관계 등 교육 사무에 관한 권한관계가 입법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사 무배분의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방향성을 입법적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 관계 법령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개별법상의 규율관계를 재정립하여 법령을 간소화하고 그 집행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 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교 육 관계 법령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물론 모든 영역별 관련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의 편 의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규정만을 두고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에 과도

하게 위임하고 있어 교육행정의 법치주의를 과도하게 저해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함으 로써 교육 관련 법령 간소화 및 행정체계 개편을 도모하며, 교육자치 와 관련하여 교육사무의 권한관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하여 실 질적인 교육자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교육 관계 법령을 대상으로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개별법상의 규율관계를 재정립하여 법령을 간소화하고 그 집행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 분에 기여하도록 관련 법제의 입법체계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야별, 영역별로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 관계 법제는 교육제 도, 교육 조직, 교육재정, 교육자치 등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법 및 교육에 관한 지원•진흥법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기관별 법령과 학교별 운영 관련 법령은 법률 상호간에 긴밀한 관련성을 가 지고 있지만 그 연계성 확보, 예산•조직의 중복 등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육 관계 법령의 수가 많고 복잡하게 난립되어 있어서 입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방안 도출 을 통하여 교육 관계 법령의 간결성•효율성 확보 및 행정체계의 합 리적 개편까지의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관련 법령•조직의 간결성•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제로의 교육 관계 법령의 전환을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로서 유럽연합, 영국, 프랑 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교육 관계 법령의 현황 및 법제 도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입법체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관계 법령의 분야별•영역별 입법체계 정비방안을 도출하여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자 한다. 교육 관계 법령의 분야별•영역별 입법체계 정비방안 도출 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입법체계 정비방안의 현실적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 제 3 절 연구추진방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 법을 사용한다.

## (1) 국내외 관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 및 외국의 선행 연구 및 교육 관계 법령과 관련된 문헌에 대한 1 차적 분석을 통하여 교육 관련 법제의 기본 이론 및 입법론적 과제를 분석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의 교육 관련 법령의 현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 개선에 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개선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다.

| $\begin{aligned} & \text { 번 } \\ & \text { 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연구자 } \\ & \text { 및 제목 } \end{aligned}$ | 연구목적 | 주요내용 | 비 고 |
| :---: | :---: | :---: | :---: | :---: |
| 1 |  | 교육입 법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 토를 통하여 문 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입 법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 교육입법정책의 변찬 <br> - 교육입법정책에 대 한 인식 <br> - 외국의 교육입법정책 <br> - 교육입법정책의 개 선방안 | 입법정책적 관점 에서 교원인식조 사 등 설문조사 방법 및 비교법 적 연구를 통하 여 교육 입법정 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 2 | 교 육 법 제 정비 방안 연 구(허종 렬/1994) | 교육기본법 제정 에 따른 교육법 제의 전반적인 정 비방안을 제시 | - 교육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 헌법과 의 관계 등을 조명 - 교육관련 법령의 전 반적인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 견을 제시함. | 교육법의 일반이 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비교법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 3 |  | 교육법의 전체 적인 구조와 틀 을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분석 하고 그 문제점 을 지적 | - 헌법과 교육법의 관계 <br> - 교육의 주체의 변화 에 따른 교육권과 학습권과의 관계 <br> - 교육의 자주성 <br> - 교원지위법정주의 <br> - 재임용제도와의 개념 정립 | 교육법 체계내 에서의 문제점을 판례 분석과 연 계하여 살펴봄 |
| 4 | 교 육 관 계법 개 정 방 향 과 개정 안 (안 재 욱 외 /2011) | 교 육 관 계 법 의 주요 쟁점을 정 리하고 그에 대 한 개정방안을 제시함 | - 한국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br> - 교육관련 경제원리, 철학, 헌법 <br> - 교육 부문의 주요 쟁 점 <br> - 교육관계법 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 개별적인 교육 관계 법령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있지만 전 체 교육 관계 법 령의 체계상 문 제점에 관한 논 의가 없음 |

이 밖에도 교육 관계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무수 히 많은 논문 및 연구자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선행연구로서 위의 자료를 선정하여 살펴본 것은 교육 관계 법령 전반의 입법체계를 살 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 합하는 선행연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의 관점에서 입법화의 방향을 점검하거나 총론적인 수준에서 입법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머무는 연구로서 교육 관계 법령 전 반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 대한 입법체 계 개선에 직접 적용가능한 실용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교육 관계 법령에 있어서의 위임 입법의 적정성과 체계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관한 대안을 마 련하고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제 개정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인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시적으로 개별 단위의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입법체 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개별 단위의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연구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 (2) 법령조사 및 분석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분석을 위하여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 관계 법령의 현황에는 헌 법-교육기본법-개별 단위의 교육법으로 연계되는 수직적 관련성 검 토•분석과 개별 단위에서의 위임관계 검토•분석을 병행하기로 한 다. 또한 수평적 교육 관계 법령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입법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행 교육 관계 법령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하며, 관련 법령의 입법체계상의 문제점 및 그로 인한 집행상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기로 한다.

## (3) 현안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솝

담당공무원 및 관련 분야 연구자 등과 교육 관계 법령 관련 현안 분석 및 입법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소관부처 담 당공무원 및 관련 분야 연구자, 전문가 등 자문 및 의견 수렴을 통하 여 보다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 (4) 입법체계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분야별로 도출된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개선안에 대한 전문 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입법체계 개선안에 대한 점검을 받아 보다 실 질적인 입법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 관계 법 제 전문가 및 교육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조사 및 웹기반의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 사의 결론은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제 4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헌 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교육 관계 법령의 연혁을 제2장에서 살펴본 다음 제3장에서는 현행 교육 관계 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분야별 현황을 확인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약 60 여개의 교육 관련 법

률을 영역별•분야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과 체계를 조사하여 분석한 후 그 체계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조사•분석의 대상 이 되는 주요한 법률은「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등이며， 나아가 교육기관별 운영에 관련된 규제를 담고 있는 관련 법령 및 영 역별 교육 관련 지원•진흥관련 법령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교육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및 부령의 위임관계를 조사•분석 하여 확인함으로써 입법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제4장에서는 교육 관례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설문조사（전문가 의견 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이는 연구 결과로서의 입법 체계 정비방안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제 2 장 교육 관계 법령의 법원과 연혁 

## 제 1 절 고육 관계 법령의 연혁

## I. 교육법 제1기(1948년~1960년)

1948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이후 한국의 새로운 교육체제의 모 색은 1946년 3월 29일 미군정 법령에 의한 학무국이 문교부로 바뀌고 중앙 및 지방의 행정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이 공포되면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교육체제 형성은 한국교육 위원회 및 조선교육심의회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에 의 하여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채택되었으며, 6-3-3-4제를 근간으로 하 는 신학제 및 교육자치제 등이 뒤에 제정된 교육법에 반영되었다.4)

1948년 7월 17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통치체제의 근간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제헌헌법은 제헌국회의 신 중한 심의를 거쳐 제 16 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이라는 제 명하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수권을 선언하였으며, 무상 의무교육, 교육의 국가관리 및 법률주의 등에 대 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 정교 분리 및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의 기본적인 규정도 두게 되어 교육관한 법 령 제정시 근간을 이루는 교육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이 완성되었다.

1948년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문교부가 설치되어 명실상부 교육정책을 집행하게 될 조직까지 갖추게 되었다. 또한 8월 12 일에는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었으 며, 동시에 교육구의 설치와 공립학교 재정 경리에 관한 법령이 공포 되는 등 교육에 관한 법령의 기초작업들이 시작되었다.

[^1]이후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교육법」이 제정되었다．정 부수립 이후 교육분야의 시급한 사업으로 교육의 기본정책과 운영원 칙을 정하는 교육법의 제정이 요구되었던바，새로이 제정된 교육법 제 1 조에서는＂홍익인간의 이념＂을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 재차 확 인하였다．1949년 교육법은 전문 및 제 10 장 177 개조 및 부칙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교육의 목적 및 방침 등을 비롯한 모든 학교 법•제 도를 망라한 통일 교육법제로서 군정당시 교육위원회와 교육심의회 등이 제정된 교육목적과 방침，6－3－3－4제 학교제도를 비롯한 미군정안 으로서의 국립대학안과 교육자치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그러나 동 법률은 $6 \cdot 25$ 사변으로 인하여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가 1952년 4월에 이르러서야「교육법시행령」공포로 정상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 법률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다．이후 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한 법령들이 공포되었다．1953년 「교육공무원법」，「국립학교설치령」，「교육공무원징 계령」，「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교육공무원임용령」，「교 수자격인정령」 등 인사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으며，1954년에는 「국민 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교육과정시간배상기준령」과 「교육공 무원보수규정」이 공포되었다．1955년을 기점으로 「중학교교과과정제 정의건」과 「고등학교및사범학교교과과정제정의건」 그리고 「대학설치 기준령」이 제정되어 교육법 제정으로 시작된 교육법제 체계화 작업이 교육내용 및 교육 형식의 측면에서 필요최소한의 조건을 정비하게 되 었다고 할 것이다．5）또한 1958년 8월에는「교육세법」과 「의무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제정되었다．이는 교육시설의 복구와 의무교육 완성 6개 년 계획의 추진으로 증가된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공교육비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2]
## П. 교육법 제2기(1960년~1961년)

4-19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따라 모든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시책과 제도를 민주화하기 위한 문교시책의 기본방침으로서 첫째, 혁 명정신에 입각한 문교정책을 구현함에 있어서 민주적 제도를 확립하 고 민주적 인간관계를 조성함으로써 학원을 민주화하며, 교육자치제 를 확립하여 교육의 중립화를 기하고, 국민도의의 앙양과 건전한 사 회기풍 진작에 힘쓰며, 둘째, 교육의 질적 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과학 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도행정을 강화하며 중앙집권의 행정 지 양과 교육내용의 쇄신으로 교육과정을 개폐하고 생활지도를 체계화하 여 과학•기술 및 직업교육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국민문화의 진흥 을 위하여 창의적 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적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 며, 문화행정의 쇄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제도에 변화를 가질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육법체제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었다.6)

## III. 교육법 제3기(1961년~1979년) ${ }^{7)}$

1961년 5•16군사혁명 이후부터 1979년 정부의 종식까지의 시기이 다. 이 시기의 초기는 혁명을 주도하였던 군인들에 의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특권적인 기관이 구성되어 헌법과 헌법기관의 기능 및 역할이 정지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이 혁명입법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때이다. 5•16 이후 제정•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9.1. 법률 제708호)」에 의해서 혁신적인 교육정비가 이루어졌다. 문교재건

[^3]자문위원회의 설치，학교정비를 위한 학교•학과의 통폐합 및 학급• 학생수의 재조정， 2 년제 교육대학의 신설 및 대학교원 입용시 실적 심사제의 채택，교원의 노동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및 정년 5년 단축， 대학 학사 학위의 국가고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 정비를 위한 후속 법령으로는 「중학교•고동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조치법」，「학사자격 고시령」，「학교정비 기준 령」，「유치원 시설기준령」，「사립학교 교원 징계령」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제 3 공화국 헌법 제 27 조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 천명되었으며，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사립학교법」이 1963년 제정되었다．나아가 「산업교육진흥법（1963． 9．19．법률 제 1403 호）」，「도서－벽지교육진흥법（1967．1．16．법률 제 1870호）」，「과학교육진흥 법（1969．3．30．법률 1927호）」 등 각종 진흥법 이 제정되었다．학교교육과정 및 교원의 관리를 위한 법령도 계속하 여 제정되었는데，1964년 「교원자격검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 1966년「인문계 및 실업계고교 교육과정령」，1967년「학교보건법」，「교 육과정령」，「교과용도서저작검인정령」，1968년「교원교육원령」，「학교 교구•설비기준령」，「대학입학에비고사령」，1969년「학생군사교육실시 령」，1970년 「대학시설연도별확충기준령」，1972년 「교육공무원수당규 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이 그것이다．
이후 교육에 대한 국가관리 체제는 1973년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졸업자 대학편입자격 검정고시령」，1974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 실시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1977년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등의 제정을 통하여 강화되었으며，1971년「교육정책심의 회 규정」，1975년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규정」，1978년 「전문대학 설 치기준령」 및 1979년 「전문대학 교수재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등을 통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질적 관리 정책이 시도되었다．또한 1973년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법률 제2616호）」에 근거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어 교육목적•교육내용•교육방법에 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체제의 개발을 시 작하였으며，1978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이 제정되어 국 가의 국민정신 교육강화 취지에 부응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1974년 「고등학교 방송통신교육 과정 설치기준령」，1977년 「기능대학법」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1979년 「생활보호대상자 중 학교과정 수업료 지급규정」이 제정되는 등 기간학교 이외의 학교교육 및 특수한 영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작되었다．

## IV．교육법 제4기（1980년～1986년）

19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는「7•30 교육개혁조치」라고 불리는 학 교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그 핵심적인 내용 은 무엇보다도 과외금지 조치였으며，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되었고，교 육방송을 실시하였으며，대학입학인원의 확대 및 교육과정의 축소• 조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이후 1980년 12월 27일 국민투 표로 개정된 제8차 개정헌법은 교육조항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일 례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헌법 제29조제5항）하여 「사회 교육법」제정의 헌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1981년「학교급식법」，「대 학입학고사령」，「교육세법」 등이，1982년에는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학교시설사업촉진법」，「유아교육진흥법」 등이 제정되었으며，1983년 에는「학교운동장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1984년 「한국교원대학 교 설치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었고，1985년「교육개 혁심의회규정」，「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8）

8）공병호，앞의 글，20－21면；안기성，앞의 글，189－191면．

## V．교육법 제5기（1987년～1992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의 교육정책자문회의가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발족하였으며，1993년까지 존속하였다．교육정책자문회의는 첫 째，개성과 개인차의 존중，둘째，교육체제의 대폭적인 개선，셋째，교 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넷째，쾌적한 학교환경 조성，다섯째，우수교원 의 확보，여섯째，교육재원의 확충을 교육개혁의 6 개 항목으로 제시하 였다．제6공화국 하에서 1989년「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사학진흥 재단법」，「한국장학회법」이 제정되었고，1990년에는 「지방교육양여금 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1991년에 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 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등이 제정되었다．제6공화국의 출범이후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교육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종래 합의제 집행기관이던 교육위원회가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로 분리되었으며，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9）

## VI．교육법 제6기（1993년～1997년）

문민정부에서의 교육 관련 법령은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추진되었으며，가장 대표적이고 커다란 변화는 바로 1997년에 「교육 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체계로 재정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기존의 「사회교육법」을 개정한 「평생 교육법」이 1999년 발효되면서 현행 교육3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교육3법 체계는 교육활동에 관한 법규범 제정시에 교육에 관한 기본원

[^4]칙을 정한 기본법, 교육의 영역에 따른 학교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을 두어 세 유형의 조화를 통해 구조화된 법률 체계를 의미한다.10) 교육 의 기본적인 사항이 교육기본법에 규정되고 그로부터 교육 관련 법령 의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는 외관상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내용 에 있어서는 기존의 교육법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에 관련되는 규정들 별도로 제정하고 남은 부분이 모두 교육기본법에 수록되는 형 태로의 재편이어서 교육기본법이 관련 교육법을 모두 포괄하여 구속 하는 올바른 의미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도 있었다.11)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교육기본법은 총칙, 교육당사자, 교육의 진흥등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29 개조로 구성되어 있 었다. 1997년 교육기본법은 헌법의 교육관련 조항을 구체화한 「교육 헌법」으로서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교육법규와 사회교육법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진흥하고 장려하는 특수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교육, 학술문화의 진흥, 사학의 육 성, 학교보건, 장학제도에 관한 개별법 등으로 교육법을 체계화함으로 써 교육에 관한 입법과 적용 및 해석의 근간이 되고, 교육제도의 근 거와 운영 지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 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5]
## 제 2 절 헌법상 고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 I.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우리 헌법은 제31조12)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 헌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것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연인인 개인이 각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 하게 요구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 한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은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실 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공동체 전체의 지식, 문명, 정보 등의 총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데도 이바 지한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 적인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인 각 영역에서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직업생 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고, 사회공동체에 문화적이고 지적
12) 헌법 제 31 조 제 1 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 하고 있고, 제 3 항에서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규정하고 있다. 제 4 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제 6 항에서는 교육제도 법 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 민 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이며,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 권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때에 비로소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1991. 2. 11. 90헌가27 참조.

인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 는 문화창달을 촉진시키며,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 법치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으로서의 요건과 자질을 어릴적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능 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실 질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국가 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13)한다 고 할 수 있다.

## П.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의 연혁

## 1. 근대적인 "교육권" 도입

우리나라가 구 교육의 탈을 벗고 근대교육을 도입한 후 만든 국가 수준의 교육법규로는 1895년의 소학교령(고종 칙령 제145호, 1895.7.19) 이 처음이다. 그 후 1906년에 보통학교령(칙령 제44호, 1906. 8. 27)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설치하였고(제4조), 만 8세부터 12세까지 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1조). 이와 같은 두 칙령은 불 완전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의무교육법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는 것 과 근대적 교육법제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895 년 소학교령은 1890 년 일본의 소학교령을 모방한 것이었 다. 일본의 소학교령은 또한 독일의 1862년 개정 Gotha 교육령에서부 터 기인하였고, 1875년 Sachen Meiningen 공국의 Volks Schulgesetze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모방한 것이었다. 이러한 계수에 따르면 구 한말의 소학교령은 일반적인 법률의 계수와 유사하게 독일-일본-한국 의 순으로 영향을 받아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일본에 주권 을 빼앗긴 191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일본의 식민지 교육법제가 시행

[^6]되었으며, 국외에서는 상해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 교육법 제의 정비가 이루어져가고 있었다. 임시정부 초기 헌법은 교육의 의 무조항을 규정하였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 즉 권리로서의 교육에 대 한 규정도 두고 있다. ${ }^{14)}$

## 2. 제헌헌법 $\sim$ 제 2 공화국 헌법

제헌헌법은 상해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임시헌법에서 명문화해 온 국민의 학습권을 헌법적 권리로 확정하여 규정하였다. 제헌헌법 제 16 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 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 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기관의 국가감독과 교육 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였다.

제헌헌법은 최소 초등교육 6년간의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실현하 고 점차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제헌헌법에서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관한 제 16 조 제2문은 교육법 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후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다.

제2공화국 헌법은 제헌헌법과 변화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초등 교육의 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을 유지하였다.

## 3. 제 3 공화국 헌법

제3공화국 헌법은 기존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 면서, 제 27 조제 3 항에서 의무교육 무상조항, 제 4 항에서는 교육의 자주 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제5항에서는 "교육제 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교육제 도 법정주의에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시키고 구 체화하였다.
14) 김윤섭, 앞의 책, 25-26면.

## 4. 제4공화국 헌법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제27조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범위가 초등교육에 국한되었던 제헌헌 법이후 유지되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 5. 제5공화국 헌법

제 5 공화국 헌법에서는 제 29 조 제 4 항에 기존의 교육의 자주성과 정 치적 중립성의 보장에 전문성이 추가되었다. 또한 일반적 보장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 다. 그리고 제5항에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여 일반적인 제 도교육 이외에 성인학습과 평생학습시대의 도래를 예견하여 비제도권 교육도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6항에서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지 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단순히 교육제도에 대한 법정주의에서 학교교육, 교육재정, 교원지위, 평생교육에 관한 법정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 6. 현행 헌법

현행 헌법은 제 31 조 제 4 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 립성 외에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였다. 이는 1980년 이후의 사 회적 분위기가 자율화•민주화 추세로 변화함에 따라 교육분야에서도 민주화•자율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로 인하 여 교육에 관한 교육 당사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이 재 정립되었고,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장하 도록 하였다.

## III.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다. 교육 을 받을 것을 국가 또는 제3자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으 로 기능하는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자유권으로 인정 되는 부분은 구체적인 권리이며, 국민은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이에 대 한 침해시 구제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을 능 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가 국가에 대하여 교육의 여건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사회권으 로서의 측면에서 보장되는 내용은 헌법을 근거로 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법률에 의하 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 }^{15)}$ 또한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의 생활능력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생존권적인 성격을 가지며, 교육을 통해서 생존의 기 본적인 조건인 노동의 의욕, 능력과 그 필요성의 자각을 습득하게 되 므로 사회적 생존권의 기초적인 권리로 평생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 다.16) 즉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 제도 속에서 다양한 교육을 선택함으로써 인격권의 보장 ${ }^{17 \text { )을 받을 수 }}$ 있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정종섭, 앞의 책, 604 면.
16) 이형석, 헌법상 교육제도법정주의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3-34면.
17) 이재명, 교육을 받을 권리, 공법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149 면.

## IV.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요내용

##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능력이라 함은 일신에 전속한 수학능력을 의미한다. 능력에 따른 교육이라 함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응하 는 적절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능력에 따른 교육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18) 따라 서 입학시험 등 공개경쟁시험제도는 위헌이 아니다. 그러나 능력이 뒤떨어지는 자에 대하여도 그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영재교육•특수목적학 교가 설치되고 그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19)}$

##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균등한 교육은 자유권적 측면에서는 취학의 기회균등을 위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수학능력이 아닌 교육외적 요소로서 성별•종교•사회 적 신분•경제적 능력•부모의 지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권적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설치•운용하고 장학정책을 시행하는 등 교육의 외적 조건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18) 1994. 2. 24. 93 헌마 192.
19) 이재명, 앞의 글, 2007,158 면.

## 3.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문언적 의미로 보면, 교육에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 육, 전문지식교육, 보충학습교육, 평생교육, 취미교육, 장애자에 대한 교육, 교도소의 교육, 병영 내의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있지 만 우리헌법 제31조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은 학교교육을 의미한다. ${ }^{20)}$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의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내 용의 선택은 교수가 자유로이 하지만 초•중 • 고등학교의 경우 정상적 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이 되는 교육이므로 교사가 자유로 이 결정하지 못하고 공교육의 공통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교사는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종교, 정치적 이념 등을 학생에게 가르칠 수 없으며, 교사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도 학생에게 교 육의 이름으로 시켜서는 안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생들이 자기 가 학습할 장소와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21), 나아가서 학부모가 그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교육기회제공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2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인간의 삶의 본질상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보유 하고 부담한다. 자녀가 아직 친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인 경우 에는 스스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 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친권의 교육권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즉 자신의 자녀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할 자유와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 육권에 포함된다. ${ }^{23)}$ 부모에게 일파적인 결정권을 주는 것은 누구보다
20) 정종섭, 앞의 책, 606 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654 면.
2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830-831$ 면.
22) 권영성, 앞의 책, 651 면.
23) 1995. 2. 23. 91헌마204.

도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기인하 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는 자녀에 게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무학의 상태로 살게 할 자유와 권리는 가지지 못한다. ${ }^{24)}$

## V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제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우리 헌법은 제36 조제2항에서 제6항에 걸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 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교 육재정•교원지위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1. 의무교육제도

의무교육이라 함은 보호자가 그 자녀에게 취학시킬 의무를 지는 교 육을 말한다.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국가형성에 요 구되는 것이 교육의 의무화이다. 헌법 제 31 조제 2 항에서는 "모든 국민 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 하여 학령아동을 둔 보호자는 취학시킬 위무가 있고 국가나 공공단체 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여 무상의무교육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무상으로 중학 의무교육을 받을 권 리는 헌법상 직접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한 순차 적 실시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5 ) 의무교육에 있
24) 정종섭, 앞의 책, 608 면.
25) 1991. 2. 11. 90헌가 27.

어서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서 수업에 사용되는 교구, 급식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민주국 가의 존립 및 번영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요청에 따라 부여된 것이 의무교육이라면 의무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 }^{26)}$ 또한 적정하고 적합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공교육의 다원화 및 의무교육의 고등학교까지의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제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교육자에 의하여 전담되거나 적어도 그 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교육방법이나 교육 내용이 종교적 정파성과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 히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교육내 용에 대한 부당한 권력적 개입이 배제되어야 한다.27)

## (1)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의 내용, 방법, 교육기관의 운영을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 세력

[^7]의 간섭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 적에 기하여 조직되고 운영되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교육의 자유와 독 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 }^{28)}$

교육의 자주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이 독립되어야 하며, 자주성을 보장하 기 위한 정책적 보장이 필요하다. 다만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감독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교 육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 하기 위한 정책적 보장으로 교육시설의 설치자 또는 교육감독권자로 부터 교사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 교육관리 기구의 공선제 등이 중요 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2)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에 있어서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전문가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29)}$ 교육의 전문성은 특히 교사에 관련되어 있는데 교육직은 고도의 교양이 필요한 전문직업으로 교육에 대한 올바른 사면감과 학 생에 대한 교육적 애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관과 일반교양을 확립함 과 동시에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학생에게 맞는 교양 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 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28) 2002. 3. 28. 2002헌마 283.
29) 권영성, 앞의 책, 668 면.

##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 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 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당파적 정치교육의 금지, 교 사의 정치활동의 규제,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에 대한 정치 적 압력의 배제, 교육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제6조제1항30))에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먼저 교사의 교직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 며,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다. 학교에서 특정한 편향적인 정치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교육제도 법정주의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고 규정하여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 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교육재정의 확보, 교 원의 신분보장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등에 대하여 특히 법정주 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적 보장으로서 의미 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법률을 통 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30)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구체화되는 각급학교 교육제도가 있다．나아가 교육 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재정적 지원이 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교육재정에 관한 법정주 이인 것이다．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정규적인 교육과정에 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생교육법을 통한 평생교육 법정주의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본질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제도권 교육과 평생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그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민주적 으로 만들어진 사회국가 원리를 준수해야 하며，문화적 다양성을 가 지는 공동체에 부합해야 한다．교육의 이념이나 본질이 형성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입법이 없다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 능적 권리로서의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되어야 한다．

## VI．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

## 1．교육기본법

헌법상 보호자의 자녀교육 의무조항은 「교육기본법」에 교육할 권리 와 책임으로 구체화되었고 보호자와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하였다． 이것은 교육구성원들의 역할과 요구의 변화를 수용한 헌법정신의 구 체화로 평가되고 있다．또한 교육행정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헌 법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정신은 「교육기본법」 에 반영되어 있다．즉，교육의 자주성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근거 와 학교운영 자율성 및 참여보장으로 구체화되었고，교육의 전문성은 교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기본법」에 구체화되었다．「교육 기본법」은 헌법과의 관계에서 보면，헌법상 교육조항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입법체계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즉 「교육기본법」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된 교육에 관한 헌법정신을 구체화한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교육입법과 정책에 있어서「교육헌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또한「교 육기본법」은 헌법상 교육조항을 비롯하여 이념과 기본제도，기본원리 및 일반원칙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헌법의 보완 법」으로서 헌법과 개별적 교육 관계법령을 연결하는＇매개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31)}$

「교육기본법」의 제정과 동시에 1997년 12월 13일「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1999년 8월 31일에는 기존의 사회 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초•중등교육 법」과「고등교육법」에서는 각각 제1조에서 법의 연원이 「교육기본법」 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평생교육법」은 전면 개정의 이유에서「교 육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2000년 1월 28 일에는「영재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제1조에서「교육기본법」 제 12 조 및 제 19 조에 연원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2．헌법과 개별 교육 관계 법령

교육 관계 법령이라 함은 교육 또는 행정에 관한 법으로써 교육정 책，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통칭하는 것이며，교 육제도의 성립을 위한 기초 토대이다．

대표적인 교육 관계 법령으로는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하여 이를 실질화 하고 있는 교육3법 즉 「교육기본법」，「초•중등교 육법」，「고등교육법」을 들 수 있다．그 밖에도「유아교육법」，「평생교 육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 기능대학법 통합），「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학교신체검사규칙」포함），「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에 대한

[^8]특수교육법」，「도서•벽지교육진흥법」，「인적자원개발기본법」，「직업 교육훈련촉진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또한「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 정운영규칙」，「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32)}$

32）법제처，교육기본법 해설，2011．9．，18－20면．

## 제 3 장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 교육 관 계 법령의 현황 및 구성 체계를 간단히 살펴본 후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 야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개별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에 대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개 별적인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하 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로서의 교육 관 계 법령의 입법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입법체계 개 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교육 관계 법령 전반에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교육기본법에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교육 관계 법령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야별 문제 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절을 바꾸 어 개별 교육관계 법령의 입법체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 련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 제 1 절 고욱 관계 법률의 현황

교육 관계 법령에 대하여 현행법령집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33)에서는 교육•학술 분야에 대하여 행정조직, 학 교교육(통칙34), 학력인정, 학교의 설치•시설, 사립학교, 교원, 장학, 교육재정, 교육진흥), 학교보건, 학 - 예술진흥, 사회교육, 국외유학 • 재 외국민교육, 체육•청소년육성으로 세분하여 체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3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 2012. 10. 2. 기준.
34) 학교교육 분야의 통칙은 학교 교육 일반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 분야 법령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근거가 되는 법률들이 학 교교육 통칙에 분류되어 있다.

아래 표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학술분야의 세분류에 속하는 법령 중에서 교육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교 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을 중심35)으로 정리한 것이다. 체육•청소년 육성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이 없어 분류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제처의 분류체계 36 )를 기본으로 하여 교육 관계 법령 중에 서 교육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조직,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학교보 건 등으로 분류한 교육 관계 법률의 입법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교육 관계법의 체계]


| 행정조직 | 학 교 <br> (단계/학력인 <br> 정/설치•시설 <br> /사립학교) | 학 교 (교원/장학/ 재정) | $\begin{gathered} \text { 학 교 } \\ \text { (지원/진흥) } \end{gathered}$ | 사회교육/학교 <br> 보건 - 생활 |
| :---: | :---: | :---: | :---: | :---: |
| - 교육관련기 관의 정보 | $\begin{aligned} & \text { - 경제자유구 } \\ & \text { 역 및 제주 } \end{aligned}$ | - 교원지위향 상을 위한 | - 과학교육진 흥 법 | - 유네스코활 <br> 동에 관한 |

35) 학교보건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 학•예술진흥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청소년육성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법률 및 하위법령이 함께 분류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는 교육 관계 법령으로서 교 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므로 분류표에서 법령명 옆에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은 (보)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은 (문)으로, 여성 가족부 소관 법령은 (여),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은 (노)로 표시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36)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및 현행법령집을 기준으로 분류한 교육 관계 법령 의 체계는 부록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 행정조직 | 학 교 (단계/학력인 정/설치•시설 /사립학교) | 학 교 (교원/장학/ 재정) | 학 교 (지원/진흥) | 사회교육/학교 보건 - 생활 |
| :---: | :---: | :---: | :---: | :---: |
| 공개에 관 한 특례법 - 한국대학교 육협의회법 - 한국 전문 대 학교육협의 회법 | 국제자유도 시의 외국 교 육 기 관 설립 - 운영 에 관한 특 별법 <br> - 고등교육법 <br> - 교육국제화 특구의 지 정 - 운 영 및 육성에 관 한 특별법 <br> - 교육기본법 <br> - 유아교육법 <br> -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br> - 초중등교육법 <br> - 법학전문대 학원 설치• 운영에 관 한 법률 | 특별법 <br> - 교육공무원법 <br> - 국립사범대 <br> 학 졸업자 <br> 중 교원미 <br> 임용자 등 <br> 에 관한 특 <br> 별법 <br> - 대 학 교 원 <br> 기 간 임 용 <br> 제 탈락자 <br> 구제를 위 <br> 한 특별법 <br> - 병 역 의 무 <br> 이 행 관 련 <br> 교 원 미 임 <br> 용자 채용 <br> 에 관한 <br> 특별법 <br> - 사립학교교 <br> 직원 연금법 <br> - 시국사건관 <br> 련 교 원 임 <br> 용 제 외 자 <br> 채 용 에 관 <br> 한특별법 <br> - 한국교직 원 <br> 공제회법 | - 국립대학병 원설치법 -국립치과대 학병 원설치 법 <br>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동북아역사 재단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 <br> -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br> - 생명연구자 원의 확보• 관리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br> -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 <br>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 치법 <br> -영재교육진 흥법 <br> - 자격기본법 <br> - 장애인 등 | 법률 <br> - 인적자원개 발기본법 <br> - 퇴 직 교 원 평 생 교 육 활동 지원법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 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재외국 민의 교 육 지 원 등에 관한 법률 <br> - 학교급식법 <br> - 학교보건법 <br> - 학교안전사 고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행정조직 | 학 교 <br> (단계/학력인 정/설치•시설 /사립학교) | 학 교 (교원/장학/ 재정) | $\begin{gathered} \text { 학 교 } \\ \text { (지원/진흥) } \end{gathered}$ | 사회교육/학교 보건 • 생활 |
| :---: | :---: | :---: | :---: | :---: |
|  | - 독학에 의한 학 위취득에 관한 법률 <br> - 학 점 인 정 등에 관한 법률 <br> - 국립대학 법 인 서울대학 교 설립• 운영에 관 한 법률 <br> - 국립대학 법 인 울산과 학기술대학 교 설립• 운영에 관 한 법률 <br>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학 교 용 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부 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 한국장학재 <br> 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br> -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 | 에 대한 특 수교육법 <br> - 직업교육훈 련촉진법 <br> - 학교도서관 진흥법 <br> - 한국농수산 <br> 대학설치법 (농) <br> - 대한민국학 술원법 <br> - 사료의 수 집 - 편 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br> - 취업 후 학 자금 상환 특별법 <br> - 학술진흥법 <br> - 한국고전번 역원법 <br> 한국학중앙 연구원 육 성법 |  |


| 행정조직 | 학 교 <br> (단계/학력인 <br> 정/설치•시설 <br> /사립학교) | 학 교 <br> (교원/장학/ <br> 재정) | 학 교 <br> (지원/진흥) | 사회교육/학교 <br> 보건•생활 |
| :--- | :---: | :---: | :---: | :---: |
| 아립학교법 <br> o 한국사학진 <br> 흥재단법 |  |  |  |  |

교육 관계 법률을 살펴본 바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이 3 건, 학교와 관련된 법률이 총 48건, 사회교육에 관련된 법률이 6건, 학교보건 및 생활에 관련된 법률이 총 4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교육 관련 법률은 62 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기본법 1개, 특별법 내지 특례법 이 13 개, 진흥•지원•촉진•육성법이 10 개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교육 관계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장을 바꾸어서 교육 관 계 법령 전반의 입법체계의 현황의 특징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 하여 교육 관계 법률 전체, 분야별 및 개별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 사•분석한 후 입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 제 2 절 고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 전반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제1절의 교육 관계 법률을 기준으로 할 때 2012년 10월 1일을 기준 으로 교육 관계 법률 62건을 포함하여 교육 관계 법령은 약 240 여건 이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조직 관련 법령 24건, 학교교육 중 통칙 관련 법령 34 건(기획재정부 소관 법령 2건 포함), 학력인정 관련 법령 10 건, 학교의 설치•시설 관련 법령 35 건, 사립학교 관련 법령 7 건, 교원 관련 법령 33 건, 장학 관련 법령 6 건, 교육재정 관련 법령 11 건,

교육진흥 관련 법령 35건(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령 2건 포함), 학교 보건 관련 법령 10 건(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3 건 포함), 학•예술진흥 관련 법령 16 건(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1 건 포함), 사회교육 11 건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2건 포함), 국외유학•재외국민 관련 법령 5건 으로 총 237 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법령37)을 중심으로 하 여 살펴본 바 교육 관계 법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I. 특별법•특례법의 증대

## 1. 교육 관계 법률 중 특별법-특례법 현황

분석대상 교육 관계 법률 62개 중에서 특별법 및 특례법의 수는 13 개이다. 먼저 교육 관계 법률 중에서 특별법•특례법의 제정연혁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연 <br> 번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9]| 연 번 | 법률명 | 제정연혁－주요내용－구성 |
| :---: | :---: | :---: |
|  |  | 12 개조로 구성됨（＋가지조문 2개） |
| 2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의 외국교육기관 <br>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br> ［법률 제10632호］ | 2005．5．31．제정／법률 제7533호／2005．12．1．시행 |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 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 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 시켜 동북아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  |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설치등기，외국교육 기관의 성립，지도•감독，학생정원，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재정지원，지원에 따 른 조치，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외국교육기 관의 설립승인 변경，외국교육기관의 청산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24 개조로 구성됨 |
| 3 |  | 2012．1．26제정／법률제11214호／2012．7．27．시행 |
|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br> ［법률 제11214호］ |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외국어전용타 운의 조성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사업，외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등 초• 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및 어권별 문 화체험마을의 조성 등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국제특구안의 대 학은 외국대학과의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


| 연 번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 함으로써 혁신적 교육국제도시를 조성•육성하 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
|  |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특구육성종 합계획의 수립,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실시계 획,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대학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역사회 의 국제경쟁력강화,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22개조로 구성됨 |
| 4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85호] | 1999.8.31.제정/법률 제6005호/1999.12.1.시행 |
|  |  | 학생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폐합등으로 전국 적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 러한 법적인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청소년과 지역주민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 폐교재산 활용계획,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영구 시설물의 축조, 시정명령, 공유재산심의회, 국유 재산에 대한 특례, 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 용으로 함 |
|  |  | 12개조로 구성됨 |
| 5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599호] | 1995.12.29.제정/법률제5072호/1996.1.29. 시행 |
|  |  | 택지개발사업등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하 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


| 연 번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 려운 실정이므로, 택지개발사업자가 그 시행계 획을 작성할 때에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지 역안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할 때에는 분양 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 급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고자 함. |
|  |  |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 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부 과-징수, 부담금의 산정기준, 학교시설기준 적 용 완화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10 개조로 구성됨(+가지조문 3 개조) |
| 6 |  | 2008.3.14.제정/법률 제8886호/2008.9.15.시행 |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86호] |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 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 도록 한 종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2005. 3. 31.)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미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 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 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
|  |  |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환급신청 및 환급, 부 담금환급가산금, 부담금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시효,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 로 함 |


| 연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 7개조로 구성됨 |
| 7 | 교원지위향상을 <br> 위한 특별법 <br> [법률 제8890호] | 1991.5.31.제정/법률 제4376호/1991.5.31. 시행 |
|  |  |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 우하고 교육회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 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등에 관하여 교섭•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  |  |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 보수의 우대, 교원의 불체포특권,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교원 의 신분보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위원 의 자격과 임명, 소청심사의 청구 등, 소청심사 결정,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교 원지위향상심의회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  | 13 개조로 구성됨 |
| 8 | 국립사범대학 <br>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 | 2004.1.20.제정/법률 제7069호/2004.1.20.시행 |
|  |  |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의 졸업자를 우선 채용 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 에서 위헌결정(1990. 10. 8)됨에 따라 당시 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  |  | 미임용자의 등록, 중등교원 채용시험실시, 중등특 별정원의 관리, 부전공과정의 개설, 교육대학에의 편입학, 초등교원 채용시험 실시 등, 초등특별정 원의 관리, 특별연수, 중복지원 제한, 특별정원 |


| 연 | 법률명 | 제정연혁－주요내용－구성 |
| :---: | :---: | :---: |
|  |  |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  |  | 10 개조로 구성됨（＋가지조문 2개조） |
| 9 | 대학교원 <br> 기간임용제 <br> 탈락자 구제를 <br> 위한 특별법 <br> ［법률 제10866호］ | 2005．7．13．제정／법률 제7583호／2005．10．14．시행 |
|  |  |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제 임용이 도입된 1975 년 7월 23일부터 법률 제7352호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 및 법률 제7353호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2005년 1월 26일）까지 의 기간동안 재임용에서 탈락된 국립 • 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 이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임용탈 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  |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특별 재임용 재심사，퇴직•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심사기준，재임용 재 심사의 결정，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  |  | 10 개조로 구성됨 |
| 10 | 병역의무 이행 <br>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534호］ | 2005．5．31．제정／법률 제7534호／2005．5．31．시행 |
|  |  |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 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 나 임용되지 못한 자 중에서 병역의무의 이행 으로 인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함으로써 미임용자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 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임． |
|  |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자료협 조의 요청，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


| 연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 특별채용심의위원회, 특별채용, 특별연수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  |  | 7개조로 구성됨 |
| 11 | 시국사건관련교원 임용제외자채용에 관한특별법 [법률 제6435호] | 1999.9.2.제정/법률제6014호/1999.9.2.시행 |
|  |  | 국립의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교육대학등 을 포함)을 졸업하고 교사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시국사건등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교사 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한 것임. |
|  |  | 임용제외자의 범위, 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심 의위원회, 임용신청, 특별채용 등에 관한 규정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  |  | 5 개조로 구성됨 |
| 12 |  | 2010.1.22. 제정/법률 제9925호/2010.1.22.시행 |
|  | 취업 후 학자금 <br> 상환 특별법 <br> [법률 제10303호]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대출시점부터 내도록 하 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가 대학생 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융자금의 상환도 거 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융자를 받은 자의 취 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 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br>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 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 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 연 번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 이에 대출 대상선정, 대출 금리 결정조건,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  | 총칙,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별 상환방 법, 체납처분, 보칙, 벌칙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7장 44개조로 구성됨 |
| 13 | 학교시설사업 <br> 촉진법 <br> [법률 제10599호] | 1982.12.31.제정/법률 제3634호/1983.4.1. 시행 |
|  |  |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시설의 설치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학급이 과다한 대규모학교의 분리, 과밀학급 및 2 부제 수업의 해소등 교육환경개선에 기여 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의 승인, 학교시설의 건축,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공공 시설의 우선설치, 토지에의 출입, 손실보상, 시행 계획의 승인의 취소, 청문, 분묘 등의 정리, 권 한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16 개조로 구성됨(+가지조문 2개/-삭제 1개조) |

## 2. 분 석

교육 관계 법률 중 13 개의 특별법•특례법에는 교원의 임용과 관련 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과

관련된 법률이 3 건으로 나타났다．특히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특례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연계된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경우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기간 도과 이후에는 폐 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시설과 관련된「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유 효기간을 법 부칙에서 관련 사무가 종료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제 6 조에서 시효와 관련하여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08년 9월 15일자로 시 행된 동법은 효력을 가지는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향후 교 육 관련 특별법•특례법의 제•개정시 법률의 운용기간이 한시적일 것이 분명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입법 자체에 일정한 기간까지 적용된다는 사항을 명시한 한시법으로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이는 입법경제상의 효율성 확보 및 적정한 입법체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 요한 일이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개발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 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 5월 25 일 법률 제 8492 호로 제정되었으며，정보공개의 원칙，공시대상정보，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자료의 공개，시정 권고，학술연구의 진흥 등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총 14 조문（가지조문 2 개조 포함） 12 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주요내용은 정보공개의 원칙，공시대상정보，공시의 권고，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공

개•공시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이다．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의 수준 및 공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특별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 례로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경우 학교시설사업은 초•중 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전체적인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계획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이 법에서와 같이 절 차 간소화의 특례를 두고 있다는 것은 학교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이 없는 특별법으로 입법체계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유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정비방안

## （1）교원 임용 관련 특별법－특례법 정비방안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 학 등의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이 헌법재 판소에서 위헌결정（1990．10．8，89헌마89）됨에 따라 당시 교사임용후 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 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국 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0 년 10 월 8 일 헌법재판소가 당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 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

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교육공무원법」제 11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89헌마89）을 내림에 따라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교육과학기술부가 출생인구의 감소 로 인하여 학 령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교원의 채용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서 특별편입생 추가로 특별정원을 확보 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다．각 시•도의 교육대학 특별 편입생 모집공고를 보니 최근 2 년간은 1 명 내외로 보인다．이러한 현 상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의 입법목적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입법목적 달성여 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제 임용이 도입된 1975년 7월 23일부터 법률 제7352호 「사 립학교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7353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2005년 1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임용에서 탈락된 국 립•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재임용탈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200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5년「대학교원 기 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동법은 2003년 3．27．구사립학교법 제 53 조의 2 제 3 항에 대하여 내려진 헌법 불합치결 정（2000헌바26）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입법목적을 살펴보면，교 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된 경우 교원의 신분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재임용 심사기 군인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 타당하다．${ }^{38)}$ 이 경우「사립학교법」또는「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재임용요건을 충족한 교원에 대해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 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동법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 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특별 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이다．「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에 대한 정비방안으로「교육기본법」 및 관련 일반법으로 규정을 편입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그와 관련하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규율하는 별 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또한 동 법의 경우 위원 회 존속기간이 업무종료로 인하여 폐지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향후 폐 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10 월 7 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 중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 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함으로써 미임용자의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제정되었다．

동법은 군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범대 학 졸업자 200여명을 우선 임용하고자 제정된 법으로，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는 별도로 설치될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를 통해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별법의 입법목적 에 적합하도록 한시법으로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한 교 육과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졸업하고 교원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38）황희성，대학교원 재임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pp58－68

자중 임용제외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동 법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제외자의 임용신 청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폐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2）「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관련 정비방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 을 갖는다．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관련하여 교육관련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의 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 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 행정 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특례를「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것이다．교육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학생의 성 장과 생활 및 학업성적 등 개인정보와 학생의 가족에 관한 정보에 이 르기까지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시 새로운 정보가 추가 기록되는 등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변경되는 불완 전한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반면에 학교와 교육행정기 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자녀가 입학할 학교를 선택할 권리 및 학교 간 교육성취수준의 비교，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공개의 수준 및 공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특례로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제 5 조부터 제 10 조의 2 를 제외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다르지 아니하고 공시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하나의 장으로 마 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3）학교 시설 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국민학교•중학교•법령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 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시설의 설치•이 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교육의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폐교 재산을 교육용 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국 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충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및 지역사회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을 위한 특별법」 등 학교 시설과 관련된 특별법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학교시설사업은 학교용지 확보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폐교재산은 학교시설의 폐교 이후 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학교시설 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방향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특별법이라 함은 일반법에 대하 여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바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두지도 아니하고 그 분야의 중요성 이 크다고 하는 이유로 특별법으로 다루는 입법관행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의 증대

## 1．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현황

조사•분석 대상 62 개 법률 중에서 교육 분야의 진흥•지원에 관한 법률은 10 개 법률로 나타났다．교육 관계 법률 중에서 진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제정 연혁 및 주요내용을 다음 표 와 같다.

| 연 번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1 | 과학교육진흥법 <br> [법률 제 10867호] | 1967.3.30.제정/법률 제1927호/1967.3.30.시행 |
|  |  | 각급학교의 과학교육과정이 과학교육목표에 알 맞게 편성되어 있지 못하며 과학담당교원은 삭 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저조하며, 과학교재는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치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실험비는 소요액에 태반이 부족한 실정 인 바 이를 혁신하여 실질적인 과학교육을 진흥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연구시설의 이용,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경비 지원 보조, 국제 협력, 과학 교재•교구의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9 개조로 구성됨(-삭제 1개조) |
| 2 | 영재교육진흥법 <br> [법률 제10875호] | 2000.1.28. 제정/법률제6215호/2002.3.1. 시행 |
|  |  |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 는 것임 |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앙영재교육진 흥위원회의 설치,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영재학교의 지 정•설립과 운영, 영재학급의 설치•운영, 영재 교육원의 설치•운영,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


| 연 번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 학교생활기록, 교원의 임용•보수,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영재교육연구원, 특례자 선정 등에 관 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18 개조로 구성됨(+가지조문 8개조/-삭제조문 2개조) |
| 3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법률 제8852호] | 1967.1.16. 제정/법률 제 1870 호/1967.1.1.시행 |
|  |  |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락도•수복지구 및 접적지구인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려는 것임. |
|  |  | 국가의 임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도서•벽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  |  | 6 개조로 구성됨(-삭제조문 1개조) |
| 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br> 관한 법률 <br> [법률 제10907호] | 1963.9.19.제정/법률제 1403 호/1963.9.19시행 |
|  |  |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기술계 인적자원의 량적확보와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나 아가서는 국가경제의 자립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유능한 기술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
|  |  | 총칙, 산업교육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산학협력의 촉진, 보칙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6장 46개조로 구성됨(-제3장 4개조문 삭제/+가지 조문 15 개조/-삭제조문 1 개조) |
| 5 | 학교도서관진흥법 <br> [법률 제11310호] | 2007.12.14.제정/법률 제8677호/2008.6.15.시행 |
|  |  |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자율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핵심시설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체 |


| 연 번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구성 |
| :---: | :---: | :---: |
|  |  | 제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도서관의 업무,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학교도서관 지원비, 전담부서의 설치, 시설•자료,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독서교육, 업무협조, 금전 등의 기부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18개조로 구성됨 |
| 6 | 학술진흥법 <br> [법률 제10877호] | 1979.12.28.제정/법률제3205허/1980.1.1.시행 |
|  |  | 학술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를 체계 화하고 학술연구를 위한 재원의 확충을 기하도 록 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설치함으 로써 학술을 적극적으로 조성•진흥하려는 것임. |
|  |  |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학 술지원대상자의 선정,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학 술 교류와 협력활동, 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학 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학술 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연구윤리의 확보, 학술 성과의 활용, 사업 비의 사용 및 관리, 사업비에 대한 조사, 학술지 원 대상자 선정 제외,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 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23 개조로 구성됨 |
| 7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노) [법률 제10776호] | 1997.3.27.제정/법률 제5316호/1997.4.1.시행 |
|  |  |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신직업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과 직 업훈련의 연계운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훈련의 |


\left.| 연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right\left.] \begin{array}{l}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소질 <br>

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br>
제공하여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 <br>
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end{array}\right\}\)

| 연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 원리를 탐구하여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보호육성하 려는 것임. |
|  |  | 목적, 출연금,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연구 요원의 등의 파견, 자료의 제공, 대학원의 설치, 사업계획서, 결산보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 원시설 등의 이용,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  | 12 개조로 구성됨(-1개조 삭제) |
| 10 | 재외국 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13호] | 2007.1.3.제정/법률 제8164호/2007.7.4.시행 |
|  |  |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  |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한국교육원,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보칙, 벌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6장 42개조로 구성됨 |

## 2. 분 석

교육이 가지는 미래지향적이고 후속세대 중심적인 특성을 감안한다 면 교육 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육성•진흥•촉진 법제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관련 분야에 있어서 지원•육성•진흥•촉진 법률의 특징 중 하나는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법률이 4개나 되는 등 제•

개정 연혁이 오래되었다는 것이다．제•개정 연혁이 오래되었다는 것 과 지원•육성•촉진•진흥 법률의 일반적 특징을 결합하여 생각해본 다면 현재에 있어서 법률의 시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법률의 실 효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학 교도서관진흥법」 과 같이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39）를 거둔 것이 확인 되는 법률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률도 있다．「과학교육진흥법」의 경우에 진흥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여건의 마련이 필수임에도 불구40）하고 지원에 관한 규정이 교구 관련 규정 하나에 불과하고 삭제조문을 제외하면 총 조문이 8 개에 불과하다．또한「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경우에도 삭제조문을 제외하고 총 조문의 수가 5 개에 불과하다．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처음에 는 필요한 법률이었을 지라도 시일이 지나서 관련 분야의 진흥•지원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 고 단지 보여 주기식으로 법률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률의 존폐에 대 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퇴 직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히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해야 하는 국가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가 의문이다．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은 처음 발의될 당시 법안명은 한국 교육삼락회법안이었다．정부제출안이나 다른 국회의원에 의한 발의안

[^10]은 없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경쟁적인 정책대안은 없었다. 사단법 인 한국교육삼락회는 1969년에 퇴직한 교장과 교감이 임의로 결성한 친목단체이다. 교육삼락회법안의 쟁점은 교육삼락회 회원의 $97 \%$ 가 퇴직 교장과 교감인데, 교장단은 전체 교원퇴직자의 35 분의 1 에 지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삼락회만 지원한다는 점이었다. 즉 평교 사 중심의 봉사단체인 한국퇴직교원협의회를 비롯하여 퇴직교원을 대상 으로 한 단체가 전국에 수십 개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삼락회만 편파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명분이 약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결국 위원들은 교육삼락회법안의 명칭을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안으로 바꾸고 회원가입자격을 모든 교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수정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에서는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여타 공무원 퇴직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나, 정부지원단체를 자율단체로 유도하 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41) 지원•진 흥에 관한 법률이 수범자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정도로 지나칠게 시 혜적이고 민원해결적 입법의 형태로 제정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 이다. 교육의 중요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진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 3. 정비방안

교육 관련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원•진흥 관련 법률의 숫자 가 많은 것은 일응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체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진흥•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11]대한 합리적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는 정책결정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일 이다．특히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원•진흥 관련 법률의 제정은＇법 앞에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의 근간을 흔들고 상대적 박탈 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교육 관 계 법률 중 지원•진흥 관련 법제의 구성을 살펴보면 매우 유사한 구 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진흥의 근간을 「교육기본법」 혹은 지 원•진흥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여 법률의 효율성 을 도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과학교육진흥법」 등 제정 당시에는 동법의 존재만으로도 의미 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학교의 과학교육을 진흥하고자 하 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를 가지는 법률의 경우에는 법 률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입법목적에 적합하도록 교육하거나 혹 은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지원•진흥이라는 법률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법률이라면 그 존재의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 어져야 함이 타당하다．

## III．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증대

## 1．교육 관계 법률 중 기관 설치 근거 법률 현황

조사 대상 교육 관계 법률 62개 중 교육 관련（특정）기관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수는 16 개 42 ）이다．교육 관련（특정）기관 설치의

42）교육 관련 기관 설치 근거 법률로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하였지만，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법률 제9624호］과 대한민국예술원법［법률 제10586호］등도 교육 관련 기 관의 설치 근거 법률이다．다만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고， 대한민국예술원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로 본 연구의 조사•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근거 법률의 제정연혁, 주요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begin{array}{\|l\|} \hline \text { 연 } \\ \text { 벙 } \end{array}$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1 | 한국대학교육 <br> 협의회법 <br> [법률 제10078호] | 1984.4.10.제정/법률 제3727호/1984.4.10.시행 |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 - 육성하여 대학간의 상호협조와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공공 성을 앙양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 려는 것임. |
|  |  | 목적, 설립, 경비보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 부, 교직원의 파견근무, 자료제공, 회계연도, 사 업계획서, 결산보고, 결정사항의 준수의무, 업무 위탁, 대학 평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22 개조로 구성됨(-삭제조문 1개조) |
| 2 | 한국전문대학교육 <br> 협의회법 <br> [법률 제10075호] | 1995.12.29.제정/법률제5070호/1995.12.29.시행 |
|  |  | 현재 145 개에 이르는 전문대학이 산업기술의 발 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문 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  | 목적, 설립, 경비보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 부, 교직원의 파견근무, 자료제공, 회계연도, 사 업계획서, 결산보고, 결정사항의 준수의무, 업무 위탁, 대학 평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21개조로 구성됨 |
| 3 | 국립대학법인 <br> 서울대학교 | 2010.12.27.제정/법률제10413호/2011.12.28. 시행 |


| 연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설립•운영에 <br> 관한 법률 <br> [법률 제10413호] | 국가가 설립•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 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 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 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  | 조직, 재무회계, 지원 및 육성 등, 보칙, 벌칙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6장 37개조로 구성됨 |
| 4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 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1호] | 2007.4.6.제정/법률제8331호/2007.7.7. 시행 |
|  |  | 울산광역시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 등의 중심지임에도 국립대학이 없고 종합대학은 하나 밖에 없어 16 개 시•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이 지역에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국립대학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여 국가의 산업경쟁 력을 강화하고 울산지역의 기술•지식혁신을 주 도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전문 기술•경영• 교육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 법인격, 설립등기, 정관, 입원, 총장, 이사, 이사회, 이사회의 기능, 감사, 임원의 결격사유, 법인회계 의 설치, 지원•육성 등, 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자본금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  |  | 27 개조로 구성됨 |
| 5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65호] | 2009.2.6.제정/법률제9451호/2009.5.7.시행 |
|  |  |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 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


| 연 번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업성적, 전공 분야, 대학생 및 학부모 의 가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 를 구축하여 대학생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 여하려는 것임. |
|  |  | 한국장학재단, 보칙, 벌칙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5 장 56 개조로 구성(-제 3 장 11 개조 삭제/+가지조문 14 개조/-가지조문 5 개조 삭제) |
| 6 | 한국사학 <br> 진흥재단법 <br> [법률 제10780호] | 1989.3.31.제정/법률 제4103호/1989.3.31. 시행 |
|  |  | 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1,500 억원이상의 규모로 조성하여 고등학교이상의 사 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실험•실습시설등 교육시설의 개•보수와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장 기저리융자하게 함으로써 사학을 지원•육성하려 는 것임. |
|  |  | 정의, 법인, 설립, 정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 업, 임원,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직원의 임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학진흥기금 설치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  |  | 32 개조로 구성됨(+가지조문 1개조) |
| 7 | 동북아역사재단 <br> 설립•운영에 <br> 관한 법률 <br> [법률 제8852호] | 2006.5.19.제정/법률 제7955호/2006.8.20.시행 |
|  |  |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 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및 독도 문제 등에 대 한 심층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 정책 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 |


| 연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 보하며 역사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하여 올바른 역 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  | 법인, 설립, 정관, 사업,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임원, 임•직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직무, 이사회, 직원의 임면, 운영재원, 출연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비밀 업수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26 개조로 구성됨 |
| 8 | 서울대학교병원 <br> 설치법 <br> [법률 제9932호, 2010.1.18, 타법개정] | 1977.12.31.제정/법률 제3056호/1978.1.1. 시행 |
|  |  |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병원을 통합, 비영리특수법인으로 개편하여 병원 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의학교육 및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 려는 것임. |
|  |  | 법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업, 임원, 이사회, 대학병원장, 직원의 임면,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보조금, 회계의 관리, 사업계획 등 보고, 결 산서의 제출, 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21 개조로 구성됨(+가지조문 1개조/-삭제 1개조) |
| 9 | 서울대학교치과병 <br> 원 설치법 <br> [법률 제9932호] | 2003.5.29. 제정/법률제6892호/2004.5.30.시행 |
|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 치과병 원들은 각각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과 국립대학교 병원설치법에 따라 충분한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는 |


| 연 번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 바, 이에 서울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 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  |  | 법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업, 임원, 이사회, 치과병원장, 직원의 임면,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보조금, 회계의 관리, 사업계획 등 보고, 결 산서의 제출, 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21 개조로 구성됨 |
| 10 | 대한민국학술원법 <br> [법률 제10773호] | 1988.12.31.제정/법률 제4045호/1989.1.1. 시행 |
|  |  | 종전의 문화보호법을 폐지하고 학술원법과 예술 원법으로 분리•제정하여 학술원의 회원선출방식 을 회원 또는 관련학술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학 술원이 스스로 선출하게 하는 등 종전의 불합리 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창조적 학문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
|  |  | 목적, 기능, 조직, 회원의 자격, 회원의 결격사유, 회원의 선출, 임기, 대우, 회장•부회장의 선출, 임무, 각 부의 부회장, 분과회장, 명예회원, 학술 활동의 지원, 시상, 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경비 부담, 지원, 사무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19 개조로 구성됨(+가지조문 2개조) |
| 11 | 한국고전번역원법 <br> [법률 제8852호] | 2007.8.3. 제정/법률제 8579 호/2007.11.4.시행 |
|  |  |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대부분 한문으로 기 록되어 있는 고전문헌을 체계적이고 수준 높게 정리•번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 |


| 연 번 | 법률명 | 제정연혁－주요내용－구성 |
| :---: | :---: | :---: |
|  |  | 승•발전시킬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 한 문화 역량을 계발하여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
|  |  | 목적，정의，법인격，설립，정관，사업，임원의 선 임，임원의 직무，이사회，사무기구 및 직원，고 전번역위원회，운영재원，출연 또는 보조，업무협 조，인력의 파견요청，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  |  | 25 개조로 구성됨 |
| 12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br> ［법률 제10643호］ | 1971．1．22．제정／법률제2296호／1971．1．22．시행 |
|  |  | 교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 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를 증진하려는 것임． |
|  |  | 법인，사무소，정관，등기，동일명칭 사용금지，회 원，회원자격，대의원회，대의원회 결의사항，자 료의 요청，자본금，보조금 지급，임원，임원의 선 출，임원의 직무，예산，결산，준비금의 적립，이 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26 개조로 구성됨（＋가지조문 2개조） |
| 13 | 국립대학치과병원 <br> 설치법 <br> ［법률 제10869호］ | 2007．10．17．제정／법률제8637호／2008．4．18．시행 |
|  |  | 치의학（齒醫學）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 서비스 및 경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하 려는 것임． |
|  |  | 정관，치과병원의 명칭，유사명칭의 사용금지，사 업，임원，임원의 직무，이사회，치과병원장，직원 의 임면，임상교수요원，겸직，국유재산의 무상양 |


| 연 | 법률명 | 제정연혁 - 주요내용 - 구성 |
| :---: | :---: | :---: |
|  |  | 여, 출연금, 사업연도, 사업계획 등 보고, 결산서 의 제출, 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23 개조로 구성됨 |
| 14 | 국립대학병원 <br> 설치법 <br> [법률 제10071호] | 1991.3.8.제정/법률 제4350호/1991.3.8.시행 |
|  |  | 현재 국립대학교의 부속병원을 법인인 대학병원 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의학과 및 치의학과등이 설치된 국립대학교에 설치할 부속병원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 게 함으로써 관련국립대학교의학계의 교육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  | 정관, 설립, 대학병원의 명칭, 유사명칭의 사용금 지, 사업,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대학병원장, 직원의 임면, 임상교수요원, 겸직, 국유재산의 무 상양여, 출연금, 사업연도, 사업계획 등 보고, 결 산서의 제출, 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24 개조로 구성됨 |
| 15 |  | 2007.7.27.제정/법률 제8544호/2007.9.28. 시행 |
|  | 법학전문대학원 <br> 설치•운영에 <br> 관한 법률 <br> [법률 제10866호] |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 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 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 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 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 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것임. |


| 연 번 | 법률명 | 제정연혁－주요내용－구성 |
| :---: | :---: | :---: |
|  |  | 총칙，법학교육위원회，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 준 및 운영，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보칙， 벌칙을 주요내용으로 함 |
|  |  | 46 개조로 구성됨 |
| 16 | 한국학중앙연구원 <br> 육성 법 <br> ［법률 제10073호］ | 1978．12．5．제정／법률 제3116호／1978．12．5．시행 |
|  |  |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미래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여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 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임． |
|  |  | 목적，출연금，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연구 요원의 등의 파견，자료의 제공，대학원의 설치， 사업계획서，결산보고，유사명칭 사용금지，연구 원시설 등의 이용，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  | 12 개조로 구성됨（－1개조 삭제） |

## 2．분 석

교육 관계 법률 중에서 교육 관련（특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은 16 개이며，「국립대학병원설치법」및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3 건을 제외하고는 하나 의 특정한 기관을 설치하는 근거로서 제정된 법률이다．이러한 특수 법인이 국가정책상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민법」또 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특수법인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공법상 특별히 다 룰 필요가 있는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 체계의 일부로 평 가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협의의 특수법인에 한정되며, (1) 설 립의 법적 근거가 민법•상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는 점, (2)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관계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 께 국가의 감독을 받는 다는 점, (3)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 적 사무의 수행과 함께 제한된 범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법인의 존속이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43) 교육 관련 법령 중 에서 이와 같은 특수법인을 설치하는 근거 법률이 16 개나 존재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하 여 특히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 및 국립학교의 경우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교육철학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수법인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 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동 시에 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에 교육의 자주성 보장이 가능할 것인가 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이 진행 중44)이 라는 사실에서도 논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과정에서 국유재산 2조원 정도가 무상 양도 되었으며, 규장각 등에 보관 중인 문화재의 소유•관리문제, 법인세 관련 사항 등 여전히 문 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45) 또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

[^12]치과병원설치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병원설치법 및 서 울대학치과병원설치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및 기존에 국립학교설 치령과 별도로 서울대학교설치령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서 울대학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어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은 대학 및 전 문대학의 운영의 자주성과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법률 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 년제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대학 간 상호협력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46) 주요한 기능으로 대학의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조 성방안, 대학의 평가,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지원,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 다. 즉 대학운영의 자주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의회에 대하여 국 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국가의 업무를 위탁 하고 있는 것이다. 협 의회의 구성원이 각 대학인데 그에 대한 평가를 협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대학교육협의회가 일반적인 협의회의 기능•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 조직 내지 자율조직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법률로서 규율을 받을 필요 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의 주요 업 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 서의 대학에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양한 업무를 위임•위탁의

[^13]관계로 수행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협의회'로서의 본래적 성격인 자율 성을 가지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 3. 정비방안

기관설치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방안으로서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서울대학교를 지원•육성해야 하는 필 요성이 법인화 이후에도 동일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47) 특정 기관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입법체계에 있어서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교육의 평 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교육협의회와 관련하여서 대학평가가 수요자 중심의 산업계 관점의 평가와 대학자체평가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 교육협의회 자체가 대학집단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 의 이해에 반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집행 및 연구 진행이 가능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협의회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해야 할 필요 성이 법률 제정 당시에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현재에도 법률 제정 당시 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그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재검 토가 필요하다. 다만, 입법체계 정비라는 측면에서는 교육기본법 내지 고등교육법에서 흡수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교 육기본법 내지 고등교육법상 권한의 위임 -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얼마 든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운용이 가능하며 '협의회'의 자율적 성격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7) 다만, 법인화 이후 국립대학법인으로서의 서울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률 정비
의 어려움은 더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 IV. 하위법령 제정과 위임 관련 사항

교육 관계 법률 및 분야별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개괄적인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다 루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 1. 교육 관계 법률의 하위법령 현황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사•분석 대상인 교육 관계 법률 62 개를 포함하여 교육 관계 법령은 약 240 여개가 존재한다. 즉 산술적인 평 균으로 산정해볼 때 하나의 법률이 약 3 개의 하위법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관계 법률의 하위법령이 다른 법제 분야보다 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위임 등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어 왔다.
240 개 조사 대상 법령을 두고 전체 법령의 위임근거 유무를 우선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위임 근거를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 2. 법령 위임 관계 관련 문제점

## (1) 명시적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3809호]」의 경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다.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809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호]은 연구학교를 지정 하여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하고 있으며, 1951년 제정된 연구학교규정에서 기인하고 있다. 「연 구학교에 관한 규칙」도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1 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함 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대통령령 제4401호] 의 경우에도 1969 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다.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대통령령 제4401호]

제 1 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 3 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 관한 건[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은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법령이다.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 관한 건[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은 학교 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가지고 있 지 아니하다.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도장학금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은 사범계 대학의 학 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게 사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규정이나 명시적 위임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동 규정 제2조에서 사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교육법 제 81 조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자 중에서 선발된 자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법이 폐지법률이라 는 점에서 개정시 정비가 필요하다.

- 사도장학금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 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 81 조의 규정 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

육과를 포함한다．이하＂대학＂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중에 서 선발된 자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46 호］」의 경우 적용범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다．명시적인 위 임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향후 개정시 위임근 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특례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일 반적인 형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별도 로 특별히 규정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도 판단해봐야 할 문제이며，규칙 에 대하여 별도로 특례를 두는 입법형식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또한 위임의 근거를 동 규칙의 제2조로 하고 있는 것도 입법체계적 인 측면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46호］
제 1 조（목적）이 규칙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 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 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mathbf{2}$ 조（적용범위등）（1）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 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1999．1．29＞
（2）학교의 교비회계（이하＂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 하＂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 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3）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계리하고，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 계에 준하여 계리한다．

## （2）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임시교원양성소규정48）［대통령령 제20740호］」의 경우 교육법 제 124 조 를 위임근거로 명시하고 있다．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개정되어 현 재 폐지된 법률인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향후 규정 개 정시 위임 입법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임시교원양성소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 1 조（목적）이 영은 교육법 제 1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의 경우 교육법 제 158 조 내지 제 162 조를 위임근거로서 명시하고 있다．향후 규정 개정시 위임의 근거 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 －장학금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 1 조 교육법 제 158 조 내지 제 16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 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 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인 적자원부령 제900호］」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을 위임근 거로 하고 있다．그런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은 교육감

[^14]이 고통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 역＂으로 규정하고 어서 동 규칙은 조례로 위임한 것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례이다．교육 자치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제 1 조（목적）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
제 77 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1）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 교의 장이 실시한다．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 80 조제 1 항의 후기학교 입 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개정 2011．3．18＞
1．학교 간 거리，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 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학교군 설정
나．학생배정방 법
다．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이 경우 여론조사 내 용에는 제 3 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
기 위하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1．3．18＞
（4）제 2 항제 3 호•제 4 호 및 제 3 항의 타당성 조사，여론조사에 필요한 구 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3．18＞

또한「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의 경우「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 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7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98 조제 1 항제 2 호 는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 할 소지가 있는 규칙으로 판단된다．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 호］
제 1 조（목적）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7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98 조제 1 항제 2 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6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7 조제 1 항제 2 호
제 97 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학생정원， 수업일수，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 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이하 생략．
제 98 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 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학생정 원，수업일수，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 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이하 생략．

## （4）기 타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 호］」의 경우 국사편 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데，「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을 설 치근거로 하고 있다．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위원회 운 영규칙을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 다．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에 기관명을 넣어 설치하는 방식으로 부처 소속기관을 설치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수의 소속기관이 남발될 우려가 있을 것이다．물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 한 법률」등 견제 장치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입법기술적으 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3．정비방안

하위법령의 경우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밝히고 있는 현재의 입안방 식에 따라서 입법체계를 갖추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명시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한 것 법령의 경우 위임 여부에 대한 확인 조차 불가능하여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는가는 판단조차 불가능하다． 한 두건도 아니고 법령이 개별 조문 규정 단위가 아닌 전체로서 위임 근거가 없이 제정되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입법체계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므로 향후 개정시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필요유무를 검토하여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폐지된 법률을 위임의 근거법령으로 밝히고 있어서 명확한 위 임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하위법령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임시교원양성소규정49）［대통령령 제20740호］」의 경우 교육법 제124조 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폐지 전 교육법 제124조는＂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과 교원연수기관 을 설치 또는 인가할 수 있다．＂고 하여 교원양성기관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었다．현재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6조50）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따라서 향후 개정시 근거 법률을 고등교육법 제46조로 명시하 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학금규정」의 경우에도 「교육법」 제 158 조 내지 제 162 조를 위임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법」은 현재 폐지법률이고，「교육법」 의 연혁을 살펴본바「교육법」 제 158 조 내지 제 162 조의 규정은 현행「교 육기본법」 제28조51）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개정시 근거 법 률을「교육기본법」 제 28 조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교육감이나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여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방식 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며 입법체계를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 여 위임관계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 자치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면 관련 하위법령은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적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별도로 정비안을 제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 제 3 절 고육 관계 법령 분야별 문제점 및 정비방안

아래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교육기본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을 살펴보고, 앞서 분류한 대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서술한다.

## I. 교육기본법

## 1. 현황 및 문제점

「교육기본법」은 교육관계법령의 기본법이라 볼 수 있으며,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 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육의 진흥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본법은 헌법상의 교육조항을 비롯하여, 이념과 기본제 도, 기본원리 및 일반원칙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헌법과 개별적 교육관계법을 연결하는 매개법이라 할 수 있다.52)
52) 이상윤,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59면.

## （1）교육기본법의 제정 및 주요 개정내용

1）교육기본법（법률 제5437호，1997．12．13，제정）

「교육기본법」에 관한 논의는 1949년 교육법 제정당시 정부가 「교육 기본법」，「학교교육법」，「사회교육법」의 형태로 입법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일본의 교육법체계를 모방한다는 비판으로 채택되지 못 하였다．이후 교육3법안，즉 교육기본법안，학교교육법안，사회교육법 안이 교육계와 국회，정부（당시 문화교육부）의 합의로 「교육법」이 제 정되었다．

「교육법」은 오랫동안 교육에 관한 통합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 으나，1982년 12월 31일의 「사회교육법」 및 1991년 3월 8일의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관련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통합법 으로서의 위상이 변화되었다．또한 교육정책의 변화 등 시대적 상황 의 변화에 따른 38 차례의 부분개정으로 법해석에 있어서 개정된 부분 과 개정되지 않은 부분과의 논리적 모순 내지 중복이 발생하고，법체 계에 있어서도 법률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되었다．그리고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학습자 중심 및 평생 학습 사회의 도래 등으로 복잡－다양하게 전개되는 교육수요자의 욕 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됨으로써 교육법 개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 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교육기본법」이 1997년 제정되었으며，동법은 총칙 （제 1 장），교육당사자（제 2 장），교육의 진흥 등（제 3 장） 3 개의 장과 29 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종래의 교육법 내용 중에서 교육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나，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교육기본법」의 제정은 기존의 통합된 형태의 교육법에서 교육3법 체 계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즉，「교육기본법」과 함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교육법의 체계는 기본교육 법규（「교육기본법」，교육행정 및 재정 관련법률），학교교육법규（「초•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특수•영재교육 관계법，「교 육공무원법」등의 교원관련법，사회교육법규（「평생교육법」 등）라는 체 계를 구성하였다．

2） 2000.1 .28 ，일부개정（법률 제6214호）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시책을 수 립•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이와 관련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남녀평 등교육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다．

3） 2002.12 .5 ，일부개정（법률 제6738호）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2004．1．20，일부개정（법률 제707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 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 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교육의 기본 법인 교육기본법에 규정하여 남녀평등교육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5） 2005.3 .24 ，일부개정（법률 제 7399 호）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에 의한 학생정보의 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하 는 한편,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미 전면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순차적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6) 2005.11 .8 , 일부개정(법률 제7685호)

학교에서 학문적 양심을 토대로 학업•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모든 국민이 교육의 제반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 로 하고 있다.
7) 2007.5.11, 일부개정(법률 제8415호)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성과 협동심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8) 2007.7.27, 일부개정(법률 제854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보유•관리 하는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에 있어서 인종 차 별 금지를 명시하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 교생활기록 등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9) 2007.12.21, 일부개정(법률 제8705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 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 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10) 2008.3.21, 일부개정(법률 제8915호)

타지로 유학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현재 11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학생들 의 주거안전과 주거향상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 (2) 구성 및 주요내용

현행「교육기본법」은 제 3 장 29 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에서 명 시하고 있는 교육의 기반을 세우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적인 사항들이 정의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주로 원칙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기 본법의 목적(제 1 조)과 교육이념(제 2 조), 학습권(제 3 조), 교육의 기회균 등(제4조), 교육의 자주성(제5조)과 중립성(제6조)에 관한 원칙들이 규 정되어 있으며, 교육재정(제7조)과 의무교육(제8조), 학교교육(제9조)과 사회교육(제 10 조), 그리고 학교 등의 설립(제 11 조)에 관한 사항들이 정 의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교육 당사자들의 주요 권한과 권리, 책임 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 당사자에는 학습자(제 12 조), 보호자(제 13 조), 교원(제 14 조), 교원단체(제 15 조), 학교 등의 설립자와 경영자(제16조),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7조) 가 포함된다.

「교육기본법」의 제3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교육진 흥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남녀평등 교육의 증진（제 17 조의 2 ）， 학습윤리 확립（제17조의3），건전한 성의식 함양（제17조의4），특수교육 （제 18 조），영재교육（제19조），유아교육（제 20 조），직업교육（제 21 조），과학• 기술교육（제 22 조），학교체육（제 22 조의 2 ）의 증진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보 화（제23조），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 전산화（제23조의2），학생정보 의 보호 원칙（제 23 조의 3 ），학술문화 진흥（제 24 조），사립학교 육성（제 25 조）， 평가•인증제도（제 26 조），교육 관련 정보공개（제 26 조의 2 ），보건 및 복 지 증진（제 27 조），장학제도（제 28 조），국제교육（제 29 조）등의 진흥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제3장에서 언급된 영역들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진흥되어야 하는 교육 영역들이다．

「교육기본법」의 구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본법의 구성체계와 비 교하여 보는 것은 교육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 하게 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기본법의 구성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기본법 의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ext { 기본법의 구성체계 }{ }^{53} \text { ) > }
$$

| 규 정 순 서 | 규 정 내 용 | 비 고 |
| :--- | :--- | :--- |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  |
|  | 제 2 조（기본이념） | 기본방향，기본원칙 |
|  | 제 3 조（정의） |  |
|  | 제 4 조（다른법률과의 관계） | 적용범위 |
|  | 제 5 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  |

53）박영도，앞의 책， 349 면．

| 규 정 순 서 | 규 정 내 용 | 비 고 |
| :---: | :---: | :---: |
| 제 2 장 $\bigcirc \bigcirc$ 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 6 조（ $\bigcirc \bigcirc$ 기본계획） |  |
|  | 제 7 조（시행계획） |  |
|  | 제 8 조（ $\bigcirc \bigcirc$ 위원회） |  |
| 제 3 장 $\bigcirc \bigcirc$ |  | 정책의 구체적 내용 |
| 제 4 장 보 칙 | 제 0 조（국회보고） | 연차보고 |
|  | 제 0 조（권한의 위임，위탁） |  |
| 제 5 장 벌 칙 |  |  |

일반적인 기본법의 구성체계와 앞서 살펴보았던「교육기본법」의 구 성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적인 기본법의 경우에 관련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를 구 체화하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들을 기본법의 구성내용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교육기본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 져있다는 점이다．물론 이러한 점이 바로 교육기본법이 교육에 대한 이념을 선언하는 선언적인 기본법에 가장 충실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 다고 하는 방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 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교육기본법상」에 교육정책 전반 에 대한 계획 및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 시행계획 등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향후「교육기 본법」의 개정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 （3）하위법령과의 관계

「교육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장학금규정」，「국립학교설치령」 등 시행령이 6개，「장학금규정 시행규칙」，「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 규칙」 등 시행규칙이 3 개로 조사되었다．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 <br>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4) 문제점

교육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교육 관계 법령을 연결해주는 가교로서 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교육에 대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가장 근 본이 되는 법률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기 본적 정책수단을 형성하며 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된 개별 법률이나 행정입법 조례 등을 연결하여 형식적 법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당해 분야 정책의 시행 및 조정과 관련된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기본법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하였 는데，사회적 법치국가가 발전하면서 정책입법이 증대하게 되는 과정 에서 일반적 행위 준칙으로서의 법의 기능과 더불어 사회의 능동적， 목적의식적，정의 지향적 관리기구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었다．이 과정 에서 정책의 표현으로서의 법에 관한 관념들이 형성되고 행정법의 정 책화가 이루어졌으며，기본법이 핵심적인 입법수단으로 등장하였다．54） 정책법으로서의 기본법은 정책입법，프로그램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지도법적，지침법적 성격을 갖는다．「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이념과 교육의 당사자，교육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념 적 선언적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이 교육헌장으로서의 성 격을 갖는다면 교육기본법 역시 가급적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 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교육기본법」 의 개정연혁을 살펴본바 개별 교육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해관계자 및 이익집단의 반대로 어려운 경우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 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기형적인 개정도 수차례 있었다는 점 에서「교육기본법」의 근원적 지위에 대한 물음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교육기본법」과 하위법령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기본법 의 경우에는 기본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고용정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 칙，「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기본 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법 중에서 같은 제명의 하위법령을 가지고 있

54）박영도，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6，9－16면．

지 아니한 경우는 교육기본법，관광기본법，국가보훈기본법의 3 건 밖 에는 없었다．동일한 제명의 하위법령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관계법령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점55）에서도 다른 기본법들과 차이 점을 가진다．즉「교육기본법」은＂기본법＂이라는 제명에 특히나 부합 하는 법으로서＂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그와 같은 교육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조사 되고 있는 것들로서 장학금규정，사도장학금에 관한 규정 등이 존재 한다는 것은「교육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에 적합하 지 못한 규정을 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장학금규정」，「사 도장학금에 관한 규정」，「국립학교 설치령」 등 「교육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의 규정사항들을 살펴볼 때 각각의 법령 은 개별적인 교육 관계 법령의 하위법령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지「교육기본법」 전반에 대한 하위법령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교육기 본법」의 헌법과 개별 교육 관계 법령과의 가교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현재「교육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교 육기본법」의 관계 법령 내지 유관 법령이라 할 수 있는「고등교육법」 ［법률 제11384호，2012．3．21，타법개정］，「과학교육 진흥법」［법률 제 10867호，2011．7．21，일부개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07호，2011．7．25，일부개정］，「영재교육 진흥법」［법률
$55)$ 관광기본법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법률 제 10555 호， 2011.4 .5 ，일부개정］，관 광진흥법［법률 제 10599 호，2011．4．14，타법개정］，한국관광공사법［법률 제9474호， 2009．3．5，일부개정］을 관계 법령으로，국가보훈기본법의 경우에는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17호，2012．3．21，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2011．9．15，타법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법률 제11141호，2011．12．31，타법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법 률 제11332호，2012．2．17，일부개정］，보훈기금법［법률 제11042호，2011．9．15，타법개 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103 호，2011．11．22，타법개정］，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05호，2012．1．17，일부개정］，특수임 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18호，2012．3．21，일부개정］을 관 계 법령으로 가지고 있다．교육기본법의 경우에도 영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다 수의 관계 법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10875호，2011．7．21，일부개정］，「유아교육법」［법률 제11382호， 2012. 3．21，일부개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1384호， 2012. 3．21，타법개정］，「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13호， 2008．3．21，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219호，2012．1．26，일 부개정］，「평생교육법」［법률 제10915호，2011．7．25，일부개정］등의 하위 법령으로 편입되는 것이 입법체계상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하위법령 및 위임사항과 관련하여「장학금규정」 및 「사도장학 금에 관한 규정」의 경우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이 아닌 현재는 폐지된 법률인 「교육법」을 그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그대로 두고 있 다．향후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물론 「교육법」 의 규정을 찾아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교육기본법」 제정이후 약 15 년이 지났고 그동안에「장학금규정」 및 「사도장학금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었던 전적56）이 있는 바 수범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법령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2．정비방안

## 1）헌법정신의 구현 및 교육헌법으로서의 교육기본법의 위상 강화

기본법은 당해분야에 있어서 지도법•지침법으로서 개별법을 유도 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개별법에 대한 우월성이 있는 것이 많 다．또한 실제로 기본법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그곳에 규정하는 시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는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기본 법에 정하는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나아가서는 기

56）「장학금규정」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정이후인 1998년 일부개정된 전적이 있다．

본법이 규정하는 분야•사항에 관련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법에 적 합하도록 요청되고 있다．57）기본법의 이와 같은 위상은 교육기본법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바이다．「교육기본법」이 교육관계 법령에서 가지 는 위상을 생각해볼 때「교육기본법」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교육에 관한 헌법정신을 구체화하고 있는 기본법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입법과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이념과 지향점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육과 교육행정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교육의 자주성•전문 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대체적으로 「교육기본법」에서 구체화되었 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교원의 중립성 이외에도 교육과정과 교육행정 영역에 있어서의 중립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또한 대학 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교육기본법」이 고등 교육영역에서 가지는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평생교육의 진흥의무를 국가에 주고 있는데＇교육 기본법에서는 학교의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노력의무＇와＇평생교 육을 위한 사회교육 장려＇원칙으로 구체화되어 있어서 이념으로서의 평생교육 개념과 제도로서의 사회교육이라는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평생교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 2）교육준거법으로서의 보완필요성

교육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에게는 책임이라는 기본 법률관계를 설정하고＇교육당사자＇개념을 두어 그들 간의 권리•의무•책임 관계를 정비하였다는 것이 커다란 입법성과라고 할 수 있다．다만 교육행정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및 단위학교 간의 역할분담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57）박영도，앞의 책（2006），332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에 관한 조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 어서 책임부담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58）

또한 지방교육 자치를 포함하는 교육자치의 이념은 교육의 자주성 조항에서 간접적으로 예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자치와 관련하여 교육행정의 운영원칙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규정은 좀 더 구체적이 될 필요가 있다．또한 교육 당사자에게 있어서 학습자나 교육자의 윤 리의식 확립이라는 입법정신을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후속 입법 이나 정책이 미진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교육의 진흥과 관련해서는 교육기본법이 전통적인 진흥 영역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으 며，영재교육의 탈목적화，영•유아 보육행정의 이원화，전문계고 및 직업교육의 비교 열위，내국인 중심의 국제교육 등은 여전히 남아 있 는 과제이다．

또한「교육기본법」이 교육관계 법령의 준거가 되는 근본규범으로서「교육기본법」의 입법체계가 헌법과 다른 관련 법령들과의 조화 및 균형 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입법내용이 다른 법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거나 상충되지 아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 다．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학습권 규정59），교육기회의 차별금지사 유 보완60），고등학교 의무교육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아니하고「교육기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가 필요하다．${ }^{61)}$ 나아가 「교육기본법」에 배치되는 입법이 이루어지거

58）고전，교육기본법의 제•개정과 교육입법의 과제，교육법학연구 제 20 권 2 호，대한 교육법학회，2008，22면
59）교육기본법에서는＇능력과 적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더하여 소질 등을 고려 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쳐 국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정의견이 있었는데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의 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0）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교육기본 법 제 4 조의＇신체적 조건＇을＇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장애＇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 토할 수 있다．
61）류충현，제 18 대 국회 교육기본법（안）의 주요 입법쟁점 분석，교육법학연구，제 21 권

나 관련 법령의 개정시 교육기본법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교 육기본법의＂기본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없어진다고 할 것이다．

## 3）교육기본법의 패러다임 전환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 육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을 바꾼다는 의 미이다．현재의 「교육기본법」은 시행 이후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십여 차례가 넘게 부분적인 법 개정을 하였지만，여전히 국가와 정부 주도 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현행 교육기본법은 민간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향후 「교육기본법」의 개정시에는 우 리 교육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서 기본법 을 제정하게 된 취지와 기본법이 가져야 하는 이념적 지향점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기본법의 구성과 관련된 개선방안

정책의 흐름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시간의 흐름 가운데 서 기존의 법령을 검토하여 합리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존 입법체 계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기본법 이 제정된 이상 기본법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 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기본법의 입법목적•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62） 현재와 같이 개별 교육 관련 법령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사항들을 담 아서 법령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주는 형태의 「교육기본법」

[^16]개정들은「교육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역 할을 해내기에 곤란한 누더기와 같은 법이 되어가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기본법의 입법체계에 적합한 형태로 우리 교육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와 같은 방향성대로 흔들림없는 교 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라도「교육기본법」이 기본법 의 일반적 체계를 갖추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 이다．일단 교육기본법은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번 호 | 현행 r교육기본법」 | 번 호 | $\mathbf{r}$ 교육기본법」 정비방안 |
| :---: | :--- | :---: | :--- |
| 1 | 목 적 | 1 | 목 적 |
| 2 | 교육이념 | 2 | 교육이념 |
| 3 | 학습권 | 3 | 정 의 |
| 4 | 교육의 기회균등 | 4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5 | 교육의 자주성 등 | 5 | 학습권 |
| 6 | 교육의 중립성 | 6 | 교육의 기회균등 |
| 7 | 교육재정 | 7 | 교육의 자주성 등 |
| 8 | 의무교육 | 8 | 교육의 중립성 |
| 9 | 학교교육 | 9 | 교육재정 |
| 10 | 사회교육 | 10 | 의무교육 |
| 11 | 학교 등의 설립 | 11 | 학교교육 |
| 12 | 학습자 | 12 | 평생교육 |
| 13 | 보호자 | 13 | 학교 등의 설립 |


| 번 호 | 현행 「교육기본법」 | 번 호 | 「교육기본법」정비방안 |
| :---: | :---: | :---: | :---: |
| 14 | 교 원 | 14 | 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5 | 교원단체 | 15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 등 |
| 16 |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 16 |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
| 1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17 | 학습자 |
| 17－2 |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18 | 보호자 |
| 17－3 | 학습윤리의 확립 | 19 | 교 원 |
| 17－4 | 건전한 성의식함양 | 20 | 교원단체 |
| 18 | 특수교육 | 21 |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
| 19 | 영재교육 | 2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20 | 유아교육 | 23 |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 21 | 직업교육 | 24 | 학습윤리의 확립 |
| 22 | 과학－기술교육 | 25 | 건전한 성의식함양 |
| 22－2 | 학교체육 | 26 | 특수교육 |
| 23 | 교육의 정보화 | 27 | 영재교육 |
| 23－2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 무의 전자화 | 28 | 유아교육 |
| 23－3 |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 29 | 직업교육 |
| 24 | 학술문화의 진흥 | 30 | 과학－기술교육 |
| 25 | 사립학교의 육성 | 31 | 학교체육 |
| 26 | 평가 및 인증제도 | 32 | 학술문화의 진흥 |
| 26－2 |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 33 | 사립학교의 육성 |
| 27 | 보건 및 복지의 증진 | 34 | 평가 및 인증제도 |
| 28 | 장학제도 등 | 35 |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


| 번 호 | 현행 「교육기본법」 | 번 호 | 「교육기본법」 정비방안 |
| :---: | :--- | :---: | :--- |
| 29 | 국제교육 | 36 | 보건 및 복지의 증진 |
|  |  | 37 | 국제교육 |

이상의「교육기본법」의 정비방안에는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담고 있지 아니한 교육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담고，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교육기본법」과 관련 법령의 체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다．교육기본계획 규정의 추가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담지 아니하고 있는 기본법이 교육에 있어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방안이다．또한 교육의 정보화，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학생정보의 보호원칙은 「초•중등교 육법」 또는「고등교육법」으로 내려 정리하도록 「교육기본」법의 정비 방안에서는 삭제하여 제시하였다．

## ㅍ．조직 관련 법령

## 1．현 황

교육 관계 법령 중 조직 관련 법령은 총 25 건이다．이 중 법률은 세 건으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한국교육학술정 보원법」，「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그 것이다．그밖에「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 교육 관련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교육 조 직 관련 법령의 현황 및 위임 근거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법령명은 가나다순임］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행 <br> 정 <br> 조 <br> 직 <br> 통 <br> 칙 <br> （24） |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대 통령령 제23644호］ | －교육공무원법 제 3 조 및 제 54조 |
|  |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22234호］ | $-「$ 유아교육법」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 규정 에 의한 학교의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심의회를 둠 |
|  |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 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2호］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관청 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024호］ |  |
|  |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 부령 제 156 호］ |  |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82호］ |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 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 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 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 |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 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133호］ |  |
|  |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 －r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4조제2항 |
|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br> ［대통령령 제23809호］ |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 <br>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음） |
|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8호］ |  |
|  |  |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교육 과학기술부령 제 1 호］ | －국사편찬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2조제1항（설 치근거） |
|  |  | 남녀평등교육심 의회규정［대통 령령 제22269호］ | －교육기본법 제 17 조의 2 |
|  |  | 임시교원양성소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 －교육법 제 124 조 <br> （현재 폐지된 법률인 교육 법에 근거하고 있어 위임 근거 확인 필요） |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739호］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제 33 조제 2 항 |
|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2호］ |  |
|  |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 자사업 심사규칙［교육과학기 술부령 제49호］ |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 41 조 |
|  |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51호］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645호］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제 30 조부터 제 34 조까지 의 규정 |
|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2호］ |  |
|  |  | 학술원사무국 직제［대통령령 제22363호］ |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 |
|  |  |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 －「학술원 사무국 직제」제2조 제1항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소 분 류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  |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법률 제 9414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 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 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 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 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 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 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 한국교육학술 정 보 원 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 10078 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 립 - 육성하여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대학의 상호협조 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1984. 4. 10. 제정되 었음 |
|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법 률 제10075호]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 육성하여 전문대학운 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 공성을 앙양하며 전문대학 간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 1. 29. 제정됨 |

## 2．문제점 및 정비방안

교육조직 관련 법령의 경우 명시적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법령 으로「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현재 폐지된 법률인「교육법」을 위임근거로 하고 있는「임시교원양성 소규정」에 대하여 개선•정비가 필요함을 앞서 지적하였으며，그 외에 입법체계 중 위임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

## III．학교 교육 관련 법령

## 1．단계별 학교 교육 및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 현황

학교교육 중 학교 단계별 학교 교육 및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은 27 개이다．이 중 법률은 「경제자유규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 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고등교육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유아교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초•중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과「평생교육법」등이 있다．여기에서는「사립학교법」과 「평생교육법」을 제외한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사립학교법」과 「평생교육법」은 별도로 문제 점과 정비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단계별 교육에 관련된 법령의 현황 및 위임 근거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법률명 가나다순］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 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ㄷ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학 } \\ & \text { 교 } \\ & \text { 교 } \\ & \text { 육 } \end{aligned}$ | 통칙 <br> （33） |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0632호］ |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 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 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설립－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 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2005． 5. 31．제정됨． |
|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 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23928호］ |  |
|  |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 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21호］ |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제 <br> 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 <br>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음） |
|  |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 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3928호］ | －「고등교육법」제11조의 2 |
|  |  | 고등교육법［법률 제11384호］ |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7．12．13．제정됨．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소 분 류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50호］ |  |
|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 령령 제23726호］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
|  |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br>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 2 항은 교육감이 고통학교의 입학전형을 실 시하는 지역을＂시•도 조 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 정하고 있음－조례로 위임 한 것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례） |
|  |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214호］ |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 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 을 양성하고，나아가 국가 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2012．1．26．제정됨 |
|  |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3973호］ |  |
|  |  |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의 4 |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 한 규정［대통령령 제22467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의3 |
|  |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과 학기술부령 제11호］ |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 정책•교육과정 • 교육방 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 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 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음 <br>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음） |
|  |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308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의 2 ：외국인학교 <br> －「유아교육법」 제 16 조 ：외 국인유치원의 설립 |
|  |  | 유아교육법［법률 제11382호］ |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04．1．29．제정됨 |
|  |  | 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4호］ |  |
|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과 학기술부령 제 133 호］ |  |
|  |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7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 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 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 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 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 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6479호] | -초 • 중등교육법 제27조제 3 항 |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66호]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 타 학예(이하 "교육•학예" 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 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1991. 3. 8. 제정됨 |
|  |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219호] |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7. 12. 31. 제정됨 |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 령령 제23975호] |  |


| 대 분 류 | 소 분 류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 학기술부령 제52호］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64조 |
|  |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에 관한 규칙［시행 2011．3．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 2010. 11．22，일부개정］ | $-「$ 초 • 중등교육법」제 25 조 |
|  |  | 학위의종류및표기방 법에관한 규칙［교육부령 제776호］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

## 2．단계별 교육 관련 주요 법률 개관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 10 조에서 평생교육을 위 한 사회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단계별 교육은 크게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학교교육은 다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으로 나누어진다．63）현재 관계 법령은「고 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평생교육법」 등이 있다．교육 단계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63）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교육법규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제도는 수준별 교 육의 각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교육목표와 내용，접속관계를 규정하며，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6－3－3－4제의 기본학 제를 가지고 있으며 단선형 단계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유아교육법

1）제정취지
「유아교육법」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제정되었다．「유 아교육법」제정은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이 높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 잇는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 고，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 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함이었다．

## 2）주요 내용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유아교육법 제 1 조）．여기에서＇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같은 법 제 2 조 제 1 호），＇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 다（같은 법 제 2 조 제 2 호）．

이 법은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30일 시행된 법으로， 국가 인적 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유 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 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시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교육과 영유아보 육법에 근거한 보육으로 나뉘어서 규율되고 있었다．
3) 유아교육법 관련 법령체계도

| 법 <br>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4) 문제점 및 정비방안

「유아교육법」의 경우 유아교육은 생애 처음 받는 교육으로서 국가 는 인적 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야 하며 다양 한 유아계층의 교육접근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유아교육법 관련 입법체계에 있어서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 육법의 정책적 교차점 및 이원적 관리•집행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교차점에 있는 수범자로서의 유아의 학부모는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 법은 정책적 혼선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입법체계상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64）는 교육 학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교육적•행정적•재정적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법이 제정되어야 함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 장65）이 있어왔다．영유아의 발달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무 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양 법의 통합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 （2）초•중등교육법

1）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은 「고등교육법」 등과 마찬가지로 1997년 교육법이 개편되면서，초•중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 하고 국민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 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률 제5438호로 제 정되었다．

64）나정，장여숙，문무경，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제도분석，한국교 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김은설，신나리，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육아정책포럼 창간호，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등．
65）권건일，김재환，최순자，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을 위한 비교분석，유 아교육연구 제27권 제6호，한국유아교육학회， 2007.

## 2）주요 내용

「초•중등교육법」은「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 가는「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그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교육내용，학교 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 조직， 평준화 등 학교 선택권，의무교육，학습권，초•중등학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은 총칙，의무교육，학생 과 교직원，학교，보칙 및 벌칙의 총 5 개장 68 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3）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령 체계도

| 법 <br>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br> 운용 및 회계관리에 <br> 관한 규칙 [교육과학 기술부령 제52호] |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85호] <br>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과학 기술부훈령 제232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21호] <br> -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15호] <br>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과학기술 부훈령 제 182 호] |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br> 학교 설립-운영 규정 <br> [대통령령 제22234호] | 고등학교 이하각 급 학 교 설립 - 운 영 규정시 행규칙 [교육과학기 술부령 제93호] |  |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br> [대통령령 제23726호] |  | -2011학년도 2학기 초 등학교중학교특수학 교 교과용도서(국정)의 책별 정가 [교육과 |


| 법 <br> 률 | 시행령 |  | 행정규칙 |
| :--- | :--- | :--- | :--- |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br> 기준령 [대통령령 제 23090호]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 치기준령 <br>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15호] |  |
|  | 외국인학교 및 외국 인유치원의 설립-운 영에 관한 규정 [대통 령령 제21308호] |  |  |
|  | 조기 진급및조기 졸업 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6479호] |  |  |
|  | 특수학교시설 - 설비 기준령 [대통령령 제 19959호] |  |  |
|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교육 과학 기 술 부 령 제 1 호] <br> - 교원자격의취득을위 한보수교육에관한규 칙 [교육과학기술부 령 제1호] -교육정보시스템의 운 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 과 학 기 술 부 령 제1호] <br> -국립 초•중등학교회 계규칙 [교육과학기 술부령 제 90 호] | -대한민국 스승상 선 발규정 [교육과학기 술부훈령 제247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 부기준 [교육과학기술 부고시 제2011-15호]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교 육과학기술부훈령 제 185호] <br>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과학 |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령 제 82 호] | 기술부훈령 제232호] -중고등학교특례 입학 업무처리요령 [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15호] <br> -특수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학 기술 부 고 시 제2009-37호] |
|  | 외국인학교 및 외국 인유치원의 설립-운 영에 관한 규정 [대통 령령 제21308호] |  |  |

4) 문제점 및 정비방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법 제 23 조제 1 항). 즉 교육과정의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학교임을 명 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 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토대로 하여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66)}$ 그러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그 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인 명 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제도의
66) 김병기, 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화' 방안, 국회개원 제 56 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2004년, 225-226면.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률로 그 기본적인 사 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영 및 실시의 기준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 로 규정하도록 하는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법 제 23 조 제 2 항의 경우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만 위임하고 있어서 어떠한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위임이 없다．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현 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라고 보여진다． 최소한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 29 조의 경우 제1항에서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이 와 같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교사들이 학습자료를 재구성해 서 사용하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대통령령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 18 조 이하에서 교과용도 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 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여야 할 것이다．나아가 동 규정 제 26 조에서 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자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소지를 남기고 있다．67） 향후「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시 반영되 어야 할 것이다．

67）김병기，앞의 글，227－228면 참조．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교육과정심의회＇의 경우「초•중등교육법」 제2조는 다음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교 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며 별도로 교육과정심의회를 둔다는 위임규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 2 조（학교의 종류）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 를 둔다．

1．초등학교•공민학교
2．중학교－고등공민학교
3．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특수학교
5．각종학교

교육과정심의회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설치의 근거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위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향후 정비가 필요한 규정이다．

## （3）고등교육법

1）제정 취지
고등교육법은 교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당시，교육법 체 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현재의 교육여건에 부합하지 못하고，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 어 교육법에 대한 전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그동안 확정•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 고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에게 고 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 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 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 반을 마련하고자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9호로 제정되었다．

2）입법목적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3）주요내용

「고등교육법」은 4장 6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학교의 종류（법 제2 조），국•공•사립학교의 구분（제 3 조），학교의 설립（제 4 조），학생의 자 치활동，교직원，수업，학점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교육재정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 할 수 있고，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명예 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다．

그밖에 「고등교육법」에서는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 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각종학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목적，수업연한，학위수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 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 을 양성함으로 목적으로，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 적으로 한다．
3) 고등교육법 관련 법령체계도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고 } \\ & \text { 등 } \\ & \text { 교 } \\ & \text { 육 } \\ & \text { 법 } \end{aligned}$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 통령령 제23650호] | -명예교수규칙 [교육과 학기술부령 제141호]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 학생에 관한 규칙 [교 육과학기술부령 제114호]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 호] -학위의종류및표기방 법 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776호] |  |
|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 통령령 제23928호] |  | 고등교육 평가인 증 인정기관 지정 기준 [교육과학 기술부고시 제200926호] |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2]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 학기술부령 제 137 호] | -교(원)장교(원)감 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 교육과정 [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0호] -교원연수 이수 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교육 과학기술부예규 제47호] |


| 법 <br>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국립학교 설치령 [대통 |
| :--- |
| 령령 제24075호] |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  |  | 범위 및 기준[교 육과학기술부고 시 제2011-34호] -사립대학 통폐 합 기준 [교육과 학 기 술 부 고 시 제2012-26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8호] |
|  | 사이버대학 설립 -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3928호] |  |  |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br> [대통령령 제23644호] | 한국 방송 통 신 대학교설 치령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47호] |  |
|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 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  | - 각 종 학 교 에 관 한 규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 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 | -고등교육 평가 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교육 |


| $\begin{aligned} & \text { 법 } \\ & \text { 률 } \end{aligned}$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  | 가에 관한 규칙 [교육 과학기술부령 제21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br> 제 131호] | 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6호] <br> -교육과학기술부 행 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교육 과학기술부훈령 제251호] <br> -대학 교육역량강 화 사업 관리운 영에 관한 훈령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42호] -대한민국 스승 상 선발규정 [교 육과학기술 부훈 령 제247호] -신입생 미충원인 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0호] - 외교안보 연구 원 교수요원 인사 행정에 관한 예 규 [외교통상부 예규 제101호]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 한 규칙 [교육과 |

제 3 장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 $\begin{aligned} & \text { 법 } \\ & \text { 률 } \end{aligned}$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  |  | 학기술부훈령 제 266호] <br> -전문대학 3 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8호] <br> -전문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과학 기술부훈령 266호] <br>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 지침 [교육과학 기술부예규 제 31호] <br> -중소기 업훈련컨 소시엄 실시규정 [노동부고시 제 2009-104호] -학력인정 각종 학교 고시 [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10-17호] |

4）문제점 및 정비방안
「고등교육법」의 경우 제 5 조에서 학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하고 있다．68）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8 조는＂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 상황등 국가의 교 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이는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69)}$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동 조항 정비시 위임의 범위에 적합하도록 지 도•감독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의 범위를 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 52 조는 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다．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학위보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동 규정에 대한 모법의 위임이 없어 향후 법률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학력 인정 관련 법령

## 1．현 황

교육 관련 법령 중에서 학력 인정과 관련된 법령은 총 10 건으로 조사 되었다．이 중에서 법률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학 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2 개이다．관련 법령의 제정연혁 및 위임사 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68）고등교육법 제 5 조（지도•감독）（1）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指導）•감 독을 받는다．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9）김병기，앞의 글， 240 면．
［법령명 가나다순］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학 } \\ & \text { 교 } \\ & \text { 교 } \\ & \text { 육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학 } \\ \text { 력 } \\ \text { 인 } \\ \text { 정 } \\ \text { (10) } \end{gathered}$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
|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
|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취득의 기 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4．7．제 정됨 |
|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043호］ |  |
|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0호］ |  |
|  |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교육과학 기술부령 제1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7조제1항제 2 호 및 제 98 조제1항제 2 호와 고등교육 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 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 제 1 항제 2 호는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000 호]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 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 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 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7. 1. 13. 제정됨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9호] |  |
|  |  | 1945 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 졸업자자격인정령 [대통령령 제 4401호] |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 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 을 인정하기 위한 대통령 령(1969년 제정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음) |

## 2．문제점 및 정비방안

학력인정에 관한 법령의 경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은 학점 인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 법률이 하나로 정비되어도 학력인정과 관련된 정책 집행상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입법체계 및 입법경제상으로 법률의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의 경우 현재에도 이와 관련된 자격인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수범자가 존 재하는지 하는 검토를 통해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입법목적을 달성한 경우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945 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의 경우 규정 내용도 폐지된 법률인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부터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필요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V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 1．현 황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은 37개이며，이 중에서 법률은 「국 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법인 울 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학교시설 사업 촉진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7개이다．관련 법령의 제정연혁 및 위임관 련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법령명 가나다순］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학 } \\ & \text { 교 } \\ & \text { 교 } \\ & \text { 육 } \end{aligned}$ | 학 <br> 교 <br> 의 <br> 설 <br> 치 <br> 시 <br> 설 <br> （37） | 각종학교에관한규칙［교육과학 기술부령 제 1 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3항 －고등교육법 제59조 제5항 |
|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br>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2234호］ | －r유아교육법」제 8 조 <br> $-「$ 초•중등교육법」제4조 <br> - 「사립학교법」제5조 <br>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 8 조 <br> - r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
|  |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 영규정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 부령 제93호］ |  |
|  |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대통 령령 제23815호］ |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 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 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 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 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 업고등학교의 설립－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br>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 항은 권한의 위임규정임） |
|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3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 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 로 2010．12．27．제정됨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소 분 류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 령령 제23116호］ |  |
|  |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1호］ | －국립대학법인인 울산과학기 술대학교를 설립하여 국가 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울산 지역의 기술•지식혁신을 주 도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 인 전문 기술•경영•교육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2007．4．6．제정됨 |
|  |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 |  |
|  |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교육과학기술부 령 제3호］ |  |
|  |  |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24075호］ | $-「$ 교육기본법」제 11 조제 1 항 <br> - 「초•중등교육법」제 3 조 <br> - 「고등교육법」제18조•제19조 |
|  |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 령령 제23889호］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소 분 류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 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  |  |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4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0 조제 4 항 제 1 호 |
|  |  |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3928호］ | - 「고등교육법」 <br> - 「사립학교법」 |
|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
|  |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대통령령 제23090호］ | －「초 • 중등교육법」 제51조 |
|  |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15호］ |  |
|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66호］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 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 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2007. 7．27．제정됨 |
|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2839호］ |  |
|  |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3928호］ | －「고등교육법」제 2 조제 5 호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소 분 류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 술부령 제108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 조의3 |
|  |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대통 령령 제19959호] | -초•중등교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
|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 별법 [법률 제11385호] |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기 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평생 교육기회를 확충하고 개인 의 자아실현과 국가 및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1999. 8. 31. 제정됨 |
|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87호] |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제 10599호] | -국민학교•중학교•법령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 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 화하여 학교시설의 설치• 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1982. 12. 31. 제정됨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38호] |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599호］ |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라 한다）용 학교용지의 조 성•개발•공급 및 관련경 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 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 로 1995．12．29．제정됨 |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  |
|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886호］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 법」（법률 제6219호•제6744 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739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한다．이하＂특례법＂이라 한 다）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 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 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목 적으로 2008．3．14．제정됨 |
|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br> 시행령 <br> ［대통령령 <br> 제 21080호］ |  |
|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3644호］ | -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 <br> - 「고등교육법」제18조•제19조 |


| 대 분 류 | 소 분 류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대 통령령 제23644호］ | -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 <br> - 「고등교육법」제18조•제19조 |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 규칙［교육부령 제747호］ |  |
|  |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 령령 제23644호］ |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 |
|  |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 전문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23644호］ |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 |

## 2．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교 설치에 관한 법령의 경우 학교에 관한 일반 법률인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하위법령인 경우가 많 다．별도의 법령（대통령령）으로 학교 설치의 근거를 따로 마련하는 것 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검코가 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학교 설치에 대한 근거를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즉，현재 학교 설치에 관한 법령들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입법 경제적 낭비로 판단된다．실질적으로 학교에 대한 설치 기준은 법률 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 다양한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대통령 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타양한지 의문이다．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는 교육제도의 일환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 문이다．향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또한

입법체계상의 문제에서는 벗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관련된 문제로서 현재 교육부 소관이 아닌 다른 부처 소관의 법령으로 학교 설치에 관 한 법령70）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학교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정책 전체 및 교육제도와의 연계성을 가지도록 연결고 리를 지어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VI．사립학교 관련 법령

## 1．현 황

## （1）사립학교 관련 법령 현황

사립학교 관련 법령은 7개로 이중에서 법률은 「사립학교법」，「한국 사학진흥재단법」의 2 개이다．관련 법령의 제정연혁 및 위임관계에 관 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법령명 가나다순］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소 분 류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사 <br> 립 <br> 학 <br> 교 <br> （7）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 업 위탁관리규칙［교육과학기술 부령 제77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96 조 |
|  |  | 사립학교법［법률 제11216호］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 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1963．6． 26 제정됨 |

70）「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이 대표적이다．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74호] |  |
|  |  | 사 립학교보조와 원조에관한건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 호] |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 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 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음) |
|  |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음) |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 10780호] | -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사 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지 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1989. 3. 31. 사학진흥재단법 으로 제정되었으며, 1995년 한 국 사 학 진흥 재 단 법으 로 개정됨. |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대통 령령 제23387호] |  |

## （2）주요법률 ：사립학교법

1）제정취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립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1963．6．26，법률 제1362호）．

2）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제 2 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유아교육법」제 2 조제 2 호와 「초•중 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학 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단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산업체가 고용한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 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사립 대학교육기관 이 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 도 교육감의 지도•감독 을 받는다．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 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 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학교법인은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대학평의원회 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원，학붐，，지역사회의 대표가 참여 한다．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책무성을 강화하였다．학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3)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체계도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 } \\ & \text { 립 } \\ & \text { 학 } \\ & \text { 교 } \\ & \text { 법 } \end{aligned}$ | 사립학교법 시행령 <br> [대통령령 제23974호] |  | -사립학교교원임 면보 고서식 [교육과학기술 부고시 제2009-3호] -종교지도자 양성 대 학법인 지정 고시 [교 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03호] |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br> [대통령령 제22234호] | 고등학교이하 각 급학 교 설 립 - 운영규정 시 행규칙 [교육과학기술 부령 제93호] |  |
|  | 기술대학설립 - 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 23889호] | 기 술 대 학 설 립 - 운 영 규정시행규칙 [교육과 학기술부령 제 1 호] |  |
|  | 대학설립•운영 규정 <br> [대통령령 제23928호]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 술부령 제1호] |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253호] <br> -박사학위 과정 설치 를 위한 교원 연구실 적 인정범위 및 기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4호] <br>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6호] |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  |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8호] |
|  |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과학 기술부령 제76호] |  |
|  |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 관한건 [교육과학기술 부령 제1호] |  |
|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과학기술 부령 제134호] |  |
|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46호] |  |
|  |  |  |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9999호]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 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0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 |


| 법 <br>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2．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 분야 입법에 있어서 의제 설정이 타당하게 되지 못한 것의 예 로， 1963 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을 들 수 있다．이 법률의 경우 학 교법인과 사립학교，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제 정되었다．대개 각국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와 그것을 운영하는 기구에 대한 규정들이 중심 내용이다．따라서 우리 「사립학교법」도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이 사립학교 교원의 지 위가 의제로 설정된 결과 사립학교법 속에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 정들이 대폭 포함되게 되었다．그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들 수 있다．이와 같이 사립학교에 관한 기본 적 법률의 마련이라는 기본 목적에 주력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의 보장이 부각된 것은 동법의 입법에 있어서 의제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그 결과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많은 분쟁이 사립학 교 교원에 관련되어 발생되고 결국 오늘날「사립학교법」을 분리하여 법인 및 학교，교원에 관한 부분을 따로 법률로 만드는 것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필요한 경우 법률의 명칭을＂학교법인설립법＂등으로 바꾸고 법인 설립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나머지 관련 규정은「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편입하여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의 존재의의를 교육가치의 다양성 보존, 교육혁신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정부 재정능력의 한계 보완 등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는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학교의 서열 화•엘리트화로 인하여 적대시되는 이익을 조장하고 교육제도의 조화 로운 운영과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며 사회계층간의 불평등과 교육기 관 간의 계층화를 유발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위협하며 교육의 질적 관리 측면을 어렵게 한다. ${ }^{71)}$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서는 개방이사 의 자격요건,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주체와 구성비의 주요 내용을 정관 에 위임하지 말고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정관을 통하 여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의 견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평의원회의 구체적 구성주체, 구성 비를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둘러싸고 학내 갈등이 유 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학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의 관련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방법과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고등교육법에 규정함으로써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의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나 아가 학사관계 심의기구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법제화를 통해 서 사립대학의 운영구조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사립대학교들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 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실한 대학들이 등장하고 있는 등 여러 가 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대학의 부실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대학설립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준의 상향조정 이 규제의 강화로 비춰질 우려도 있지만 대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 공적 역할 및 피교육자로서의 학생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개선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1) 교육과학기술부, 자립형사립고의 개선방안, 2011 참조.

## VII．교원 관련 법령

## 1．현 황

## （1）교원 관련 법령 현황

교육 관계 법령 중에서 교원 관련 법령은 총 33 건이며，이 중에서 법률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육공무원법」，「국립사범대 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 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8 개이다． 관련 법령의 제정연혁 및 위임 관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법령명 가나다순］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학 <br> 교 <br> 교 육 | 교 원 <br> （33）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0 조 |
|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22호］ | - r유아교육법」제22조 <br> - r초•중등교육법」제 21 조 <br> - 「고등교육법」제46조 <br> - 「교육공무원법」제37조부터 제 42 조까지의 규정 |
|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7호］ |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소 분 류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br> （제10조） |
|  |  | 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3727호］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 2조 <br>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는＂교원에 대한 예우＂ 에 있어서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명시적 위임 근거 없음） |
|  |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 23434호］ | - r유아교육법」제22조 <br> - 「초•중등교육법」제21조 |
|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 과학기술부령 제135호］ |  |
|  |  | 교원자 격 의취득을 위한보수교 육에관한규칙［교육과학기술부 령 제1호］ |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및 별 표 2 |
|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890호］ |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육회 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1．5．31．제정됨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 의에관한규정 <br> ［대통령령 <br> 제 20740호]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하＂법＂이라 한다）제 11 조 내 지 제13조 |
|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교류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73호］ | －r지방공무원법」제 30 조의 2 |
|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72호］ | - r지방공무원법」제6조제3항 <br>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10 조 및 제 10 조의 2 |
|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71호］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 조 의 2 부터 제 31 조의 7 까지 및 제 32조 <br>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 14 조부터 제 19 조 |
|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1. <br> 11．30］［대통령령 제23324호， 2011．11．30，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제13조 및 제 14조 |
|  |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 처리규칙［교육과학기술 부령 제128호］ | - 「교육공무원법」제23조 <br> - 「교육공무원임용령」 <br> - 「교육공무원징계령」 |
|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55 호］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제 3항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 별법［법률 제8852호］ |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 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 범대학 등의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 헌결정（1990．10．8，89헌마89） 됨에 따라 당시 교사임용후보 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 로 임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절 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4．1．20．제정됨 |
|  |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40호］ |  |
|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 10866호］ |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제 임용 이 도입된 1975년 7월 23일부 터 법률 제7352호 「사립학교 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7353호「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2005년 1월 26일） 까지의 기간 동안 재임용에서 탈락된 국립•공립 및 사립대 학의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 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 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재임용탈락자들의 권익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 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5．7．13．제정됨 |
|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19085호］ |  |
|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644호］ | －「고등교육법」제 16 조 |
|  |  | 명예교수규칙［교육과학기술부 령 제141호］ | －「고등교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
|  |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 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법 률 제7534호］ |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 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 중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함으로써 미임 용자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2005．5．31．제정됨． |
|  |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 <br> 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 <br> 행령［대통령령 제19084호］ |  |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1215호］ | －사립학교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질병－부 상 • 폐질 • 분만－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 도를 확립하고，교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 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3. 12. 20. 사립학교교원연 금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0년 현재와 같은 법명으로 개정되 었음 |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  |
|  |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 용에관한특별법 [법률 제6435호] |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 교 육대학•공업교육대학 및 국 립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하 고 교원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중 임용제외자의 특별채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1999. 9. 2. 제정됨 |
|  |  | 시 국 사 건 관 련 교 원 임 용 제 외자 채용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 령령 제16558호] |  |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 10643호] | -교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 다)를 설치하여 교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 으로써 교원의 생활안정과 복 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1971. 1. 22. 대한교원공제회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 현재의 법률명으로 개정됨 |

## 2．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법령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특수한 사정에 있는 교원의 임용에 대한 시혜적 특별법•특례 법률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앞서 교육 관련 법령의 특징별 문제점 및 정비방안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특별법의 경우 법의 목적 달성이 한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서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법 폐지를 검 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는데 명시적 위임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동규칙은 1994 년 교육부령으로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 정비시 명시적으로 위 임근거를 밝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VIII．장학 관련 법령

## 1．현 황

교육 관계 법령 중에서 장학 관련 법령은 6건이며，법률은 「한국장 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관련 법령의 제정연혁 및 위임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법령명 가나다순］

| 대 <br> 분 <br> 류 | 소 <br> 분 <br> 류 | 법령명 |  |
| :--- | :---: | :--- | :--- |
|  |  |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대통령령 <br> 제20740호］ |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 <br> 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 |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학 } \\ & \text { 교 } \\ & \text { 교 } \\ & \text { 육 } \end{aligned}$ | 장 <br> 학 <br> (6) |  | 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 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음/지 급대상을 교육법 제81조 규 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에서 선발된 자로 규정 하고 있음) |
|  |  |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 호] |  |
|  |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 학기술부령 제 1 호] |  |
|  |  | 장학금규정 [대통령령 제20740호] |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 의 규정 <br>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음) |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65호] |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를 통하여 국가장학기금을 효 율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 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 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 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2009. 2. 6. 제정됨 |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488호] |  |

## 2．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학관련 법령의 경우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법령이 존재하 고 있으므로 향후 개정시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장 학금규정」과「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은 명시적 위임 근거가 없이 폐 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률 정비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재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 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장학금 규정 및 사도장학 금에 관한 규정의 관계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IX．교육 재정 관련 법령

## 1．교육재정 개관

## （1）교육재정의 의의

교육재정은 일반재정의 한 분야로，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고 배분하며，지출하고 평가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과 개인이나 일반기업의 경제활동과 는 구별된다．재화획득상의 강제성，목적의 공공성，사전에 지출될 것 을 계량한 다음 수입을 제한하는 양출제입，재정의 존속기간에 있어 서의 영속성 등에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다．

## （2）교육재정의 일반원리

교육재정의 일반적 원리는 첫째，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 원할 수 있도록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충족성의 원리，둘째，교육 의 지속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의 확보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안정성의 원리, 셋째, 교육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최대한의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효과성의 원리, 넷째, 교 육재정의 배분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균형성의 원리이다.

교육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적 효과는 일반기업 등에서의 성과나 실 적과는 달리 장기간의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나타난다. 그러나 반드시 다량의 재정적 지원이 있다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 오거나 재정적 지원이 소규모라고 해서 교육적 효과가 달성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 }^{72)}$

## (3) 교육재정 법정주의

교육재정 법정주의란 교육제도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제도의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고 배분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 다.73) 따라서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 뿐만아니라 사립 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일련의 교육재정 운용주체들이 교육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산, 예 산의 집행과 회계, 결산과 감사에 이르는 포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주체와 활동 단계에 따른 고유한 재원과 지능을 내포한다. ${ }^{74)}$ 교육재정의 확보는 교육과제의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전 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반에 투자하는 비교지수를 살펴보면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 예로 대학등록금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시장재에 가깝게 인식하는 경향이

[^17]적지 않다．반면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는 교육을 공공재로 간 주하여 대학 등록금이 거의 무상이거나 저렴하다．교육을 시장재로 간주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미국，일본이다．교육을 시장재로 간 주하면 부모의 부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게 되고 부의 대물림 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OECD의 2009년 교 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GDP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 비중은 한국 의 경우 총 $2.5 \%$ 로 정부부담은 $0.6 \%$ ，민간부담은 $1.9 \%$ 로 나타났다． 미국은 각각 $1 \%, 1.9 \%$ 로 한국에 비해 정부지원이 크다．미국에서는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싼 공립대학에 다는 학생이 많다．사립대가 2022 개，공립대가 653 개지만 학생 수는 공립대가 590 만명，사립대가 377만명으로 대학의 수에 비해 많은 학생이 공립대를 다니면서 등록 금 혜택을 받고 있다．일본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에도 정부가 $15 \%$ 이 상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는 실정이다．

## 2．교육 재정 관련 법령의 현황

## （1）교육 재정 관련 법령 현황

교육부 소관의 교육 재정 관련 법령은 총 11 건으로 이 중에서 법률 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다．그밖에 살펴보아야 할 법률로「교 육세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관련 법령의 제정연혁 및 위임관계에 관 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법령명 가나다순］

| 대 <br> 분 <br> 류 | 소 <br> 분 <br> 류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 <br> 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 <br> 기술부령 제1호］ | - －초•중등교육법」 제 10 조 |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학 <br> 교 <br> 교 <br> 육 | 교육 <br> 재정 <br> （11） |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br>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호］ | $-「$ 초•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2 제5항 및 동법 제30조의3제6항 |
|  |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59 호］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각 종 증명의 수수료를 징수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음／1962년 문교부령으로 제정된 국립학교 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이 개정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 육과학기술부령 제131호］ | －「고등교육법」제 11 조제 10 항 |
|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4호］ | －「사립학교법」（이하＂법＂이라 한다）제 32 조 •제 33 조 및 제 51조 단서 |
|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과학기술 부령 제46호］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부 령임 <br>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음）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 10221호］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설 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 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 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7. 12．28．제정됨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86호]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4호] |  |
|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 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0464호]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
|  |  |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 부령 제250호] |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 하는 입학수험료(이하 "수험 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br>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음/1964년 제정된 문교부령이 1969년 개정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 (2) 주요 법률 1 : 교육세법

1) 제정취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 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 3469 호, 1981. 12. 5 제정). 제정당시 교육세법은 (1) 교육세는 국세로 하여 분리과세되 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주세액등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부가세형태의 과세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2) 교육세의 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이라도 정책적 배려 하에 소득세가 감면 또는 비과 세되는 분에 대하여는 교육세도 비과세하고, 술과 담배에 있어서도 대중

적 소비품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3）교육세는 1982년부터 1986년 까지 5연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세수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 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이후 1990．12．31일 전부개정을 통해 서 한시세였던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현행 교육세법의 주요내용
「교육세법」은 총 13 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납세의무자에 대하여（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교육세법 별표에 규정하 는 자，（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3）「교 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4）「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탁주，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법 제3조）하고 있다．비과세로 금융•보험 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법 제4조）하고 있으며，과세표준 과 세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 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 다．과세기간은 1 년을 4 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그밖에 부과와 징수（법 제 10 조），환급（법 제12조）및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법 제 13 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3）주요 법률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제정취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1．12．28．에 법률 제2330호로 제정되 었다．제정당시에는 중학교 무시험제를 실시함으로써 희망자 전원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됨에 따라 중등교육기관의 급격한 팽창이 불가피하 게 되었고，또한 앞으로 의무교육년한을 중학교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으므로 중등교육 재정수요와 의무교육정상화를 위한 연 차적인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 행의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교부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통 합하여 합리적인 집행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은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및 규모와 그 교부범위 를 정하고, (2)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되 보통 교부금은 의무교육경비와 기타 경비로 나누어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하도록 하며, (3) 기준재정수요액 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을 정하며, (4)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금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주요내용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총 13 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며,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 만분의 2,027 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 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법 제3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 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며,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 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법 제4조~제6조). 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 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하도록 교부금의 조정에 대하

여 규정(법 제8조)하고 있으며,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 세 및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고 규 정(법 제9조)하고 있다. 그밖에 행정구역 변경시 교부금 조정(법 제10 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 11 조), 보통교부금의 보고(법 제 12 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3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에 관하여 재정적인 책임과 함께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할 경우 지역 간의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치단체 간에 부익부 빈익 빈 현상을 초래하여 일반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확충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재정과 관련된 세입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교 육재정확대를 위해서 세율을 높이거나 교육관련 세목을 신설한다면 지역 주민의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분배 세율의 조정을 통해 교육세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자체단체의 교 육재정 지원은 공립학교에 한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 도입을 통해 소요재원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립학교제도는 교육계를 비롯하여 일부사회단체에서 교육격차 심화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현재 열악 한 재정환경에 처해있는 사립 중등하교 중 자립형 사립학교를 지향하 는 학교는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 이후 선별해서 탈락한 경우 공립학 교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지 원만을 함으로써 평준화를 유지하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지 방분권정책이 진행될수록 교육재원조달의 책임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높게 부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와 함께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복식부기제도 등을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입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학교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 17 조），특히 대학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 록 되어 있어서「고등교육법」 제 5 조，「사립학교법」제4조，국가의 대학 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은 충실하게 수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소홀 했다．이는 현재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가가 대학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을 규정하고 있지 아 니므로 재정지원여부와 그 규모는 국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그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 적합한 재정적 성장의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것이다．국•공립대학이 나 사립대학이나 모두 설립자보다는 특정하게 선택된 대학교육의 수 익자인 학생（학부모）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의 대부분을 부담하 여 왔고 저소득계층에서는 교육비부담능력의 한계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에 제약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부담을 증대할 수 있 는 입법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국가의 대학교육 지원이 획 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하며，사립대학 법인은 그 충실화를 법규로 규 정하는 등 재원의 공공부담 부분을 늘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정 부의 재정배분 기준도 조정되어야 하는데 대학별 경쟁을 통한 차등지 원방식으로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위임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46호］의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부령인데 명확한 위임 근거를 확인하기 어 려웠다．향후 관련 법령 정비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확인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59호］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 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데，1962년 문교부령으로 제정된 「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명시적 위임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웠으므로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문교부령 제250호］의 경우에도 각급학교 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수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1964년 제정된 문교부령이 1969년 개정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 다．동일하게 명확한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개정시 입 법체계 정비 대상 법령이라고 할 것이다．

## X．평생교육 관련 법령

## 1．현 황

## （1）평생교육 관련 법령 현황

평생교육 관련 법령은 11 개이며，이 중에서 법률은「유네스코 활동 에 관한 법률」，「인적자원개발 기본법」，「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 법」，「평생교육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5 건 이다．관련 법령의 제정연혁 및 위임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법령명 가나다순]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고 |
| :---: | :---: | :---: | :---: |
| 사 <br> 회 <br> 교 <br> 육 <br> (12) |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7호] | -대한민국은 국제연합교육 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 코"라 한다)가 국제연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세계 제인민간의 무지와 오해 및 빈곤을 극복하여 인간 의 마음속에 세계평화의 터전을 마련하며 인류의 복리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 고 또한 대한민국이 유네 스코에 가맹함으로써 얻은 국제적지위에 감하여 이 숭고한 유네스코활동에 대 한민국정부와 국민이 적극 적으로 협력하며 교육•과 학 및 문화활동을 통하여 국제연합헌장 - 유네스코헌 장 및 세계인권선언의 정 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1963. 4. 27. 제정됨 |
|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률 제9629호]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br> 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 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 |


| 대 분 류 | 소 분 류 | 법령명 | 비고 |
| :---: | :---: | :---: | :---: |
|  |  |  | 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2002. 8. 26. 제정됨 |
|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67호] |  |
|  |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br> [법률 제10777호] |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 삼락회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 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3. <br> 7. 29. 제정됨 |
|  |  | 평생교육법[법률 제10915호] |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 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 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 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1982. 12. 31. 제정되 었으며, 1999년 개정시 평 생교육법으로 법명을 변경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  |  |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과 학기술부령 제91호] |  |
|  |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916호] |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 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강습소의설립 및 |


| 대 <br> 분 <br>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고 |
| :---: | :---: | :---: | :---: |
|  |  |  |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1061．9． 18. 사 설 강 습 소 에 관한 법 률로 제정되었으며，1990년 학원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로 개정되었고 이후 2001년 현재와 같은 법률명으로 개정됨 |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 령령 제24102호］ |  |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 육과학기술부령 제161호］ |  |

## （2）주요법률 ：평생교육법

1）제정취지
「평생교육법」의 제명은 1991년「사회교육법」의 제명이 개정된 것으 로，먼저「사회교육법」의 제정이유를 보면，지식•기술이 확대되고 생 활환경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한평생 보람된 생활을 누리기 위하 여는 누구든지 평생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이에 따라 헌 법 제29조75）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

75） 1980 년 10 월 27 일 개정헌법 제 29 조에서는 제 5 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및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이 내용은 현행 헌법（제31조 제5항 및 제6항）과도 다르지 않다．

므로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 으로써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과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제정 되었다（1982년 12월 31일 제정，1983년 7월 1일 시행）．

이후 1991년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사회교육법」의 제명을「평생교육 법」으로 변경하고，평생교육의 이수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 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사내대학•원격 대학 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1991년 8월 31일 전부개정）．

2）주요내용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 외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직업능력 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법 제2 장 제 1 호），‘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 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 시하는 학원，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문자해득교 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법 제 2 조 제 3 호）．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

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1조). 그리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 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 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
3)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체계도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 | :---: | :---: |
| 평 생 교 육 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br> [대통령령 제23644호]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91호] | -문자해득 교육과정(초 <br> 등) [교육과학기술부 <br> 고시 제2009-21호] <br> -성인 학습자 문자해득 <br> 교육 프로그램의 교 <br> 육과정 [교육과학기술 <br> 부고시 제2009-21호] <br> -성인학습자 초등 문 자해독 교육과정[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1호] <br>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 한 규정 [교육과학기 술부고시 제2011-32호] |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평생교육법」은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넘어서는 열린교육•평생학습 사회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이행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종래의「사회교육법」이 급변하 는 사회변화에 법적•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 하에서 교육공급자 중심의 닫힌 사회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열린 평생학습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의 핵 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제정되는데，현재 동 법령이 평생교육 관계 법령의 다양한 취지와 목적을 하나로 수렴하고 반영하고 다양한 차원 에서 수행되던 각 평생교육 활동들에 대하여 동법의 체제 하에 통일 적으로 편성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달성하였는가는 의문이다．${ }^{76)}$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 진흥의 본래 의제 반영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다．즉 1999년 제정된「평생교육법」과 관련된 의제도 논란 의 대상이 되었다．동법률은 사회교육의 확장을 통한 평생교육의 진 흥이라는 내용의 입법취지를 표방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사회교육의 개념 자체가 법체계 속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평생교육은 학교교육，사회교육，학교 외 교육，성인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을 망라하면서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법에 반영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사회교육을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통해 평생교육을 활성 화시킨다는 내용의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교육과 평생교 육의 관계 및 협력 체제의 구축과 사회교육이 본래 수행해야 할 기능 이 약화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평생교육법」은 그 내용상「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 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평생교육법」으로 편입하여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76）김병기，앞의 글，249－250면．

## XI．학교보건－생활 관련 법령

## 1．현 황

학교보건 및 학교생활 관련 법령은 총 12 개이며，이 중에서 법률은「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4개이다．관련 법령의 제 정연혁 및 위임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법령명 가나다순］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소 분 류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학 <br> 교 <br> 보 <br> 건 <br> （12） |  |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과학기 술부령 제 38 호］ | －r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 |
|  |  | 학교급식법［법률 제10885호］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 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 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1981． 1. <br> 29．제정됨 |
|  |  |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43호］ |  |
|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교육과학 기술부령 제29호］ |  |
|  |  | 학교보건법［법률 제11048호］ |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 |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령명 | 비 고 |
| :---: | :---: | :---: | :---: |
|  |  |  | 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 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 으로 1967. 3. 30. 제정됨 |
|  |  |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26호] |  |
|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과 학기술부령 제12호] |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41호]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 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 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 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 1. 26. 제 정됨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 기술부령 제 142 호] |  |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88호] | -법령의 예방과 대책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


| 대 <br> 분 <br> 류 | 소 <br> 분 | 븁령명 |  |
| :--- | :---: | :---: | :---: |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 지 않았다. 다만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학교 안전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학교생활 전반에 관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법경제상 학교 생활 전체에 대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 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4장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 제 1 절 표적집단심증면접 실시 및 결과

## I. 표적집단심층면접(FGI) 개관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 시하였다. 표적집단심층면접은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정량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할 수 있으며, 응답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가 도출될 수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조사에 활용되는 조사방법론이다.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조사에서 정량적 접근을 시행하기 전에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일반적으로 정성 조사 기법을 사용하게 된 다. 연구대상자가 연구의 방향과 전반적인 연구의 틀을 만들기 위해 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과 경험을 들음으로써 연구 방법을 명확히 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정성조사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특히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의 견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한 수준의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사전 준비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표적집단토의 법(Focus Group Interview)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적집단토의법 에서는 인터뷰어(Moderator)가 토론을 진행한다. 진행자는 가능한 매우 조심성 있고 겸손한 태도로 토론을 이끌어 가며 응답자가 모든 것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러나 어느 정도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의는 2 시간 이내에 진행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인터뷰어(Moderator) 역할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 으며, 응답자들의 특성 상 $2 \sim 3$ 명을 표적집단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 였다. 금번 표적집단심층면접은 총 3 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각각 전문가 $2 \sim 3$ 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 회차당 약 1 시간 30 분에서 2 시간의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 장소는 응답자의 자유로운 응답을 얻기 위해 특별한 좌담회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각 응답자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수행하였 다. 응답자의 응답 내용은 녹취되었으며, 각 녹취된 내용은 문항별로 정리 하였다. 각 조사 당 1 시간 30 분에서 2 시간 동안 조사는 진행되 었으며, 응답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준비된 조사 가이 드라인 이외의 응답도 인터뷰어의 결정에 따라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추가 응답 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였다.

| 차 수 | 대상 전문가 |
| :---: | :---: |
| 1차 표적집단심층면접 | 학계 1 인(교육학), 실무 2인(교육정책, 교육법) |
| 2차 표적집단심층면접 | 학계 2인(교육학, 교육법) |
| 3 차 표적집단심층면접 | 실무 2인(교육담당전문기자, 연구원) |

통상 표적집단심층면접은 연구수행전에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연구진행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번 표적집단심층면접은 연구 결과가 일정하게 도출된 이후 실시하여 연구 결과로 도출된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을 연구자가 제시 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입법체계 정비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전문가에 검증하는 도구로써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입법체계 정비의 타 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추후 필요한 연구 에 대한 제언을 얻을 수 있도록 인터뷰의 가이드라인이 구성되었다.

## ․ 표적집단심층면접시 사용한 인터뷰 가이드 라인의 주요내용

표적집단심층면접시 제공한 인터뷰의 가이드라인은 "교육 관계 법 령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라는 타이틀로 하여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표안에서 제시하고 의견을 받는 방식 으로하여 구성하였다.

## <표 : 인터뷰 가이드라인>

1. 문제점 인식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
○ 교육기본법의 역할 부재
○ 특별법•특례법의 증가
$\bigcirc$ 시혜적•특혜적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
$\bigcirc$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원•진흥 관련 법령의 증가
$\bigcirc$ 다수의 위임근거 불명확한 법령 존재

- 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적어주십시오.(문제인식 공유 여부, 첨언 및 문제점을 별도로 지적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2.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특별법•특례법의 정비

- 특별법•특례법 중 현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함(사례:「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입 법목적 달성 후에도 존속 중인 법률 폐지 검토)
- 시혜적•은사적 특별법•특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교육 관계 법률 중에서 특별법•특례법 정비에 관련된 의견을 적어주 십시오．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이 재정 당시와 같이 현재에도 실효성을 가지는지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존폐를 결정하고 폐지 필요성이 있다면 폐지（사례：「과학교육진흥법」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 인 지원에 관한 규정은 한 조문에 불과하며 나머지 조문은 선언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지원•진흥의 기준을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여 법률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 고려
（2）교육관계 법률 중에서 진흥」지원 관련 법률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적 어주십시오．

○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정비
－특수법인을 설치하는 근거 법률이 약 14 개로 다수 존재하고 있음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국립학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특별 히 지원하는 것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있어 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검토 필요
（3）교육관계 법령에 특수법인을 설치하는 근거법률이 많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 관련 사항
－법률에 명시적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개정시 위임근거 마련 혹은 폐 지 필요（사례：「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809호］」의 경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음）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 사항 반영 필요 （사례：임시교원양성소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의 경우 교육법 제124 조를 위임근거로 명시하고 있음）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경 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여야 함（사례：「교육감이 고등학교 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 호］」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을 위임근거로 하고 있으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은 교육감이 고통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어서 동 규칙은 조례로 위임한 것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임）
（4）위임근거의 불명확 혹은 부재에 대한 정비방안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그밖에 교육관계 법령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 면 적어주십시오．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보내주신 의견은 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키 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III．표적집단심층면접의 주요내용

금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심층면접으로 얻은 전문가의 의 견을 정리하여 정비방안과 관련하여 분야별•특성별로 정리하여 제시 하기로 한다．

## 1．교육기본법의 정비

전문가 A ：
교육기본법과 관련된 내용만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의「교육기본법」은 일본의 것을 계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일 본 「교육기본법」은 헌법에 담아야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별 도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정한다는 準헌법성이 설득력이있게 받아들 여지고 있다．즉，교육기본법은 헌법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교육의 근 본법으로서 헌법에 준하는 성격을 지니는 법률이며，다른 법률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며，이를 교육기본법의 준헌법성이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정 교육기본법은 다소 추상적이며，이념적•원리 적 규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그러나 최근의 교육기본법의 개 정은 이와 같은 준헌법성과 달리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시 작하면서，교육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전문가 B ：
교육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계획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 과에 동의한다．향후 교육기본법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C :
교육기본법과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의 관계 설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관계 법령의 준거법으로서의 교육기본법의 역 할이 부족하고 교육기본법이 제 기능에 맞는 수준의 규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2. 특별법•특례법의 정비

전문가 A :
특별법•특례법의 증가는 법체계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이 러한 현상은 법적 또는 교육(학)적 타당성과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라 기 보다는 관련 집단 또는 입법 관계자들이 해당되는 법의 실효성을 보다 강하게 담보받기 위한 다소 이기적인 편의주의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법목적을 달성한 실효성 없는 특별법•특례법은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른바 교원노조법과 같이 분명한 특례를 인정받아야 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사전에 충 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 B :
특별법 제정시 옥상옥의 형태로 제정되는 경우가 교육 관계 법령에 는 많아서 이러한 문제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3. 교육진흥•지원 관련 법령 정비

## 전문가 A :

지원•진흥법이 많은 것은 교육관계법령이 규제법보다는 조성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관련 법령이 재정적 지원 등 현실적 한계를 안고 발의되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의 임의성이 많

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전체 교육법 체계상에 있어서도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독자적인 지원•진흥법의 존재는 대정부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새롭게 제정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차제에 실효성 없는 개별 지원•진흥 법을 통폐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전문가 B :

연구진의 지원•진흥 기준을 교육기본법 또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교육기본법에 관련 기준을 규정한다고 할 때, 앞서 제기한 교육기본법의 성격을 고려한 다면 지나치게 상세한 기준을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개별 지원 • 진흥법을 통폐합하는 별도의 법 제정이 무난할 것이다.

전문가 C :
진흥법 중에서 자체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규정으로 이루어진 경 우가 많다. 예를 들어「영재교육진흥법」의 경우에는 영재를 육성하고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지 원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의 단계적 으로 지원 및 혜택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것 이다. 영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연의 법 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D :
진흥에 대한 기준이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변화되어 야 한다. 진흥•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은 교과부에 의해 좌우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진흥•지원 관련 규정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 E :
교육 관계 법령의 지원•진흥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주기 위해서는 교육재정과 연계하여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 문제 는 예산법률주의와 연계되므로 헌법적인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4. 기관설치 근거법률의 정비

전문가 A :
시혜적•특혜적 기관 설치 법령이 증가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 또는 ‘자주성, 전문성 등’에 터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해당 기관들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담보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제하기 위한 대 국회 로비의 산물로 볼 수도 있다. 향후 이와 같은 법의 제정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의 경우에 는 기대이익 측면에서 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또한 사 실이다.

전문가 B :
퇴직교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전체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특정 집단을 위한 법률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연구 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향후 이와 같은 시혜적 법률의 제정이 지양되 어야 한다.

전문가 C :
대학교육협의회의 경우 일반적인 협의회와 달리 자율적 조직으로 보기에는 그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밀접한 연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 다만 현실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하고 있는 단체를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서 있어서는 의문임.

## 5. 교육 관계 법령의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A :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의 존재는 그 어느 영역에의 법체계에서 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 다만, 교육관계법령에서 유독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당초 교육이라는 것은 법과 친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모든 것을 다 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현장에서의 인격적 접촉의 특수성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교육법 초기 의 논리가 영향을 미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즉, 상위법에서는 추상 적으로 진술하고 하위법으로 내려가면서 구체화되면서 위임하지도 않 은 내용들이 추가되는 것이다. 물론,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확대해석 등을 통해 행정편의를 위해 규정한 하위법령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와 관련하여 특히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규정 중 규제적인 내용들의 경우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문가 B :
특히, 상위법령에서 조례규정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령 등으로 규정함은 헌법상 또 다른 제도 보장이라 할 수 있는 '지 방교육자치제도'의 정신•이념에도 반하므로, 이에 대한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문가 C :
교육의 문제는 현장의 변화에 따른 법령 개정의 압박이 큰 것도 사 실이므로, 모든 것을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위임근거를 새로이 갖추도록 하는 작업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가 D ：
현재는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아니라 교육제도 행정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부 즉 교육과학기술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으로 정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6．기타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 정비에 대한 의견 제시

전문가 A ：
법내용과 다른 법령의 문제 ：평생교육법의 경우 법명과 달리 실제 는「사회교육법」이므로 실제에 맞게 법명 개정이 필요함．즉，법 내용 과 다소 달리 법명을 정한 경우가 일부 있는바 이에 대한 정비가 필 요하다．「사립학교법」역시 그 내용은 사립학교가 아닌 「학교법인법」 이라 할 수 있음．

전문가 B ：
과도한 준용 규정 정비－사립학교 교원은 사인의 신분임에도 불구 하고，사립학교법은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의 것을 준용하도 록 하고 있음．그런데 교육공무원법은 다시 국가공무원의 규정을 준 용하도록 하고 있어，사인인 사학교원이 결국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을 따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문가 C ：
교육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 않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커다 란 효과를 미침．따라서 그 어느 영역보다 신중하게 입법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다보니 정치인들에 의해 손쉽게 재단되는 경향이 있음．따라서 그 어떤 영역보다 먼저 입법평가제도 를 도입하여 관련 법의 제•개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전문가 D :
사립학교법의 경우 사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정비가 필요함. 사립대학의 경우 허가취소시 법인 해체의 근거를 두 고 있지 않아서 학교를 폐쇄하게 됨. 인구의 감소 등으로 연결되는 대학진학 연령의 감소로 사힙대학의 축소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으나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할 것임.

전문가 E :
교육제도법정주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특히 교육자치와 연계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여야 할 시점임. 향후 교육학 및 교육법학 계가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됨

전문가 F :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이 특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 및 법령 정비가 필요함

## IV. 분석 및 정리

이상과 같이 교육법 및 교육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심층 면접의 결과를 통해서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 문가 설문의 주요내용이 되는 연구자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을 검증하 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전문가 조사의 설문 지 구성 및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였다.

# 제 2 절 고육 관계 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 I. 조사의 배경

현재 교육관계 법령은 약 60 여 개의 법률 및 180 여개의 하위 법령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관계 법령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개별법상의 규율 관계를 입법체계정비의 관점에서 재정립하여 법령을 간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그 결과로 도출된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하여 교육법 관련 전문 가의 의견을 통하여 타당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여 향후 교육법 정비 및 입법체계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적집단심층면접법을 통해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1 차적인 확인을 하여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 ㅍ. 조사목적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교육 관계 법령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 고 있으며, 교육법 정비방안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 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두 차례의 FGI 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 며 이를 통해 세부적인 정비방안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타당성과 문제점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는 법학 및 교육법, 교육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법 령 및 하위 법령의 입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생 각을 알아보고 해당 법령에 대한 각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

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법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비 방 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생각을 파악하여 향후 법령 정비의 방향을 수립하고자 조사를 기획하였다.

본 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제시한 각 법령의 정비방안에 대해 전문 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 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 III. 조사의 개요

## 1. 조사 설계

| 모집단 |  | • 교육관련 전문가(교수, 연구원, 박사 등 관련인) |
| :--- | :--- | :--- |
| 표본구성 | • 교육 및 법학 관련 전문가 100 명 <br> 조사방법 | •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 <br> 조사기간 |

## 2. 조사 내용

| 구 분 | 세부항목 |
| :---: | :---: |
|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 인식 |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문제점 인식 <br> - 교육 기본법의 기능 및 역할 부족에 대한 태도 <br> - 특별법/특례법의 증가에 대한 태도 <br> - 기관 설치 법령 증가에 대한 태도 <br> - 지원/진흥의 목적달성에 부족한 관련 법령 증가에 대한 태도 <br> -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 존재에 대한 태도 <br> - 기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법 |
|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 방안 | - 교육기본법 관련 정비 방안에 대한 태도 <br> - 특별법/특례법의 정비에 대한 태도 <br>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태도 <br> -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정비에 대한 태도 <br> -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 관련 사항에 대한 태도 <br> - 기타 법령 정비를 위해 필요한 방안 <br> - 초•중등 교육법 관련 세부 조례 정비방안에 대한 타당성 <br> -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관계 법령 분야 <br> -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관계 법령 분야 <br> -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에 대한 구체적 정비 방안 <br> -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조언 |

## 3. 응답자 특성

| Base=전체 | 사례수 (명) | 비율 (\%) |
| :---: | :---: | :---: |
| ■ 전 체 ■ | $(100)$ | 100.0 |
| 전문분야 |  |  |
| 법 학 | $(76)$ | 76.0 |
| 교 육 | $(24)$ | 24.0 |
| 소 속 |  |  |
| 대학교수 | $(34)$ | 34.0 |
| 정부기관 | $(9)$ | 9.0 |
| 연구원 | $(30)$ | 30.0 |
| 대학강사 | $(11)$ | 11.0 |
| 석박사과정 | $(16)$ | 16.0 |

## IV. 조사 결과 요약

## 1. 교육 관계 법령 문제점 인식

| 구 분 | 문제 있음 |
| :--- | :---: |
| 현행 교육관계법 입법 체계의 문제점 | $70.0 \%$ |
| 교육기본법의 기능 • 역할 부족 | $71.0 \%$ |
| 특별법/특례법의 증가 | $83.0 \%$ |
|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 | $77.0 \%$ |
| 지원/진흥의 목적달성에 부족한 관련 법령의 증가 | $78.0 \%$ |
|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 존재 | $88.0 \%$ |

○ 현행 교육관계 입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응답은 $70.0 \%$ 로 대 부분의 전문가들은 현행 교육관계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인식 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관계 법령 중에서는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법령 존재'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88.0 \%$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는 '특별법/특례법의 증가'가 $83.0 \%$, '지원/진흥의 목적달성에 부 족한 관련 법령의 증가'가 $78.0 \%$ 등의 순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 식이 많았다.

## 2. 교육 관계 법령 정비에 대한 동의 정도

| 구 분 | 동의함 |
| :--- | :---: |
| 교육기본법 정비를 위한 교육기본계획에 대한 <br> 규정 추가 | $70.0 \%$ |
| 교육기본법 정비를 위한 관련법령 통합 정비 <br> 방안 | $77.0 \%$ |
| 특별법/특례법 중 법률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br>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 $81.0 \%$ |
| 시혜적/은사적 특별법/특례법이 제정되지 않도 <br> 록 하는 보완책 | $\mathbf{9 1 . 0 \%}$ |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 | $88.0 \%$ |
| 교육 관련 지원/진흥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 $65.0 \%$ |
| 교육 관련 지원/진흥의 기준을 별도의 <br> 벙핼ㄹㄹㅇ | $71.0 \%$ |
| 규정 |  |


| 구 분 | 동의함 |
| :--- | :---: |
|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국립학교의 공공 <br> 성과 연계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 <br> 평성 문제 제기 | $55.0 \%$ |
|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관련 법률의 정비방안 | $\mathbf{9 1 . 0 \%}$ |
|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br> 개정사항에 반영 | $\mathbf{9 3 . 0 \%}$ |
|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는 <br> 경우를 개정 | $\mathbf{9 6 . 0 \%}$ |

○ 교육 관계 법령의 정비 방안에 대한 동의정도는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96.0 \%$ 가 동의하고 있어, 해당 법령의 개정에 대해 거의 모든 응 답자가 동의하고 있다. 또한,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 는 경우' 역시 $93.0 \%$ 로 다른 법령 정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국립학교의 공공성과 연계하 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는 $55.0 \%$ 만이 동의하고 있어, 정비 방안에 대해 공감을 얻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세부규정 정비방안에 대한 타당성

| 세부 법령 | 정비방안 | 타당함 |
| :---: | :---: | :---: |
| $\left.\begin{array}{l}\text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 } \\ \begin{array}{l}\text { 항 :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 } \\ \text { 하여야 한다. }\end{array} \\ \begin{array}{l}\text {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 } \\ \text { 레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률 }\end{array}\end{array}\right) 990.0 \%$ |  |  |


| 세부 법령 | 정비방안 |  |
| :---: | :--- | :--- | 타당함

$\bigcirc$ 세부 규정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하여，모든 정비 방안의 타당성 에 대해서 $80 \%$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2 조」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92.0 \%$ 가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1 항」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90.0 \%$ 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4．교육 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 구 분 | 문제있음 | 시급한 분야（1순위） |
| :--- | :---: | :---: |
| 교육기본법 | $67.0 \%$ | $\mathbf{4 5 . 0 \%}$ |
| 교육조직관련 법령 | $72.0 \%$ | $8.0 \%$ |
| 학교 교육관련 법령 | $76.0 \%$ | $15.0 \%$ |
| 학력 인정 관련 법령 | $68.0 \%$ | $4.0 \%$ |
|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 $80.0 \%$ | $10.0 \%$ |
| 교원 관련 법령 | $83.0 \%$ | $10.0 \%$ |
| 장학관련 법령 | $58.0 \%$ | - |
| 교육 재정 관련 법령 | $67.0 \%$ | $2.0 \%$ |
| 평생교육 관련 법령 | $69.0 \%$ | - |
| 학교 보건／생활관련 법령 | $75.0 \%$ | $6.0 \%$ |

○ 교육 관계 법령의 분야별 문제점에 대해서는「교원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3.0 \%$ 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그 다음으로는「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이 $80.0 \%$ 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교육기본법」이 $45.0 \%$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문제점 인식에서는 $67.0 \%$ 로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으로 가장 먼저 개정이 추진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교원 관련 법령」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을 하 고 있지만，개정의 시급성에서는 $10.0 \%$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나，문제점 인식에는 공감을 하지만 개정에 있어 시급을 다툴 정 도는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V．결과 분석

## 1．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

（1）현행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에 대한 태도
（단위：\％）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에 대하여 $70.0 \%$ 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quare$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서 $87.5 \%$ 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 구원은 $83.3 \%$ 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1. 교육기본법의 기능 • 역할 부족

-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의 부재
- 교육준거법으로서의 역할 부족


## (2)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br> 1. 교육기본법의 기능 - 역할 부족

(단위: \%)


○ 교육기본법의 기능 및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71.0 \%$ 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10.0 \%$ 에 그쳤다.

■ 법학 관련 전문가 보다는 교육 관련 전문가에게서 $91.7 \%$ 로 교육 기본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7 1 . 0}$ | $\mathbf{1 9 . 0}$ | $\mathbf{1 0 . 0}$ | $\mathbf{2 . 3}$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64.5 | 25.0 | 10.5 | 2.4 |
| 교 육 | (24) | 91.7 | 0.0 | 8.3 | 2.1 |

제4장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 Base=전체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79.4 | 8.8 | 11.8 | 2.2 |
| 정부기관 | $(9)$ | 55.6 | 0.0 | 44.4 | 2.9 |
| 연구원 | $(30)$ | 66.7 | 33.3 | 0.0 | 2.2 |
| 대학강사 | $(11)$ | 45.5 | 54.5 | 0.0 | 2.5 |
| 석박사과정 | $(16)$ | 87.5 | 0.0 | 12.5 | 2.3 |

##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br> 2. 특별법/특례법의 증가

- 교원 임용 관련 특별법•특례법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과 연계된 법률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기간 도과 이후에는 폐지 필요 - 일반법 없는 특별법의 정비 필요
(단위: \%)


○ 특별법/특례법의 증가에 대해서는 $83.0 \%$ 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으며, $5.0 \%$ 만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square$ 연구원의 경우에는 $93.3 \%$ 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다른 소속의 집단에 비해 특별법/특례법의 증가가 문제가 있다고 인 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8 3 . 0}$ | $\mathbf{1 2 . 0}$ | $\mathbf{5 . 0}$ | $\mathbf{2 . 2}$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82.9 | 10.5 | 6.6 | 2.2 |
| 교 육 | $(24)$ | 83.3 | 16.7 | 0.0 | 2.2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79.4 | 17.6 | 2.9 | 2.2 |
| 정부기관 | (9) | 77.8 | 0.0 | 22.2 | 2.4 |
| 연구원 | (30) | 93.3 | 6.7 | 0.0 | 1.9 |
| 대학강사 | $(11)$ | 63.6 | 18.2 | 18.2 | 2.5 |
| 석박사과정 | $(16)$ | 87.5 | 12.5 | 0.0 | 2.1 |

##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3.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

- 특정 대학에 대한 지원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 자율기구인 협의회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
(4)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3.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
(단위: \%)


○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에 대해서는 $77.0 \%$ 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 하여, 10 명중 7 명 이상은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가 문제가 있다 고 보고 있다.
$\square$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학강사와 석박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사례수가 적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7 7 . 0}$ | $\mathbf{2 1 . 0}$ | $\mathbf{2 . 0}$ | $\mathbf{2 . 2}$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77.6 | 19.7 | 2.6 | 2.2 |
| 교 육 | (24) | 75.0 | 25.0 | 0.0 | 2.3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64.7 | 35.3 | 0.0 | 2.4 |
| 정부기관 | $(9)$ | 77.8 | 22.2 | 0.0 | 2.0 |
| 연구원 | $(30)$ | 76.7 | 23.3 | 0.0 | 2.2 |
| 대학강사 | $(11)$ | 100.0 | 0.0 | 0.0 | 2.0 |
| 석박사과정 | $(16)$ | 87.5 | 0.0 | 12.5 | 2.3 |

(5)

##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4. 지원/진흥의 목적달성에 부족한 관련 법령의 증가

- 지원 - 진흥 관련 법제구조의 유사성
- 지원•진흥 목적에 부적합한 지원•진흥 법률
- 특정 대상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기관 설치 및 지원 법률의 정비
(단위: \%)


○ 지원/진흥의 목적달성에 부족한 관련 법령의 증가가 문제가 있다 는 것에 대해서는 $78.0 \%$ 가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 고 인식하는 비율은 $10.0 \%$ 로 낮았다.

법학 관련 전문가에게서 $81.6 \%$ 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구원의 경우 $90.0 \%$ 로 해당 법령의 증가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mathbf{7 8 . 0}$ | $\mathbf{1 2 . 0}$ | $\mathbf{1 0 . 0}$ | $\mathbf{2 . 2}$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81.6 | 10.5 | 7.9 | 2.1 |
| 교 육 | $(24)$ | 66.7 | 16.7 | 16.7 | 2.5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73.5 | 20.6 | 5.9 | 2.2 |
| 정부기관 | (9) | 77.8 | 0.0 | 22.2 | 2.2 |
| 연구원 | (30) | 90.0 | 3.3 | 6.7 | 2.0 |
| 대학강사 | (11) | 81.8 | 0.0 | 18.2 | 2.4 |
| 석박사과정 | (16) | 62.5 | 25.0 | 12.5 | 2.5 |

## (6) <br>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br> 5.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 존재

- 명시적 위임근거 부재 법령
- 폐지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령
-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 (6) <br>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br> 5.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 존재

(단위:\%)


○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88.0 \%$ 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여, 관련 법령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으로 $90 \%$ 내외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연구원에게서 $93.3 \%$ 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 로 석박사과정의 학생에게서는 $75.0 \%$ 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8 8 . 0}$ | $\mathbf{1 0 . 0}$ | $\mathbf{2 . 0}$ | $\mathbf{1 . 9}$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89.5 | 7.9 | 2.6 | 1.9 |
| 교 육 | $(24)$ | 83.3 | 16.7 | 0.0 | 1.9 |

제4장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88.2 | 11.8 | 0.0 | 1.9 |
| 정부기관 | $(9)$ | 100.0 | 0.0 | 0.0 | 1.6 |
| 연구원 | $(30)$ | 93.3 | 6.7 | 0.0 | 1.7 |
| 대학강사 | $(11)$ | 81.8 | 0.0 | 18.2 | 2.2 |
| 석박사과정 | $(16)$ | 75.0 | 25.0 | 0.0 | 2.1 |

## (7) 기타 교육법의 문제점

| Base=100명 |  |
| :--- | :---: |
| $\%$ |  |
| 각종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법제의 적합성 문제와 실무부서에 <br> 서의 적용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 5.4 |
|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하시 대학의 인센티브(세제 및 재정지 <br> 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함 | 5.4 |
| 교육개정안의 수시 개정과 번복되는 내용들 | 5.4 |
| 교육관련법령간의 연계 부족 | 5.4 |
| 교육법령 상호간 통일성 및 유사중복 문제 | 5.4 |
| 교육법체계 및 담당기관간의 연계성 문제 |  |
| 기본 교육체계 중심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분야별 각 학교 유 <br> 형별 법들이 세분화 되어 있음(교육 기본법이 그 중심의 역할 <br> 을 하지 못함) | 5.4 |

## (7) 기타 교육법의 문제점

| Base=100명 | $\%$ |
| :--- | :---: |
| 위임 사항의 불분명/부령과 규칙 및 조례에서 그 수임 법률을 <br>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음 | 5.4 |
| 법률간 지원책 등의 형평성 문제 | 5.4 |
| 조문의 사문화 | 5.4 |
| 실질적 규범력이 거의 없는 선언적 조항의 남발 | 5.4 |
| 육아 관련 교육법의 체계 정비의 필요성 | 5.4 |
| 의원입법에 의해 법률이 개정된 후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에는 <br> 법률의 의도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만들어 <br> 지는 경우가 많음 | 5.4 |
| 중요한 정보가 교과부의 지침이나 훈령에 위임없이 규정되는 <br> 경우가 많음 | 5.4 |
| 교원과 관련한 법령의 경우 대부분 정보가 별표에 들어가 있는 |  |
| 데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이 대부부분임 | 5.4 |
| 정부에서 실행하는 교육제도 돤련 내용들이 법률적 근거 없이 |  |
| 행정청의 부령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체계상 법률 유보나 위임 |  |
| 입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 | 5.4 |
| 자치도의 경우 감사원, 평가권 등의 권한 중복 문제 | 5.4 |
| 통합법(혹은 기본법, 상윕ㅂㅂ)의 부재 | 5.4 |
| 특별법의 형식이 많아 우선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순서 파악이 <br> 어려움 | 5.4 |
| 포괄적 위임이 많음 | 5.4 |

## (7) 기타 교육법의 문제점

| Base=100명 | $\%$ |
| :---: | :---: |
| 특별법이 너무 많아서 법 간의 적용 충돌문제가 발생 | 2.7 |
| 평준화 교육을 지향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특성화/ <br> 특목고 등에 의한 쭉쟁이 평준화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현 <br> 실처럼 법 현실은 일반인을 기만하고 있음 | 2.7 |
| 국가 법령의 지나친 간섭 |  |

○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은 상기와 같았다.

## 2.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 방안

(1)
교육기본법 정비를 위한 교육기본계획에 대한 규정 추가에
대한 태도
(단위: \%)


○ 교육기본법 정비를 위한 교육기본계획에 대한 규정 추가에 대해서 는 $70.0 \%$ 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 만이 규정 추 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quare$ 교육 관련 전문가가 법학 관련 전문가보다 해당 법령의 규정 추가 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속별로는 석박사과정의 학생에게서 $87.5 \%$ 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9 . 0}$ | $\mathbf{2 1 . 0}$ | $\mathbf{7 0 . 0}$ | $\mathbf{3 . 8}$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9.2 | 22.4 | 68.4 | 3.7 |
| 교 육 | (24) | 8.3 | 16.7 | 75.0 | 3.9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11.8 | 20.6 | 67.6 | 3.6 |
| 정부기관 | (9) | 0.0 | 44.4 | 55.6 | 3.6 |
| 연구원 | (30) | 16.7 | 13.3 | 70.0 | 3.8 |
| 대학강사 | $(11)$ | 0.0 | 36.4 | 63.6 | 3.6 |
| 석박사과정 | $(16)$ | 0.0 | 12.5 | 87.5 | 4.1 |

## (2) 교육기본법 정비를 위한 관련법령 통합 정비 방안에 대한 태도

(단위: \%)


○ 교육기본법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을 관련 법령으로 통합하여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77.0 \%$ 가 동의하고 있다.

■ 분야별 및 소속별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mathbf{1 2 . 0}$ | $\mathbf{1 1 . 0}$ | $\mathbf{7 7 . 0}$ | $\mathbf{3 . 7}$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10.5 | 11.8 | 77.6 | 3.7 |
| 교 육 | $(24)$ | 16.7 | 8.3 | 75.0 | 3.7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14.7 | 5.9 | 79.4 | 3.6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정부기관 | $(9)$ | 0.0 | 22.2 | 77.8 | 3.8 |
| 연구원 | $(30)$ | 16.7 | 10.0 | 73.3 | 3.7 |
| 대학강사 | $(11)$ | 0.0 | 18.2 | 81.8 | 3.8 |
| 석박사과정 | $(16)$ | 12.5 | 12.5 | 75.0 | 3.8 |

## (3) 교육기본법의 정비에 대한 의견

| Base=100명 | $\%$ |
| :--- | :---: |
| 기본 방향의 구체화 규정이 필요함 | 14.8 |
| 교육 기본법은 교육의 큰 틀을 열거하는 정도로 충분함 | 14.8 |
| 개인 정보 보호 | 7.4 |
| 학교의 자율권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7.4 |
| 교육 관련 개별 법률의 근거 규정으로만 머물러 있는 한계를 <br> 극복하고 각 개별 법률의 이념과 기본방향을 통합적으로 규정 <br> 하는 법률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7.4 |
| 교육개혁의 기본적 방법과 절차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 | 7.4 |
| 교육기본법에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평가의 문제뿐만이 아니 <br> 라 선발의 문제도 담아야 함 | 7.4 |
| 교육 기본법의 교육관계법 체제 전반에 있어서 우선적 적용을 <br> 명시함 | 7.4 |
| 기본법성격에 부함하도록 잘 정비해야 함 | 7.4 |
| 타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

(3) 교육기본법의 정비에 대한 의견

| $\mathrm{Base}=100$ 명 | $\%$ |
| :--- | :---: |
| 기본법에 강제성을 띠면 일반법으로서의 성향이 강화됨 | 7.4 |
| 기본법은 최상위개념을 중심으로 대강을 설정하고 각급 교육청 <br> 에 의한 교육자치에 합당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중간 도구 개념 <br> 으로 형성될 수 있는 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

○ 교육 기본법의 정비에 대한 기타 의견은 상기와 같다.
○ '기본 방향의 구체화 규정이 필요하다'와 '교육 기본법은 교육의 큰 틀을 열거하는 정도로 충분함'이라는 응답이 $14.8 \%$ 많았다.

## (4) <br> 특별법/특례법 중 법률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용 하는 방안에 대한 태도



○ 특별법/특례법 중 현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폐지하는 한 시법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1.0 \%$ 가 동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연구원은 $86.7 \%$ 가 해당 법령의 정비방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mathbf{1 5 . 0}$ | $\mathbf{4 . 0}$ | $\mathbf{8 1 . 0}$ | $\mathbf{3 . 8}$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14.5 | 2.6 | 82.9 | 3.9 |
| 교 육 | (24) | 16.7 | 8.3 | 75.0 | 3.8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14.7 | 2.9 | 82.4 | 3.8 |
| 정부기관 | (9) | 0.0 | 0.0 | 100.0 | 4.0 |
| 연구원 | (30) | 13.3 | 0.0 | 86.7 | 4.2 |
| 대학강사 | $(11)$ | 18.2 | 9.1 | 72.7 | 3.5 |
| 석박사과정 | $(16)$ | 25.0 | 12.5 | 62.5 | 3.5 |

# 시혜적/은사적 특별법/특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에 대한 필요성 

(단위: \%)


○ 시혜적/은사적 특별법/특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입법영향분석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1.0 \%$ 가 필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어, 해당 법령의 보완책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았다.

■ 법학 관련 전문가는 $96.1 \%$ 가 해당 법령의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교육 관련 전문가는 $75.0 \%$ 가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2 . 0}$ | $\mathbf{7 . 0}$ | $\mathbf{9 1 . 0}$ | $\mathbf{4 . 2}$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2.6 | 1.3 | 96.1 | 4.3 |
| 교 육 | $(24)$ | 0.0 | 25.0 | 75.0 | 4.1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0.0 | 94.1 | 4.1 |
| 정부기관 | $(9)$ | 0.0 | 0.0 | 100.0 | 4.7 |
| 연구원 | $(30)$ | 0.0 | 10.0 | 90.0 | 4.3 |
| 대학강사 | $(11)$ | 0.0 | 0.0 | 100.0 | 4.2 |
| 석박사과정 | $(16)$ | 0.0 | 25.0 | 75.0 | 4.1 |

## (6) 특별법/특례법 정비를 위해 시급한 정비 내용

| Base=100명 | $\%$ |
| :--- | :---: |
| 교육 관련 기본계획, 관련된 특별법사 규정의 증가는 바람직하 <br> 지 않고 지원 조성에 대한 특례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0.5 |
|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10.5 |
| 불가피한 예외가 아니라 특혜성 예외를 규정하는 특례를 <br> 제함 | 10.5 |
| 실질적 전수조사가 필요함 | 10.5 |
| 위임없이 만들어 지는 하위법령을 줄이거나 없앰 |  |
| 등록금 인상제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평가를 통 <br> 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학등록금 인상제한률이 나와야 함 | 10.5 |
| 대학 기능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등에 대한 특 <br> 례법 도입이 필요함 | 10.5 |
| 대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면세 혜택/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 <br> 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함 | 10.5 |
| 대학이 일반 사업체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 보완할 필요 <br> 가 있음 | 10.5 |

(6) 특별법/특례법 정비를 위해 시급한 정비 내용

| Base=100명 | $\%$ |
| :--- | :---: |
| 교육 현실에 바로 적용 가능한 각종 기준을 재정립(장애학생 <br> 및 소수자를 위한 시설 마련 등) | 10.5 |
| 모순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아감 | 5.3 |

○ 특별법/특례법 정비를 위해 시급하게 정비해야 되는 내용으로 ‘교육 관련 기본계획, 관련된 특별법사 규정의 증가는 바람직하 지 않고 지원 조성에 대한 특례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 (7)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태도

(단위: \%)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이 현재 실효성이 있는지를 분석•평가 하여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88.0 \%$ 가 동의하고 있어, 해당 법령의 정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10 명 중 8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square$ 연구원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가 분석•평가하여 교육 진흥/지 원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 | $\mathbf{1 2 . 0}$ | $\mathbf{8 8 . 0}$ | $\mathbf{4 . 2}$ |
| 전문분야 |  |  |  |  |  |
| 박 | (76) | - | 10.5 | 89.5 | 4.3 |
| 교 육 | (24) | - | 16.7 | 83.3 | 3.9 |
| 소 속 |  |  |  | 23.5 | 76.5 |
| 대학교수 | (34) | - | 22.2 | 77.8 | 4.9 |
| 정부기관 | (9) | - | 0.0 | 100.0 | 4.4 |
| 연구원 | (30) | - | 0.0 | 100.0 | 4.5 |
| 대학강사 | (11) | - | 12.5 | 87.5 | 4.1 |
| (석박사과정 | (16) | - |  |  |  |

## (8) <br>  <br> 태도

(단위: \%)
57.0


○ 교육 관련 지원/진흥의 기준을 교육기본법에 세부적으로 규정하 여 법률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 $65.0 \%$ 가 동의하고 있었으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19.0 \%$ 에 그쳤다.
$\square$ 사례수가 적기는 하지만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87.5 \%$ 가 해당 법 령의 정비방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 Base=전체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1 9 . 0}$ | $\mathbf{1 6 . 0}$ | $\mathbf{6 5 . 0}$ | $\mathbf{3 . 5}$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19.7 | 13.2 | 67.1 | 3.6 |
| 교 육 | $(24)$ | 16.7 | 25.0 | 58.3 | 3.5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14.7 | 29.4 | 55.9 | 3.4 |


| Base=전체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정부기관 | $(9)$ | 44.4 | 0.0 | 55.6 | 3.1 |
| 연구원 | $(30)$ | 26.7 | 13.3 | 60.0 | 3.4 |
| 대학강사 | $(11)$ | 18.2 | 0.0 | 81.8 | 3.8 |
| 석박사과정 | $(16)$ | 0.0 | 12.5 | 87.5 | 4.1 |

## (9) <br> 교육 관련 지원/진흥의 기준을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 교육 관련 지원/진흥의 기준을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여 법률 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71.0 \%$ 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quare$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구원의 $83.3 \%$ 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 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반면, 대학 교수는 $58.8 \%$ 만이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속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4장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9 . 0}$ | $\mathbf{2 0 . 0}$ | $\mathbf{7 1 . 0}$ | $\mathbf{3 . 7}$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9.2 | 21.1 | 69.7 | 3.7 |
| 교 육 | $(24)$ | 8.3 | 16.7 | 75.0 | 3.7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35.3 | 58.8 | 3.5 |
| 정부기관 | $(9)$ | 22.2 | 0.0 | 77.8 | 3.6 |
| 연구원 | $(30)$ | 10.0 | 6.7 | 83.3 | 4.0 |
| 대학강사 | $(11)$ | 0.0 | 36.4 | 63.6 | 3.6 |
| 석박사과정 | $(16)$ | 12.5 | 12.5 | 75.0 | 3.6 |

## (10)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필요 방안

| Base=100명 | $\%$ |
| :---: | :---: |
| 개별법에 의한 관련 법률의 통합 | 8.7 |
| 교육 진흥에서 참교육의 의미와 교육 현실을 반영 | 8.7 |
| 교육 활동의 공공서에 비추어 환경부담금 등 제반 부담금과 부 <br> 가세 면세 등을 부여하는 법률의 재정이 필요 | 8.7 |
| 구체적인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화 | 8.7 |
| 지역 내 주민 평생교육과 연관시켜 학생과 주민이 함께 교육받을 <br> 수 있는 대안문화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원 법령의 필요 | 8.7 |

(10)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필요 방안

| Base=100명 |  |
| :--- | :--- |
| 다문화/탈북자 관련 교육 진흥 지원이 필요 8.7 <br> 법률 제/개정 시 실무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 8.7 <br> 자금 지원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8.7 <br> 학교생활 중 급식, 교실, 활동 등을 조성하는 지원법에 일관성  <br> 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8.7 <br> 각 특별법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교육 기본법에 정하고 특별법 <br> 에서는 그 부분을 인용하던지 확인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br> 것이 필요함 8.7 <br>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진흥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수준의 지 <br> 원책이 담긴 규정이 필요함 8.7 <br> 큰 범위에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 후 자치교육행  <br> 정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의 평가를 거쳐 후견자적으로 지원  <br> 하는 형태가 바람직  | 4.3 |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개별 법에 의한 관련 법률의 통합', '교육 진흥에서 참교육의 의미와 교육 현실을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11) 기관설치 근거 법률 정비에 대한 태도

(단위: \%)

## 56.0



○ 교육 관계 법령 중 "자율성을 갖는 협의회 관련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60.0 \%$ 가 동의하고 있으며, $36.0 \%$ 는 '보통'으로 태도를 밝히지 않 았다. 한편,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 \%$ 로 낮았다.

■ 정부기관 및 대학강사에게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 타났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mathbf{4 . 0}$ | $\mathbf{3 6 . 0}$ | $\mathbf{6 0 . 0}$ | $\mathbf{3 . 6}$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5.3 | 36.8 | 57.9 | 3.5 |
| 교 육 | (24) | 0.0 | 33.3 | 66.7 | 3.8 |
| 소 속 |  |  |  |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38.2 | 55.9 | 3.6 |
| 정부기관 | $(9)$ | 0.0 | 22.2 | 77.8 | 3.8 |
| 연구원 | $(30)$ | 6.7 | 43.3 | 50.0 | 3.4 |
| 대학강사 | $(11)$ | 0.0 | 18.2 | 81.8 | 3.8 |
| 석박사과정 | $(16)$ | 0.0 | 37.5 | 62.5 | 3.8 |

(12)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국립학교의 공공성과 연계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한 태도
(단위: \%)


○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국립학교의 공공성과 연계하여 특 별히 지원하는 것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55.0 \%$ 는 동의하고 있으 며, $17.0 \%$ 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quare$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75.0 \%$ 가 해당 지적에 대해 동의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1 7 . 0}$ | $\mathbf{2 8 . 0}$ | $\mathbf{5 5 . 0}$ | $\mathbf{3 . 4}$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11.8 | 31.6 | 56.6 | 3.5 |
| 교 육 | $(24)$ | 33.3 | 16.7 | 50.0 | 3.1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8.8 | 32.4 | 58.8 | 3.6 |
| 정부기관 | $(9)$ | 11.1 | 44.4 | 44.4 | 3.3 |
| 연구원 | $(30)$ | 3.3 | 36.7 | 60.0 | 3.8 |
| 대학강사 | $(11)$ | 0.0 | 0.0 | 100.0 | 4.0 |
| 석박사과정 | $(16)$ | 75.0 | 12.5 | 12.5 | 2.1 |

## (13) 교육 관련 기관 설치 근거 법률 정비를 위한 필요방안

| $\mathrm{Base}=100$ 명 | $\%$ |
| :--- | :---: |
| 보수화되고 관료화된 교육기관의 현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라 <br> 도 교육위원회 등 자치기관은 반드시 필요함 | 11.8 |
| 설치법령의 단일법전화 | 11.8 |
| 공통된 사항들의 통일적 제정이 필요함 | 11.8 |
| 일정한 주기마다 전면개정방식을 통해 근거가 되는 법률이 너무 | 11.8 |
| 난잡하게 부분 개정되는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11.8 |
| 입법영향분석 등과 같은 학제간 관점의 실증적 평가도구의 활용 | 11.8 |
| 통합된 운영체계 |  |

(13) 교육 관련 기관 설치 근거 법률 정비를 위한 필요방안

| Base=100명 |  | $\%$ |
| :--- | :---: | :---: |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경쟁체계 구축이 필요함 | 11.8 |  |
| 학교생활과 학습권, 교육권 등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  |  |
| 기관의 설치와 동시에 이들을 공개/투명화하여 자율과 책임을 | 11.8 |  |
| 강화함 |  |  |
| 국공립이나 사립 또는 정치적 중립성 여부 등이 기준이 되어서 |  |  |
| 는 안되며,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 | 5.9 |  |
| 치구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법정 의무교육의 범위 등과의 |  |  |
|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함 |  |  |

○ 교육 관련 기관 설치 근거 법률 정비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보수화되고 관료화된 교육기관의 현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라 도 교육위원회 등 자치기관은 반드시 필요함', '설치 법령의 단 일법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관련 법률의 정비 방안에 대한 태도

예시 1. 사도장학금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 1 조 (목적) 의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
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시 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 관한 건[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 (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4)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관련 법률의 정비 방안에 대한 태도

예시 3.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대통령령 제4401호] 제 1 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단위: \%)


○ "법령에 명시적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개정시 위임근거 마련 혹 은 폐지를 검토하는 정비방안"에 대해 $91.0 \%$ 가 동의하고 있어, 해당 법령의 정비방안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았다.
$\square$ 대학교수의 경우는 해당 법령의 정비방안에 대해 $97.1 \%$ 가 동의 하고 있다.
(단위: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mathbf{2 . 0}$ | $\mathbf{7 . 0}$ | $\mathbf{9 1 . 0}$ | $\mathbf{4 . 3}$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2.6 | 6.6 | 90.8 | 4.3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교 육 | $(24)$ | 0.0 | 8.3 | 91.7 | 4.3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0.0 | 2.9 | 97.1 | 4.2 |
| 정부기관 | $(9)$ | 0.0 | 0.0 | 100.0 | 4.4 |
| 연구원 | $(30)$ | 0.0 | 6.7 | 93.3 | 4.5 |
| 대학강사 | $(11)$ | 0.0 | 18.2 | 81.8 | 4.2 |
| 석박사과정 | $(16)$ | 12.5 | 12.5 | 75.0 | 4.0 |

##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사항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예시. 임시교원양성소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위: \%)
57.0


○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사항에 반 영"에 대해 $93.0 \%$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square$ 응답자 특성별로는 큰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으며，소속에 관계 없이 개정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사례수（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2 . 0}$ | $\mathbf{5 . 0}$ | $\mathbf{9 3 . 0}$ | $\mathbf{4 . 3}$ |
| 전문분야 |  |  |  |  |  |
| 법학 | $(76)$ | 0.0 | 6.6 | 93.4 | 4.3 |
| 교육 | $(24)$ | 8.3 | 0.0 | 91.7 | 4.1 |
| 소속 |  |  |  |  |  |
| 대학교수 | $(34)$ | 0.0 | 8.8 | 91.2 | 4.1 |
| 정부기관 | $(9)$ | 0.0 | 0.0 | 100.0 | 4.4 |
| 연구원 | $(30)$ | 0.0 | 6.7 | 93.3 | 4.4 |
| 대학강사 | $(11)$ | 0.0 | 0.0 | 100.0 | 4.5 |
| 석박사과정 | $(16)$ | 12.5 | 0.0 | 87.5 | 4.0 |

##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개정 하는 것에 대한 태도

예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 인적자원부령 제900호］
제 1 조（목적）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
제 77 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1）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 교의 장이 실시한다．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개정 하는 것에 대한 태도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 80 조제 1 항의 후기학교 입 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단위: \%)


○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요 한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96.0 \%$ 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분야 및 소속에 상관없이 $90 \%$ 이상 동의하고 있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1 . 0}$ | $\mathbf{3 . 0}$ | $\mathbf{9 6 . 0}$ | $\mathbf{4 . 3}$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1.3 | 3.9 | 94.7 | 4.3 |
| 교 육 | $(24)$ | 0.0 | 0.0 | 100.0 | 4.2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2.9 | 2.9 | 94.1 | 4.1 |
| 정부기관 | $(9)$ | 0.0 | 0.0 | 100.0 | 4.4 |
| 연구원 | $(30)$ | 0.0 | 6.7 | 93.3 | 4.3 |
| 대학강사 | $(11)$ | 0.0 | 0.0 | 100.0 | 4.4 |
| 석박사과정 | $(16)$ | 0.0 | 0.0 | 100.0 | 4.4 |

## 교육 관계 법령의 하위 법령 제정 및 위임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 필요한 방안

| Base=100명 | $\%$ |
| :--- | :---: |
|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나 조례로 <br> 위임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함 | 8.0 |
| 교육자치와 포괄적 위임에 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함 | 8.0 |
| 교육자치제도 정신에 맞추어 가급적 시도 조례로 위임함 | 8.0 |
|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를 의무화함 | 8.0 |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자체 자치법규 간의 충돌을 방지하 <br> 기 위한 위임의 명확화가 필요함 | 8.0 |
| 법률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 <br> 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필요가 매 <br> 우 있음 | 8.0 |
| 위임 규정 정비시 궁극적 목표인 학교자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 <br> 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마련인지 관련 교육 당 <br> 사자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 | 8.0 |

## 교육 관계 법령의 하위 법령 제정 및 위임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 필요한 방안

| Base=100명 | $\%$ |
| :---: | :---: |
| 위임관계를 명확화하고, 법과 령 그리고 조례에서 다시 정하는 <br> 것은 그 관계를 조문 자체에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필요함 | 8.0 |
| 위임의 근거가 없는 교육관계 법령에 관한 조사를 통해 철저하 <br> 게 근거를 신설하던가 폐지하던가 결정하여 엄격하게 정비하는 <br> 것이 필요함 | 8.0 |
| 입법평가를 통한 개정 또는 폐지 결정이 필요함 |  |
| 전문가 조사 및 이해관계인들의 수범자 의견조사가 필요함 | 8.0 |
|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명령보다 대부분 사항을 시도 <br> 조례에 위임해야 함 | 8.0 |
| 교육자치를 전제로 자치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은 복 <br> 잡하게 정하지 않고 대령이나 부령에 의한 간섭은 가급적 배제 | 4.0 |

○ 교육 관계 법령의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 서 필요한 방안으로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관행은 없 어져야 함', '교육자치와 포괄적 위임에 관한 체계 정비가 필요 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18) [세부규정 정비방안] 1. 초 • 중등 교육법 제 23 조 1 항

-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률로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세부적인 운영 및 실시의 기준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명시
(단위: \%)


○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1항 관련 법률의 세부규정 정비방안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0.0 \%$ 로 나타났다.
$\square$ 응답자 특성별로는 정부기관 등 소속 연구원과 석박사과정의 긍 정응답률이 $100.0 \%$ 로 나타났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5 . 0}$ | $\mathbf{5 . 0}$ | $\mathbf{9 0 . 0}$ | $\mathbf{4 . 1}$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3.9 | 3.9 | 92.1 | 4.1 |
| 교 육 | (24) | 8.3 | 8.3 | 83.3 | 3.9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8.8 | 85.3 | 3.9 |
| 정부기관 | (9) | 0.0 | 0.0 | 100.0 | 4.2 |
| 연구원 | $(30)$ | 0.0 | 6.7 | 93.3 | 4.2 |
| 대학강사 | $(11)$ | 27.3 | 0.0 | 72.7 | 3.6 |
| 석박사과정 | $(16)$ | 0.0 | 0.0 | 100.0 | 4.3 |

(19)

## [세부규정 정비방안] 2. 초 중등 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 해 설치된 교육과정심의회 관련 법률

- 교과과정을 정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서 갖추도록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위: \%)


○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교육과정심의회 관 련 법률의 세부규정 정비방안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9.0 \%$ 로 나타났다.

■ 사례 수는 적지만, 정부기관의 긍정응답률이 $100.0 \%$ 로 나타났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3 . 0}$ | $\mathbf{8 . 0}$ | $\mathbf{8 9 . 0}$ | $\mathbf{4 . 0}$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1.3 | 5.3 | 93.4 | 4.1 |
| 교 육 | $(24)$ | 8.3 | 16.7 | 75.0 | 3.8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8.8 | 85.3 | 3.9 |
| 정부기관 | $(9)$ | 0.0 | 0.0 | 100.0 | 4.2 |
| 연구원 | $(30)$ | 0.0 | 10.0 | 90.0 | 4.0 |
| 대학강사 | $(11)$ | 9.1 | 0.0 | 90.9 | 4.2 |
| 석박사과정 | $(16)$ | 0.0 | 12.5 | 87.5 | 4.1 |

## [세부규정 정비방안] 3. 고등교육법 제 5 조 학교의 지도•감 독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8 조

-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자료제출 규정으로 법 개 정시 지도•감독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bigcirc$ 고등교육법 제5조 학교의 지도•감독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8 조 관련 법률의 세부규정 정비가 타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3.0 \%$ 로 나타났다.
$\square$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구원의 긍정응답률이 $96.7 \%$ 로 가장 높았으 며, 대학강사가 $90.9 \%$ 로 그 뒤를 이었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mathbf{6 . 0}$ | $\mathbf{1 1 . 0}$ | $\mathbf{8 3 . 0}$ | $\mathbf{3 . 9}$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5.3 | 9.2 | 85.5 | 4.0 |

제4장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  | 사례수 (명) |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 |
| ---: | :---: | :---: | :---: | :---: | :---: |
| 교 육 | $(24)$ | 8.3 | 16.7 | 75.0 | 3.8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11.8 | 14.7 | 73.5 | 3.7 |
| 정부기관 | $(9)$ | 0.0 | 22.2 | 77.8 | 4.0 |
| 연구원 | $(30)$ | 3.3 | 0.0 | 96.7 | 4.0 |
| 대학강사 | $(11)$ | 9.1 | 0.0 | 90.9 | 4.0 |
| 석박사과정 | $(16)$ | 0.0 | 25.0 | 75.0 | 4.0 |

(21)
[세부규정 정비방안] 4. 고등교육법 시행령 52조 박사학위 등 수여 취소 관련 법률

- 학위취소는 학위보유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항을 주므로 모법의 위임관 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단위: \%)

$\bigcirc$ 고등교육법 시행령 52 조 박사학위 등 수여 취소 관련 법률의 세 부규정 정비가 타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2.9 \%$ 로 나타났다.
$\square$ 응답자 특성별로는 석박사 과정의 긍정 응답률이 $100.0 \%$ 로 나타 났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3 . 0}$ | $\mathbf{5 . 0}$ | $\mathbf{9 2 . 0}$ | $\mathbf{4 . 1}$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3.9 | 6.6 | 89.5 | 4.1 |
| 교 육 | $(24)$ | 0.0 | 0.0 | 100.0 | 4.2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2.9 | 91.2 | 4.0 |
| 정부기관 | $(9)$ | 0.0 | 22.2 | 77.8 | 4.0 |
| 연구원 | $(30)$ | 0.0 | 6.7 | 93.3 | 4.1 |
| 대학강사 | $(11)$ | 9.1 | 0.0 | 90.9 | 4.2 |
| 석박사과정 | $(16)$ | 0.0 | 0.0 | 100.0 | 4.4 |

##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1. 교육기본법
(단위: \%)


○「교육기본법」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7.0 \%$ 로 나타났 다.
$\square$ 문제가 있다는 응답에서 '연구원'의 응답률이 $80.0 \%$ 로 가장 높았 으며, 석박사과정의 응답률이 $75.0 \%$ 로 그 뒤를 이었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통 | 문제 없음 | 평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6 7 . 0}$ | $\mathbf{3 1 . 0}$ | $\mathbf{2 . 0}$ | $\mathbf{2 . 3}$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67.1 | 32.9 | 0.0 | 2.3 |
| 교 육 | $(24)$ | 66.7 | 25.0 | 8.3 | 2.3 |
| 소 속 |  |  |  |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통 | 문제 없음 | 평균 |
| ---: |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61.8 | 32.4 | 5.9 | 2.3 |
| 정부기관 | $(9)$ | 55.6 | 44.4 | 0.0 | 2.4 |
| 연구원 | $(30)$ | 80.0 | 20.0 | 0.0 | 2.1 |
| 대학강사 | $(11)$ | 45.5 | 54.5 | 0.0 | 2.5 |
| 석박사과정 | $(16)$ | 75.0 | 25.0 | 0.0 | 2.3 |

(23)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 2. 교육조직관련 법령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등


○ '교육 조직 관련 법령'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2.0 \%$ 로 나타났다.
$\square$ 문제가 있다는 응답에서 '대학강사'의 응답률이 평균보다 $9.8 \% \mathrm{P}$ 높았다.

제4장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통 | 문제 없음 | 평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7 2 . 0}$ | $\mathbf{2 8 . 0}$ | - | $\mathbf{2 . 2}$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68.4 | $\mathbf{3 1 . 6}$ | - | 2.2 |
| 교 육 | $(24)$ | 83.3 | 16.7 | - | 2.0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73.5 | 26.5 | - | 2.1 |
| 정부기관 | (9) | 77.8 | 22.2 | - | 2.2 |
| 연구원 | $(30)$ | 63.3 | 36.7 | - | 2.2 |
| 대학강사 | $(11)$ | 81.8 | 18.2 | - | 2.2 |
| 석박사과정 | $(16)$ | 75.0 | 25.0 | - | 2.1 |

(24)

##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3. 학교 교육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 '학교 교육관련 법령'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6.0 \%$ 로 나타났다.
$\square$ 문제가 있다는 응답에서 '연구원' 의 응답률이 평균보다 $7.3 \% \mathrm{P}$ 높 았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mathbf{7 6 . 0}$ | $\mathbf{2 1 . 0}$ | $\mathbf{3 . 0}$ | $\mathbf{2 . 1}$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73.7 | 22.4 | 3.9 | 2.1 |
| 교 육 | (24) | 83.3 | 16.7 | 0.0 | 2.2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73.5 | 26.5 | 0.0 | 2.1 |
| 정부기관 | (9) | 77.8 | 22.2 | 0.0 | 1.8 |
| 연구원 | (30) | 83.3 | 13.3 | 3.3 | 1.9 |
| 대학강사 | $(11)$ | 63.6 | 36.4 | 0.0 | 2.4 |
| 석박사과정 |  |  |  |  |  |

##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 4. 학력 인정관련 법령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단위: \%)


○ '학력 인정 관련 법령'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8.0 \%$ 로 나타났다.
$\square$ 문제가 있다는 응답에서 '연구원'의 응답률이 평균보다 $12.0 \% \mathrm{P}$ 높았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6 8 . 0}$ | $\mathbf{3 0 . 0}$ | $\mathbf{2 . 0}$ | $\mathbf{2 . 2}$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68.4 | 28.9 | 2.6 | 2.2 |
| 교 육 | $(24)$ | 66.7 | 33.3 | 0.0 | 2.3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76.5 | 23.5 | 0.0 | 2.1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정부기관 | $(9)$ | 55.6 | 44.4 | 0.0 | 2.2 |
| 연구원 | $(30)$ | 80.0 | 13.3 | 6.7 | 2.1 |
| 대학강사 | $(11)$ | 45.5 | 54.5 | 0.0 | 2.2 |
| 석박사과정 | $(16)$ | 50.0 | 50.0 | 0.0 | 2.5 |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5.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울산 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령•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 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단위: \%)


○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0.0 \%$ 로 나타났다. 10 명 중 8 명은 교원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하고 있다.
$\square$ 사례 수는 적지만, '정부기관'의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100.0 \%$ 로 나타났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8 0 . 0}$ | $\mathbf{1 8 . 0}$ | $\mathbf{2 . 0}$ | $\mathbf{2 . 1}$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81.6 | 15.8 | 2.6 | 2.1 |
| 교 육 | $(24)$ | 75.0 | 25.0 | 0.0 | 2.3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85.3 | 14.7 | 0.0 | 2.1 |
| 정부기관 | $(9)$ | 100.0 | 0.0 | 0.0 | 2.0 |
| 연구원 | $(30)$ | 90.0 | 10.0 | 0.0 | 2.0 |
| 대학강사 | $(11)$ | 63.6 | 36.4 | 0.0 | 2.2 |
| 석박사과정 | $(16)$ | 50.0 | 37.5 | 12.5 | 2.6 |

##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27)

## 6. 교원 관련 법령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 제를 위한 특별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 법,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등


○「교원 관련 법령」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3.0 \%$ 로 나타 났다. 10 명 중 8 명은 교원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square$ 문제가 있다는 응답에서 '정부기관'과 '대학강사의' 응답률이 평 균보다 다소 낮았다. 반면 연구원의 문제있음에 대한 응답률은 $90.0 \%$ 를 기록했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8 3 . 0}$ | $\mathbf{1 5 . 0}$ | $\mathbf{2 . 0}$ | $\mathbf{2 . 0}$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82.9 | 14.5 | 2.6 | 1.9 |
| 교 육 | $(24)$ | 83.3 | 16.7 | 0.0 | 2.0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88.2 | 11.8 | 0.0 | 1.9 |
| 정부기관 | (9) | 55.6 | 44.4 | 0.0 | 2.0 |
| 연구원 | (30) | 90.0 | 10.0 | 0.0 | 1.8 |
| 대학강사 | $(11)$ | 63.6 | 36.4 | 0.0 | 2.2 |
| 석박사과정 | $(16)$ | 87.5 | 0.0 | 12.5 | 2.3 |

## (28) <br>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br> 7. 장학 관련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단위: \%)


○ '장학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8.0 \%$ 로 나타 났다.
$\square$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서 '정부기관'의 응답률이 평균보다 $19.8 \% \mathrm{P}$ 높았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5 8 . 0}$ | $\mathbf{4 0 . 0}$ | $\mathbf{2 . 0}$ | $\mathbf{2 . 4}$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60.5 | 36.8 | 2.6 | 2.4 |
| 교 육 | $(24)$ | 50.0 | 50.0 | 0.0 | 2.4 |
| 소 속 |  |  |  |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58.8 | 41.2 | 0.0 | 2.4 |
| 정부기관 | $(9)$ | 77.8 | 22.2 | 0.0 | 2.0 |
| 연구원 | $(30)$ | 53.3 | 46.7 | 0.0 | 2.4 |
| 대학강사 | $(11)$ | 45.5 | 54.5 | 0.0 | 2.5 |
| 석박사과정 | $(16)$ | 62.5 | 25.0 | 12.5 | 2.5 |

(29)

##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 8. 교육 재정 관련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단위: \%)


○「교육 재정 관련 법령」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7.0 \%$ 로 높게 나타났다.
$\square$ 문제가 있다는 응답에서 '대학교수'와 '연구원'의 응답 비중이 $70 \%$ 대로 높았다.

제4장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6 7 . 0}$ | $\mathbf{3 1 . 0}$ | $\mathbf{2 . 0}$ | $\mathbf{2 . 3}$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64.5 | 32.9 | 2.6 | 2.3 |
| 교 육 | $(24)$ | 75.0 | 25.0 | 0.0 | 2.3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70.6 | 29.4 | 0.0 | 2.2 |
| 정부기관 | (9) | 55.6 | 44.4 | 0.0 | 2.2 |
| 연구원 | $(30)$ | 76.7 | 23.3 | 0.0 | 2.2 |
| 대학강사 | $(11)$ | 45.5 | 54.5 | 0.0 | 2.5 |
| 석박사과정 | $(16)$ | 62.5 | 25.0 | 12.5 | 2.5 |

(30)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9. 평생 교육 관련 법령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단위: \%)


○「평생 교육 관련 법령」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는 $69.0 \%$ 로 나타났다.
$\square$ 문제가 있다는 응답에서 대학 강사의 응답 비중이 평균보다 $41.7 \% \mathrm{P}$ 낮았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앖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6 9 . 0}$ | $\mathbf{3 0 . 0}$ | $\mathbf{1 . 0}$ | $\mathbf{2 . 2}$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64.5 | 34.2 | 1.3 | 2.3 |
| 교 육 | $(24)$ | 83.3 | 16.7 | 0.0 | 2.0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76.5 | 23.5 | 0.0 | 2.1 |
| 정부기관 | (9) | 77.8 | 22.2 | 0.0 | 2.2 |
| 연구원 | (30) | 63.3 | 33.3 | 3.3 | 2.2 |
| 대학강사 | (11) | 27.3 | 72.7 | 0.0 | 2.7 |
| 석박사과정 | (16) | 87.5 | 12.5 | 0.0 | 2.1 |

##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 10. 학교 보건/생활 관련 법령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 '학교 보건/생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5.0 \%$ 로 높게 나타났다.
$\square$ 석박사과정 학생 모두가 학교 보건/생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 다고 응답했다.
(단위 : \%)

|  | 사례수 (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 1 0 0 )}$ | $\mathbf{7 5 . 0}$ | $\mathbf{2 2 . 0}$ | $\mathbf{3 . 0}$ | $\mathbf{2 . 2}$ |
| 전문분야 |  |  |  |  |  |
| 법 학 | $(76)$ | 72.4 | 23.7 | 3.9 | 2.2 |
| 교 육 | $(24)$ | 83.3 | 16.7 | 0.0 | 2.1 |


|  | 사례수（명） | 문제 있음 | 보 통 | 문제 없음 | 평 균 |
| ---: | :---: | :---: | :---: | :---: | :---: |
| 소 속 |  |  |  |  |  |
| 대학교수 | $(34)$ | 76.5 | 23.5 | 0.0 | 2.1 |
| 정부기관 | $(9)$ | 77.8 | 22.2 | 0.0 | 2.2 |
| 연구원 | $(30)$ | 63.3 | 33.3 | 3.3 | 2.3 |
| 대학강사 | $(11)$ | 63.6 | 18.2 | 18.2 | 2.4 |
| 석박사과정 | $(16)$ | 100.0 | 0.0 | 0.0 | 2.0 |

## （32）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법률（（1순위）


$\bigcirc$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법률 1 순위로 「교육기본법」이 전체 의 $45.0 \%$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학교 교육 관련 법령」이 $15.0 \%$ 의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기본법」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에서＇석박사 과정’에 있 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평균보다 $30.0 \% \mathrm{P}$ 높았다．

제4장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단위 : \%)

|  | 사례수 <br> (명) | $\begin{array}{\|c\|} \text { 교육 } \\ \text { 기본법 } \end{array}$ | 교육 <br> 조직 <br> 관련 <br> 법령 | 학교 <br> 교육 <br> 관련 <br> 법령 | 학력 <br> 인정 <br> 관련 <br> 법령 | 학교의 <br> 설치/ <br> 시설에 <br> 관한 <br> 법령 | 교원 <br> 관련 <br> 법령 | 교육 <br> 재정 <br> 관련 <br> 법령 | 학교 <br> 보건/ <br> 생활 <br> 관련 <br> 법령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0) | 45.0 | 8.0 | 15.0 | 4.0 | 10.0 | 10.0 | 2.0 | 6.0 | 100.0 |
| 전문 <br> 분야 |  |  |  |  |  |  |  |  |  |  |
| 법 학 | (76) | 46.1 | 7.9 | 17.1 | 2.6 | 10.5 | 7.9 | 0.0 | 7.9 | 100.0 |
| 교 육 | (24) | 41.7 | 8.3 | 8.3 | 8.3 | 8.3 | 16.7 | 8.3 | 0.0 | 100.0 |
| 소 속 |  |  |  |  |  |  |  |  |  |  |
| 대학 교수 | (34) | 44.1 | 11.8 | 14.7 | 11.8 | 17.6 | 0.0 | 0.0 | 0.0 | 100.0 |
| 정부 <br> 기관 | (9) | 33.3 | 0.0 | 22.2 | 0.0 | 22.2 | 22.2 | 0.0 | 0.0 | 100.0 |
| 연구원 | (30) | 30.0 | 13.3 | 16.7 | 0.0 | 0.0 | 20.0 | 6.7 | 13.3 | 100.0 |
| 대학 강사 | (11) | 54.5 | 0.0 | 27.3 | 0.0 | 18.2 | 0.0 | 0.0 | 0.0 | 100.0 |
| 석박사 <br> 과정 | (16) | 75.0 | 0.0 | 0.0 | 0.0 | 0.0 | 12.5 | 0.0 | 12.5 | 100.0 |

##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교육기본법

| $\mathrm{Base}=12$ 명 |  |
| :--- | :---: |
| 계 |  |
| 교육기본법은 교육법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육관련 <br> 법의 모범역할을 해야 함(건전한 성의식 함양 등의 조항은 <br> 불필요함) | 50.0 |
| 헌법 제31조 교육헌법 다음으로 전반적인 교육관련 사항을 <br>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조항으로 구성해야 함 | 16.7 |
| 교육기본법/초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br> 정비함 | 16.7 |
| 모법에서 규정할 부분과 구체적 시행법률에서 규정할 부분 <br> 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8.3 |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법 자체의 완결정 정의 조항 <br> 필요 | 8.3 |
| 미래 사회는 풍부한 상상력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서는 영재 |  |
| 교육보다는 보편적인 지덕육을 강조하는 교육기본법으로 거 |  |
| 듭날 필요가 있음 |  |

○ 교육기본법의 정비에 대한 의견은 상기와 같다.

○ 교육기본법은 교육법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육 관련법 의 모범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0.0 \%$ 로 가장 많았다.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교육조직관련 법령

| Base=6명 | 계 |
| :--- | :---: |
| 관련 법률의 간소화 | 33.3 |
| 교원의 기본권 보장 및 독립성과 책임성 강조 | 33.3 |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필요함 | 33.3 |

○ 교육조직관련 법령 정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은 상기와 같았다.

| Base=8명 | $\%$ |
| :--- | :---: |
| 교육기본법/초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 <br> 비함 | 75.0 |
| 법률에서 지나치게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점과 하위 <br> 법령에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개 <br> 정해야 함 | 25.0 |

○ 학교 교육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의견은 상기와 같다.

○ 교육기본법/초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5.0 \%$ 로 많았다.
(36)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학력 인정 관련 법령

| Base=4명 | $\%$ |
| :--- | :---: |
|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에 대한 학력인정을 전향적으로 인정 <br> 해야 함 | 50.0 |
| 학력 인정에 따라 2년제/3년제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체계 및 <br> 학교별 교육 체계의 보편적인 부분을 마련함 | 50.0 |

○ 학력 인정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의견은 상기와 같다.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 $\mathrm{Base}=2$ 명 | $\%$ |
| :---: | :---: |
| 원활한 학교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건축법 등에 대한 특 <br> 례를 제정하는 법이 필요함 | 100.0 |

○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으로는 '원할한 학교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제정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교원 관련 법령

| $\mathrm{Base}=8$ 명 | $\%$ |
| :--- | :---: |
| 관련 법률의 간소화 | 25.0 |
| 교원관련 단일법전 제정 | 25.0 |
| 교원의 기본권 보장 및 독립성과 책임성 강조 | 25.0 |
| 한시적 특별법 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25.0 |

○ 교원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 방안은 상기와 같았으며, '관련 법률 의 간소화', '교원관련 단일 법전 제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40) 교육관례 법령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조언

| Base=100명 | $\%$ |
| :--- | :---: |
| 법령의 체계적 정비 필요(일관성) | 10.7 |
| 교원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질 <br> 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7.1 |
| 교육 관계 법률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계의 전문가, <br> 교육법 전문가, 현장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 수렴에 충실해야 함 | 7.1 |

## (40) 교육관례 법령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조언

| Base=100명 | $\%$ |
| :--- | :---: |
| 지금은 지나치게 변문욕례이고 형식적이다. 특히 의원 개인입 <br> 법의 경우에는 견제 장치가 더 필요함 | 7.1 |
| 교육 입법평가의 제도화 | 7.1 |
| 규정 자체의 명료화 | 7.1 |
| 법조문 간 통일성 확보 및 유사/중복 규정의 정비 |  |
| 교육 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 사회적 공 <br> 감대 형성이 필요함 | 7.1 |
| 법 정비시 개정 목표를 공교육 정상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두 <br> 고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맞추어 갔으면 함 | 7.1 |
| 의원입법에서부터 체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의 <br> 안발의 단계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7.1 |
| 입법체계를 조화롭게 해야함 | 7.1 |
| 전수조사가 필요함 | 7.1 |
| 체계 정합성이 우선되어야 함 | 7.1 |
| 법령 개정시 충분히 교육당사자들과 소통 및 의견 수렴과정을 |  |
| 거쳤으면 함 | 7.1 |
| 위임규정이 책임 떠넘기기식 규정 또는 법령 조항이 현 교육 <br>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고민 과정이 필요함 | 7.1 |
| 교육기본법의 보편성과 교권확립의 대전제하에 소수의 영재를 <br> 위한 특별법이 다양성을 전제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br> 는 미래의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 중등, 고등 및 대학교육의 <br> 장이 필요함 | 3.6 |
| 없 음 | 7.1 |

○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조언은 상기와 같았다.
○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 정비를 위해서 ‘법령의 체계적(일관성)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10.7 \%$ 로 가장 많았다.

## 제 3 절 결론 및 요약

교육 관계 법령에 대한 입법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 구에서는 현재의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으로 교육기본법의 역할 부 재, 특별법•특례법의 증가, 시혜적•특혜적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원•진흥 관련 법령의 증가, 다수의 위임 근거 불명확 법령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정비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기본법은 기본법의 위상 및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강화하고, 교육기본법의 입법체계가 헌법과 다른 관련 법령들 과의 조화 및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입법내용이 다른 법과 동일 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거나 상충되지 아니한지에 대한 깊이 있 는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기본법이 교육정책에 대 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교육기본 정책을 세우고 유지하고 실시하는 근거법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 관계 법령 중 특별법•특례법의 경우 한시적으로 기 간을 정해서 운영해야 하는 법률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의 입 법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폐지하여야 할 법률을 선별하여 폐지하 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시설과 관련된「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유효기간을 법 부칙에서 관련 사무가 종료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시효와 관련하여 법 시행일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8년 9월 15일자로 시행된 동법은 효력을 가지는 기간이 명시적으 로 정해져 있는 바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입법 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특히 교원임용과 관련된 특별법•특례 법의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폐지가 필요하다．예를 들어「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사범 대학（한국교원대학교 • 교육대학 •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교원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중 임용 제외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 법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제외자의 임용신청 기간이 도 과되었으므로 폐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제 5 조부터 제 10 조의 2 를 제외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다르지 아니하고，공시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관련기관 의 정보공개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하나의 장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또한 폐교재산은 학교시설의 폐교 이후 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시설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 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지원•진흥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 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처음에는 필요한 법 률이었을 지라도 시일이 지나서 관련 분야의 진흥•지원이라는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 우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다만 교육 관련 법령이 가지는 지원•진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진흥에 관한 일반 사항을 정 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기관 설치 관련 법률 정비의 경우 특정 기관을 특별히 지원하 는 것은 입법체계에 있어서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기관과의 형평 성 문제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교육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협의회 관련 법률의 경우 협의 회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법률 제정 당시에는 있었 다고 할지라도 현재에도 법률 제정 당시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그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다만，입법체 계 정비라는 측면에서는「교육기본법」 내지「고등교육법」에서 흡수하 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기본법」내지 고등 교육법상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얼마든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운용이 가능하며＇협의회＇의 자율적 성격을 담보하는 데 있어 서도 그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하위법령 위임 관련 사항은 명시적 위임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이 는 다른 분야의 입법에서보다 다수의 위임관련 문제가 교육 관계 법 령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향후 관련 법령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먼저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한 경우로서「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809호］，「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1호］，「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대통령령 제4401호］，「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 관한 건」［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사도장 학금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에 관한 특례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46호］등이 나타났다．관련 법 령의 개정시 명시적 위임근거를 확인하여 마련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임시교원양성소규정」［대통 령령 제20740호］，「장학금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등이 있다．관련 법령 개정시 현행 법률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 다．마지막으로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 는 경우는「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 2항을 위임근거로 하고 있다．그런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 2 항은 교육감이 고통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어서 동 규칙은 조례로 위임한 것 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례로 교육 자치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 가 있다．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하위법령의 경우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밝히고 있는 현재의 입안방 식에 따라서 입법체계를 갖추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명시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한 것 법령의 경우 위임 여부에 대한 확인 조차 불가능하여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는가는 판단조차 불가능하다． 한 두건도 아니고 법령이 개별 조문 규정 단위가 아닌 전체로서 위임 근거가 없이 제정되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입법체계를 어지럽 게 하는 것이므로 향후 개정시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개정하거나 필요유무를 검토하여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강영혜, "영국의 교육개혁과 교육입법" 교육법학연구, 제 15 권 제1호, 2003.

공병호, 일본의 의무교육제도 고찰, 한국일본교육학연구, 한국일본교 육학회, 2011.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백서 2009, 평생교육진흥원, 2009.

국회사무처, 국가 경쟁력과 교육의 과제, 2009.
김경미,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혜안, 2009.
김경은, 한국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서강대학교 공공정 책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1.

김남순, 교육재정과 교육비연구, 교육과학사, 1992.
김병기, 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화’방안, 국회 개원 제 56주년 기념공동학술대회, 2004.

김상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의 인 식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세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해남•완도 지역 교원의 인식 분석,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1.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문음사, 2009.
김운삼, 유럽의 교육제도, 유리시아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8.

김운주,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현행교육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 충북대학교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장일, 한국과 일본의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비교, 전남대학교석사 학위논문, 1994.

김진한, 교사를 위한 교육학, 학지사, 2011.
김창환, 인재강국 독일의 교육, 신정, 2008.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류충현, 제 18 대 국회 교육기본법(안)의 주요 입법쟁점 분석, 교육법학 연구, 제 21 권 2 호, 대한교육법학회, 2009.

남상문, 교육학개론, 선인, 2008.
박경석, 교사의 교육법에 관한 법의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상규, 우리나라 중등교육제도의 변화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조직학 회보, 한국조직학회, 2008.

박인수,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V ), 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창언 외 1 인, 영재에 대한 의무교육제도의 교육법적 검토, 영재교육 연구, 한국영재학회, 2008.

박창언 외 2 인,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법적 쟁점, 영재교육연구, 한국영재학회, 2009.

박청미, 교육 공공성 개념과 교육제도의 변화, 교육사상연구, 한국교육 사상연구회, 200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07.
성수자, 지방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송상엽, 대한민국 교육에 해법을 제시하다. 웅지, 2011.
송기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방안에 대한 논의, 교육재정경제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0.

신옥주, EU 의 대학교육통합과정인 볼로냐 프로세스 연구, 유럽헌법 연구 제3호, 유럽헌법학회, 2008.

심승희,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도서•벽지 지역의 변 화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1권2호, 한국문화역사지리 학회, 2009.

양옥승, 한국의 영유아보육•교육제도 연구, 유아교육연구, 한국유아 교육학회, 2009.
$\qquad$ , 유아교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유아교육연구, 한국유아 교육학회, 2010.

오치규, 현장에서 본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 정치와 평론, 한국정 치평론학회, 2010.

왕기항 외, 유럽통합을 위한 교육협력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EU연구센터, 1999.

유평수, 교육행정 및 경영, 학이당, 2011.
윤종희, 현대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역사와 지식권의 제도화,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경운, 대학의 법적 지위와 국립대학의 법인화, 대한교육법학회, 교 육법학연구 제 16 권 2호, 2004.

이기섭, 유아교육 보육 이원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남국 외 1 인,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1.
이덕난 외 1 인, 독일 의무교육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11.

이득기,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문음사, 2010.
이만형, 중국의 교육제도와 유학제도, 부산교육, 부산광역시교육연구 정보원, 2008.

이명균, 학교자치론에 기초한 교사회•학부모회 법제 개편 방안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제16권 2호, 2004.12.

이세정,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07.
이시우, 독일의 교육제도와 교육법의 법원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2009.
$\qquad$ , 독일 학교의 기본구조와 학교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제14-2호, 2002.
$\qquad$ , 사립학교법 개정의 헌법적 제문제,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 11 집 제 1 호, 2005.
$\qquad$ , 독일의 교육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qquad$ , 사립학교법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사학 통권124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9.

이은주, 교육재정 배분의 수평적 공평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일주, 현행 유아교육제도 개혁의 동향과 과제, 교원교육,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연구원, 2007.

이재명, 교육을 받을 권리, 공법학연구 제 8 권 제 1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이주상, 교육제도를 통한 초등교육의 성격 논의, 초등교육학연구, 초등 교육학회, 2006.

이형석,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임천순, 유럽통합교육과 Socrates, 이호재 편, 유럽통합과 교육협력, 법문사, 1999.

장덕호, 유럽연합(EU)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분석 연구, 비교교육연구, 제 19 권제 2 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9.

장원섭, EU 의 평생학습 정책 담론 분석, 한국교육, 제 32 권 제 4 호, 2006.

전용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동문사, 2010.
전진영,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제2호, 한국정당학회, 2009.

전학선, 프랑스의 교육입법정책, 외국의 교육입법정책 토론회 발표문, 2009.

정종섭,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정혁,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9.

조석훈, 교육법의 헌법적 정당성, 교육법학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9.
최경옥, 일본에 있어서의 교육기본법의 사상적 배경, 헌법학연구 제 12 권 제 5 호, 한국헌법학회, 2006.

최영준,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Andragogy Today, 한국 성인교육학회, 2011.

최용철, 유럽연합(EU)의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은수, 평생교육론, 학지사, 2010.
하경표, 일본에 있어서 교육기본법개정의 의미와 전망, 한국일본교 육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일본교육학회, 2007.

허종렬,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의 필요성 및 한계, 한국 교육개발원, 학교운영구조에서의 구성원 참여구조 혁신방안, 연구자료 RM 2003-15.

홍성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홍성호, 유럽통합과 프랑스 고등교육의 변화 -J. Attali 보고서를 중심 으로-, 불어불문학 연구, 2001.

황보영란, 유아교육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교육기본법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010. , 유아교육법의 근본으로서의 헌법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010.

## <해외문헌>

Ch. Calliess/M. Ruffert, EUV/EGV, 3. Aufl., München 2007.
E.-W. Luthe, Bildungsrecht: Leitfaden für Ausbildung, Administration und Management, Berlin 2003.

Harris, Neville, Education, Law and Diversity, Hart Publishing, 2007.
H. von Groeben/J. Schwarze, Kommentar zum EU-/EG-Vertrag, 6. Aufl., Baden-Baden 2003.

M．Herdegen，Europarecht，9．Aufl．，München 2007.
Th．Oppermann，Europarecht，3．Aufl．，München 2005.
Th．Oppermann，Ordinarienuniversität－Gruppenuniversität－Räteuniversität， WissR Beiheft 15， 2005.

W．Thieme，Deutsches Hochschulrecht，3．Aufl．，Köln • Berlin • München 2004.

久保富三夫，添田久美子，森田滿夫，小田義隆，新井秀明 執筆 ；土屋基規 編著，現代敎育制度論，ミネルヴァ書房（京都）， 2011.

村田翼夫；山口滿 編著，現代日本の敎育：制度と內容：バイリンガ ル・テキスト，東信堂（東京），2010．

井上正志 著，敎育制度の構造と機能，東信堂（東京），2010．

## ＜인터넷 사이트＞

http：／／ec．europa．eu／education／policies／educ／education＿en．html
http：／／ec．europa．eu／education／programmes／llp／comenius／index＿de．html
http：／／ec．europa．eu／education／programmes／llp／erasmus／index＿de．html http：／／ec．europa．eu／education／programmes／llp／erasmus／what＿en．html
http：／／www．eurydice．org／Documents／FocHE2005／en／FrameSet．htm


## 부 록 1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주제별 분류표

[소분류 법령명 가나다순]

| 대 분 류 | 소 분 류 | 법 령 명 |
| :---: | :---: | :---: |
| 행정 <br> 조직 <br> 통칙 <br> (24) |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22234호] |
|  |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2호] |
|  |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024호] |
|  |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 부령 제156호] |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82호] |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33호] |
|  |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
|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 령령 제23809호] |
|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8호] |
|  |  |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  |  |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대통령령 제22269호] |
|  |  | 임시교원양성소규정 [대통령령 제20740호]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 령 명 |
| :---: | :---: | :---: |
|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39호] |
|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2호] |
|  |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교육과학기 술부령 제49호] |
|  |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51 호] |
|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645호] |
|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시행 2011.7.21] |
|  |  |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
|  |  | 학술원사무국 직제 [대통령령 제22363호] |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 |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 10078 호] |
|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10075호] |
| 학교 <br> 교육 | $\begin{aligned} & \text { 통칙 } \\ & (29+2) \end{aligned}$ | 경제교육지원법(기) [법률 제10898호] |
|  |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67호] |
|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632호] |


| 대 분 류 | 소 분 류 | 법 령 명 |
| :---: | :---: | :---: |
|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 |
|  |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
|  |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3928호] |
|  |  | 고등교육법 [법률 제11384호] |
|  |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50호] |
|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26호] |
|  |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
|  |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214호] |
|  |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73호] |
|  |  |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
|  |  |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  |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
|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66호] |
|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39호] |
|  |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호] |


| 대 분 류 | 소 분 류 | 법 령 명 |
| :---: | :---: | :---: |
|  |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 통령령 제21308호] |
|  |  | 유아교육법 [법률 제11382호] |
|  |  |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4호] |
|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3호] |
|  |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527호] |
|  |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6479호] |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66호] |
|  |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219호] |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75호] |
|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 과학기술부령 제52호] |
|  |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 령 제 82 호, 2010.11.22, 일부개정] |
|  |  |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776호] |
|  | 학력 <br> 인정 <br> (10)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4호] |
|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호] |
|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
|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3043호] |
|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 부령 제140호] |


| 대 분 류 | 소 분 류 | 법 령 명 |
| :---: | :---: | :---: |
|  |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 호]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000 호]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09호] |
|  |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대통령령 제4401호] |
|  | 학교의 <br> 설치 <br> 시설 <br> (35)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 22234호] |
|  |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과학기 술부령 제93호] |
|  |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3815호] |
|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413호] |
|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16호] |
|  |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1호] |
|  |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 |
|  |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 [교육과학 기술부령 제 3 호] |
|  |  | 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4075호] |


| 대 분 류 | 소 분 류 | 법 령 명 |
| :---: | :---: | :---: |
|  |  | 기술대학설립 -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3889호] |
|  |  | 기술대학설립 - 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  |  |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  |  |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4호] |
|  |  |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3928호] |
|  |  |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  |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대통령령 제23090호] |
|  |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5호] |
|  |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3928호] |
|  |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과 학기술부령 제 108 호] |
|  |  | 특수학교시설 • 설비기준령 [대통령령 제19959호] |
|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85호] |
|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3687호]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제10599호]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38호]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599호] |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 령 명 |
| :---: | :---: | :---: |
|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86호] |
|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80호] |
|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47호] |
|  |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사립 학교 <br> (7)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교육과학기 술부령 제77호] |
|  |  | 사립학교법 [법률 제11216호, 2012.1.26, 일부개정] |
|  |  |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74호] |
|  |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  |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 |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 10780 호,] |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3387호] |
|  | 교원 <br> (34)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
|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22호] |
|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7호] |
|  |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40호] |
|  |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3727호] |


| 대 분 류 | 소 분 류 | 법 령 명 |
| :---: | :---: | :---: |
|  |  |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제23434호] |
|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5호] |
|  |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890호] |
|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 - 협의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740호] |
|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3호] |
|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2호] |
|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1호] |
|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대통령령 제23324호] |
|  |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교육과학기술 부령 제 128 호] |
|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5호] |
|  |  |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45호] |
|  |  |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1396호] |
|  |  |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 |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 령 명 |
| :---: | :---: | :---: |
|  |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 |
|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 10866호] |
|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85호] |
|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명예교수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1호] |
|  |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534호] |
|  |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84호] |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1215호] |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
|  |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법률 제6435호] |
|  |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 령령 제 16558 호] |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10643호] |
|  | 장학 <br> (6) |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740호] |
|  |  |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 호,] |
|  |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 호] |
|  |  | 장학금규정 [대통령령 제20740호] |


| 대 분 류 | $\begin{aligned} & \text { 소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법 령 명 |
| :---: | :---: | :---: |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65호] |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488호] |
|  | 교육 재정 <br> (11) |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 술부령 제 1 호] |
|  |  | 국립 초 • 중등학교회계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호] |
|  |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59호] |
|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1호] |
|  |  |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4호] |
|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과학기술 부령 제46호]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10221호]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86호]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4호] |
|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0464호] |
|  |  |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250호] |
|  | 교육 <br> 진흥 $(33+2)$ | 과학교육 진흥법 [법률 제 10867호, 2011.7.21] |
|  |  | 과학교육진흥 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 |
|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10071호] |
|  |  | 국립 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768호] |
|  |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제10869호]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소 분 류 | 법 령 명 |
| :---: | :---: | :---: |
| 학교보건$(12+3)$ |  | 자격기본법 시행령(교)•(노) [대통령령 제23527호] |
|  |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0호] |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1384호] |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6호] |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 - (노) [법률 제10776호] |
|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교) - (노) [대통령령 제23527호] |
|  |  |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1310호] |
|  |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35호] |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 [법률 제10165호] |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법률 제9414호] |
|  |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농) [법률 제9624호] |
|  |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농) [대통령령 제23644호] |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보) [법률 제10789호] |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보) [대통령령 제23154호] |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분 } \\ & \text { 류 } \end{aligned}$ | 소 분 류 | 법 령 명 |
| :---: | :---: | :---: |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
|  |  |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38 호] |
|  |  | 학교급식법 [법률 제10885호] |
|  |  | 학교급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43호] |
|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9호] |
|  |  | 학교보건법 [법률 제11048호] |
|  |  |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26호] |
|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2 호]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41호]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 학기술부령 제142호] |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88호] |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02호] |
|  |  | 대한민국예술원법(문) [법률 제10586호] |
|  |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3504호] |
|  |  |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740호] |
|  |  | 대한민국학술원법 [법률 제10773호] |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6호] |



| 대 분 류 | 소 분 류 | 법 령 명 |
| :---: | :---: | :---: |
|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91호] |
|  |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16호] |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 령령 제24102호] |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 과학기술부령 제 161 호] |
|  |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여) [법률 제10661호] |
| 국외 <br> 유학 <br> 재외 <br> 국 민 <br> 교육 <br> (5)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050호, 2010.2.18, 일부 개정] |
|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3호] |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13호] |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3201호] |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 술부령 제 127 호] |

## 부록 2 : 전문가 조사 통계표

## 응답자 분포표

(단위 : \%)

| Base=전체 | 사례수 (명) | 1 |
| :---: | :---: | :---: |
| - 전체 ■ | (100) | 100.0 |
| 전문분야 |  |  |
| 법 학 | (76) | 76.0 |
| 교 육 | (24) | 24.0 |
| 소 속 |  |  |
| 대학교수 | (34) | 34.0 |
| 정부기관 | (9) | 9.0 |
| 연구원 | (30) | 30.0 |
| 대학강사 | (11) | 11.0 |
| 석박사과정 | (16) | 16.0 |

[표 1] 현행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에 대한 태도
[문1]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 십니까?
(단위 :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 문제가 <br> 있다 | (1)+(2) | 보통이다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8.0 | 62.0 | 70.0 | 30.0 | 100.0 | 2.2 |
| 전문분야 |  |  |  |  |  |  |  |
| 법 학 | (76) | 10.5 | 60.5 | 71.1 | 28.9 | 100.0 | 2.2 |
| 교 육 | (24) | 0.0 | 66.7 | 66.7 | 33.3 | 100.0 | 2.3 |
| 소 속 |  |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58.8 | 64.7 | 35.3 | 100.0 | 2.3 |
| 정부기관 | (9) | 22.2 | 55.6 | 77.8 | 22.2 | 100.0 | 2.0 |
| 연구원 | (30) | 13.3 | 70.0 | 83.3 | 16.7 | 100.0 | 2.0 |
| 대학강사 | (11) | 0.0 | 18.2 | 18.2 | 81.8 | 100.0 | 2.8 |
| 석박사과정 | (16) | 0.0 | 87.5 | 87.5 | 12.5 | 100.0 | 2.1 |

## [표 2]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1. 교육기본법의 기능•역할 부족
[문2] (1) 교육기본법의 기능•역할 부족 - 현행 교육 관계 법령 입 법체계의 문제점 중 아래 보기에 제시해 드린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단위 :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 문제가 <br> 있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문제가 <br> 없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9.0 | 62.0 | 71.0 | 19.0 | 10.0 | 10.0 | 100.0 | 2.3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9.2 | 55.3 | 64.5 | 25.0 | 10.5 | 10.5 | 100.0 | 2.4 |
| 교 육 | (24) | 8.3 | 83.3 | 91.7 | 0.0 | 8.3 | 8.3 | 100.0 | 2.1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14.7 | 64.7 | 79.4 | 8.8 | 11.8 | 11.8 | 100.0 | 2.2 |
| 정부기관 | (9) | 0.0 | 55.6 | 55.6 | 0.0 | 44.4 | 44.4 | 100.0 | 2.9 |
| 연구원 | (30) | 13.3 | 53.3 | 66.7 | 33.3 | 0.0 | 0.0 | 100.0 | 2.2 |
| 대학강사 | (11) | 0.0 | 45.5 | 45.5 | 54.5 | 0.0 | 0.0 | 100.0 | 2.5 |
| 석 박사 과정 | (16) | 0.0 | 87.5 | 87.5 | 0.0 | 12.5 | 12.5 | 100.0 | 2.3 |

## [표 3]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2. 특별법/특례법의 증가
[문2] (2) 특별법/특례법의 증가 - 현행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의 문제점 중 아래 보기에 제시해 드린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말씀해주세요.
(단위: \%)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문제가 } \\ \text { 있다 } \end{gathered}$ | 문제가 <br> 있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문제가 <br> 없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6.0 | 77.0 | 83.0 | 12.0 | 5.0 | 5.0 | 100.0 | 2.2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7.9 | 75.0 | 82.9 | 10.5 | 6.6 | 6.6 | 100.0 | 2.2 |
| 교 육 | (24) | 0.0 | 83.3 | 83.3 | 16.7 | 0.0 | 0.0 | 100.0 | 2.2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73.5 | 79.4 | 17.6 | 2.9 | 2.9 | 100.0 | 2.2 |
| 정부기관 | (9) | 0.0 | 77.8 | 77.8 | 0.0 | 22.2 | 22.2 | 100.0 | 2.4 |
| 연구원 | (30) | 13.3 | 80.0 | 93.3 | 6.7 | 0.0 | 0.0 | 100.0 | 1.9 |
| 대학강사 | (11) | 0.0 | 63.6 | 63.6 | 18.2 | 18.2 | 18.2 | 100.0 | 2.5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87.5 | 87.5 | 12.5 | 0.0 | 0.0 | 100.0 | 2.1 |

## [표 4]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3.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
[문2] (3)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 - 현행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의 문제점 중 아래 보기에 제시해 드린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말씀해주세요.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문제가 } \\ \text { 있다 } \end{gathered}$ | 문제가 <br> 있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전혀 <br> 문제가 <br> 없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6.0 | 71.0 | 77.0 | 21.0 | 2.0 | 2.0 | 100.0 | 2.2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7.9 | 69.7 | 77.6 | 19.7 | 2.6 | 2.6 | 100.0 | 2.2 |
| 교 육 | (24) | 0.0 | 75.0 | 75.0 | 25.0 | 0.0 | 0.0 | 100.0 | 2.3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0.0 | 64.7 | 64.7 | 35.3 | 0.0 | 0.0 | 100.0 | 2.4 |
| 정부기관 | (9) | 22.2 | 55.6 | 77.8 | 22.2 | 0.0 | 0.0 | 100.0 | 2.0 |
| 연구원 | (30) | 6.7 | 70.0 | 76.7 | 23.3 | 0.0 | 0.0 | 100.0 | 2.2 |
| 대학강사 | (11) | 0.0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0.0 | 0.0 | 0.0 | 100.0 | 2.0 |
| 석박사 <br> 과정 | (16) | 12.5 | 75.0 | 87.5 | 0.0 | 12.5 | 12.5 | 100.0 | 2.3 |

## [표 5]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4. 지원/진흥의 목적달성에 부족한 관련 법령의 증가
[문2] (4) 지원/진흥의 목적달성에 부족한 관련 법령의 증가 - 현행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의 문제점 중 아래 보기에 제시해 드린 항목 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단위: \%)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문제가 } \\ \text { 있다 } \end{gathered}$ | 문제가 <br> 있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문제가 <br> 없다 | (4) + (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10.0 | 68.0 | 78.0 | 12.0 | 10.0 | 10.0 | 100.0 | 2.2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13.2 | 68.4 | 81.6 | 10.5 | 7.9 | 7.9 | 100.0 | 2.1 |
| 교 육 | (24) | 0.0 | 66.7 | 66.7 | 16.7 | 16.7 | 16.7 | 100.0 | 2.5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11.8 | 61.8 | 73.5 | 20.6 | 5.9 | 5.9 | 100.0 | 2.2 |
| 정부기관 | (9) | 22.2 | 55.6 | 77.8 | 0.0 | 22.2 | 22.2 | 100.0 | 2.2 |
| 연구원 | (30) | 13.3 | 76.7 | 90.0 | 3.3 | 6.7 | 6.7 | 100.0 | 2.0 |
| 대학강사 | (11) | 0.0 | 81.8 | 81.8 | 0.0 | 18.2 | 18.2 | 100.0 | 2.4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62.5 | 62.5 | 25.0 | 12.5 | 12.5 | 100.0 | 2.5 |

## [표 6]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문제점] 5.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 존재
[문2] (5)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 존재 - 현행 교육 관계 법령 입 법체계의 문제점 중 아래 보기에 제시해 드린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 문제가 <br> 있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문제가 } \\ & \text { 없다 } \end{aligned}$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27.0 | 61.0 | 88.0 | 10.0 | 2.0 | 2.0 | 100.0 | 1.9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27.6 | 61.8 | 89.5 | 7.9 | 2.6 | 2.6 | 100.0 | 1.9 |
| 교 육 | (24) | 25.0 | 58.3 | 83.3 | 16.7 | 0.0 | 0.0 | 100.0 | 1.9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20.6 | 67.6 | 88.2 | 11.8 | 0.0 | 0.0 | 100.0 | 1.9 |
| 정부기관 | (9) | 44.4 | 55.6 | 100.0 | 0.0 | 0.0 | 0.0 | 100.0 | 1.6 |
| 연구원 | (30) | 40.0 | 53.3 | 93.3 | 6.7 | 0.0 | 0.0 | 100.0 | 1.7 |
| 대학강사 | (11) | 18.2 | 63.6 | 81.8 | 0.0 | 18.2 | 18.2 | 100.0 | 2.2 |
| 석박사 <br> 과정 | (16) | 12.5 | 62.5 | 75.0 | 25.0 | 0.0 | 0.0 | 100.0 | 2.1 |

## [표 7] 기타 교육법의 문제점

[문2-1] 앞에 질문에서 제시하지 못한 교육법의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 Base=전체 | $\%$ |
| :--- | :---: |
| 각종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법제의 적합성 문제와 실무부서에 <br> 서의 적용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 5.4 |
|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하시 대학의 인센티브(세제 및 재정지 <br> 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함 | 5.4 |
| 교육개정안의 수시 개정과 번복되는 내용들 | 5.4 |
| 교육관련법령간의 연계 부족 | 5.4 |
| 교육법령 상호간 통일성 및 유사중복 문제 | 5.4 |
| 교육법체계 및 담당기관간의 연계성 문제 | 5.4 |
| 특별법이 너무 많아서 법 간의 적용 충돌문제가 발생 | 2.7 |
| 평준화 교육을 지향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특성화/ <br> 특목고 등에 의한 쭉쟁이 평준화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 <br> 현실처럼 법 현실은 일반인을 기만하고 있음 | 2.7 |
| 국가 법령의 지나친 간섭 | 기본 교육체계 중심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분야별 각 학교 유 |
| 형별 법들이 세분화 되어 있음(교육 기본법이 그 중심의 역할 |  |
| 을 하지 못함) | 5.4 |
| 위임 사항의 불분명/부령과 규칙 및 조례에서 그 수임 법률을 <br>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음 | 5.4 |
| 법률간 지원책 등의 형평성 문제 | 5.7 |
| 조문의 사문화 | 5.4 |


| Base=전체 | $\%$ |
| :--- | :---: |
| 실질적 규범력이 거의 없는 선언적 조항의 남발 | 5.4 |
| 육아 관련 교육법의 체계 정비의 필요성 | 5.4 |
| 의원입법에 의해 법률이 개정된 후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에는 <br> 법률의 의도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만들 <br> 어지는 경우가 많음 | 5.4 |
| 중요한 정보가 교과부의 지침이나 훈령에 위임없이 규정되는 |  |
| 경우가 많음 | 5.4 |
| 교원과 관련한 법령의 경우 대부분 정보가 별표에 들어가 있 <br> 는데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이 대부부분임 | 5.4 |
| 정부에서 실행하는 교육제도 돤련 내용들이 법률적 근거 없이 |  |
| 행정청의 부령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체계상 법률 유보나 위임 |  |
| 입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 | 5.4 |
| 자치도의 경우 감사원, 평가권 등의 권한 중복 문제 | 5.4 |
| 통합법(혹은 기본법, 상윕ㅂㅂ)의 부재 | 5.4 |
| 특별법의 형식이 많아 우선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순서 파악 | 5.4 |
| 이 어려움 |  |

[표 8] 교육기본법 정비를 위한 교육기본계획에 대한 규정 추가에

## 대한 태도

[문3] "교육기본법을 정비하기 위해서 교육기본계획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동의 <br> 하지 <br> 않는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동의 <br> 한다 | 매우 <br> 동의 <br> 한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9.0 | 9.0 | 21.0 | 55.0 | 15.0 | 70.0 | 100.0 | 3.8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9.2 | 9.2 | 22.4 | 56.6 | 11.8 | 68.4 | 100.0 | 3.7 |
| 교 육 | (24) | 8.3 | 8.3 | 16.7 | 50.0 | 25.0 | 75.0 | 100.0 | 3.9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11.8 | 11.8 | 20.6 | 58.8 | 8.8 | 67.6 | 100.0 | 3.6 |
| 정부기관 | (9) | 0.0 | 0.0 | 44.4 | 55.6 | 0.0 | 55.6 | 100.0 | 3.6 |
| 연구원 | (30) | 16.7 | 16.7 | 13.3 | 43.3 | 26.7 | 70.0 | 100.0 | 3.8 |
| 대학강사 | (11) | 0.0 | 0.0 | 36.4 | 63.6 | 0.0 | 63.6 | 100.0 | 3.6 |
| 석박사 과정 | (16) | 0.0 | 0.0 | 12.5 | 62.5 | 25.0 | 87.5 | 100.0 | 4.1 |

[표 9] 교육기본법 정비를 위한 관련법령 통합 정비 방안에 대한 태도
[문4] "교육기본법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적합 하지 아니한 규정들(ex: 교육의 정보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등)을 관련 법령으로 통합하여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전혀 <br> 동의 <br> 하지 <br> 않는다 | $\begin{gathered} \text { 동의 } \\ \text { 하지 } \\ \text { 않는다 } \end{gathered}$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동의 <br> 한다 | 매우 <br> 동의 <br> 한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1.0 | 11.0 | 12.0 | 11.0 | 70.0 | 7.0 | 77.0 | 100.0 | 3.7 |
| 전문분야 |  |  |  |  |  |  |  |  |  |  |
| 법 학 | (76) | 1.3 | 9.2 | 10.5 | 11.8 | 71.1 | 6.6 | 77.6 | 100.0 | 3.7 |
| 교 육 | (24) | 0.0 | 16.7 | 16.7 | 8.3 | 66.7 | 8.3 | 75.0 | 100.0 | 3.7 |
| 소 속 |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2.9 | 11.8 | 14.7 | 5.9 | 76.5 | 2.9 | 79.4 | 100.0 | 3.6 |
| 정부기관 | (9) | 0.0 | 0.0 | 0.0 | 22.2 | 77.8 | 0.0 | 77.8 | 100.0 | 3.8 |
| 연구원 | (30) | 0.0 | 16.7 | 16.7 | 10.0 | 60.0 | 13.3 | 73.3 | 100.0 | 3.7 |
| 대학강사 | (11) | 0.0 | 0.0 | 0.0 | 18.2 | 81.8 | 0.0 | 81.8 | 100.0 | 3.8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12.5 | 12.5 | 12.5 | 62.5 | 12.5 | 75.0 | 100.0 | 3.8 |

## [표 10] 교육기본법의 정비에 대한 의견

[문5] 교육기본법의 정비에 관련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단위 : \%)

| Base=전체 | $\%$ |
| :--- | :---: |
| 개인 정보 보호 7.4 <br> 학교의 자율권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7.4 <br> 교육 관련 개별 법률의 근거 규정으로마 머물러 있는 한계 <br> 를 극복하고 각 개별 법률의 이념과 기본방향을 통합적으로 <br> 규정하는 법률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7.4 <br> 교육개혁의 기본적 방법과 절차 및 재정지원에 관한 <br> 이 파항 <br> 교육기본법에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평가의 문제뿐만이 <br> 아니라 선발의 문제도 담아야 함 <br> 교육 기본법은 교육의 큰 틀을 열거하는 정도로 충분함 <br> 교육 기본법의 교육관계법 체제 전반에 있어서 우선적 적용 <br> 을 명시함 <br> 기본 방향의 구체화 규정이 필요함 7.4 <br> 기본법 성격에 부함하도록 잘 정비해야 함 7.4 <br>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의 입법체 <br> 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7.4 <br> 타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14.8 <br> 기본법에 강제성을 띠면 일반법으로서의 성향이 강화됨 7.4 <br> 기본법은 최상위개념을 중심으로 대강을 설정하고 각급 교육 <br> 청에 의한 교육자치에 합당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중간 도구 <br> 개념으로 형성될 수 있는 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3.77.4 |  |

[표 11] 특별법/특례법 중 법률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한시적으로

##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태도

[문6] "특별법/특례법 중 현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폐지하는 한시법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동의 } \\ \text { 하지 } \\ \text { 않는다 } \end{gathered}$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동의 <br> 한다 | 매우 <br> 동의 <br> 한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15.0 | 15.0 | 4.0 | 63.0 | 18.0 | 81.0 | 100.0 | 3.8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14.5 | 14.5 | 2.6 | 64.5 | 18.4 | 82.9 | 100.0 | 3.9 |
| 교 육 | (24) | 16.7 | 16.7 | 8.3 | 58.3 | 16.7 | 75.0 | 100.0 | 3.8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14.7 | 14.7 | 2.9 | 73.5 | 8.8 | 82.4 | 100.0 | 3.8 |
| 정부기관 | (9) | 0.0 | 0.0 | 0.0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0.0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100.0 | 4.0 |
| 연구원 | (30) | 13.3 | 13.3 | 0.0 | 43.3 | 43.3 | 86.7 | 100.0 | 4.2 |
| 대학강사 | (11) | 18.2 | 18.2 | 9.1 | 72.7 | 0.0 | 72.7 | 100.0 | 3.5 |
| 석박사 <br> 과정 | (16) | 25.0 | 25.0 | 12.5 | 50.0 | 12.5 | 62.5 | 100.0 | 3.5 |

[표 12] 시혜적/은사적 특별법/특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책에 대한 필요성
[문7] "시혜적/은사적 특별법/특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입법영향분 석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필요 } \\ & \text { 없다 } \end{aligned}$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필요 } \\ & \text { 하다 } \end{aligned}$ | 매우 <br> 필요 <br> 하다 | (4) + (5) | 계 | 평균 |
| 전 체 | (100) | 2.0 | 2.0 | 7.0 | 56.0 | 35.0 | 91.0 | 100.0 | 4.2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2.6 | 2.6 | 1.3 | 60.5 | 35.5 | 96.1 | 100.0 | 4.3 |
| 교 육 | (24) | 0.0 | 0.0 | 25.0 | 41.7 | 33.3 | 75.0 | 100.0 | 4.1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5.9 | 0.0 | 67.6 | 26.5 | 94.1 | 100.0 | 4.1 |
| 정부기관 | (9) | 0.0 | 0.0 | 0.0 | 33.3 | 66.7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100.0 | 4.7 |
| 연구원 | (30) | 0.0 | 0.0 | 10.0 | 50.0 | 40.0 | 90.0 | 100.0 | 4.3 |
| 대학강사 | (11) | 0.0 | 0.0 | 0.0 | 81.8 | 18.2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100.0 | 4.2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0.0 | 25.0 | 37.5 | 37.5 | 75.0 | 100.0 | 4.1 |

## [표 13] 특별법/특례법 정비를 위해 시급한 정비 내용

[문8] 위의 교육 관련 특별법•특례법령 입법체계 정비 방안 이외에 같은 분야에서 시급하게 정비할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단위 : \%)

|  | Base=전체 |
| :--- | :---: |
|  | $\%$ |
| 교육 관련 기본계획, 관련된 특별법사 규정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br> 않고 지원이 조성에 대한 특례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0.5 |
|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10.5 |
| 모순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아감 | 5.3 |
| 불가피한 예외가 아니라 특혜성 예외를 규정하는 특례를 규제함 | 10.5 |
| 실질적 전수조사가 필요함 | 10.5 |
| 위임없이 만들어 지는 하위법령을 줄이거나 없앰 | 10.5 |
| 등록금 인상제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평가를 통해 <br>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학등록금 인상제한률이 나와야 함 | 10.5 |
| 대학 기능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등에 대한 특례 <br> 법 도입이 필요함 | 10.5 |
| 대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면세 혜택/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br> 부여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함 | 10.5 |
| 대학이 일반 사업체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 ㅂ완할 필요가 <br> 있음 | 10.5 |
| 교육 현실에 바로 적용 가능한 각종 기준을 재정립(장애학생 및 <br> 소수자를 위한 시설 마련 등) | 10.5 |

[표 14]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태도
[문9]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이 현재 실효성이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보통 <br> 이다 | 동의 <br> 한다 | 매우 동의한다 | (4)+(5) | 계 | 평균 |
| 전 체 | (100) | 12.0 | 59.0 | 29.0 | 88.0 | 100.0 | 4.2 |
| 전문분야 |  |  |  |  |  |  |  |
| 법 학 | (76) | 10.5 | 53.9 | 35.5 | 89.5 | 100.0 | 4.3 |
| 교 육 | (24) | 16.7 | 75.0 | 8.3 | 83.3 | 100.0 | 3.9 |
| 소 속 |  |  |  |  |  |  |  |
| 대학교수 | (34) | 23.5 | 61.8 | 14.7 | 76.5 | 100.0 | 3.9 |
| 정부기관 | (9) | 22.2 | 55.6 | 22.2 | 77.8 | 100.0 | 4.0 |
| 연구원 | (30) | 0.0 | 60.0 | 40.0 | 100.0 | 100.0 | 4.4 |
| 대학강사 | (11) | 0.0 | 45.5 | 54.5 | 100.0 | 100.0 | 4.5 |
| 석박사 과정 | (16) | 12.5 | 62.5 | 25.0 | 87.5 | 100.0 | 4.1 |

[표 15] 교육 관련 지원/진흥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태도
[문10] 교육 관련 지원/진흥의 기준을 교육기본법에 세부적으로 규 정하여 법률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동의 <br> 하지 <br> 않는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동의 <br> 한다 | 매우 <br> 동의 <br> 한다 | (4)+(5) | 계 | 평균 |
| 전 체 | (100) | 19.0 | 19.0 | 16.0 | 57.0 | 8.0 | 65.0 | 100.0 | 3.5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19.7 | 19.7 | 13.2 | 59.2 | 7.9 | 67.1 | 100.0 | 3.6 |
| 교 육 | (24) | 16.7 | 16.7 | 25.0 | 50.0 | 8.3 | 58.3 | 100.0 | 3.5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14.7 | 14.7 | 29.4 | 55.9 | 0.0 | 55.9 | 100.0 | 3.4 |
| 정부기관 | (9) | 44.4 | 44.4 | 0.0 | 55.6 | 0.0 | 55.6 | 100.0 | 3.1 |
| 연구원 | (30) | 26.7 | 26.7 | 13.3 | 53.3 | 6.7 | 60.0 | 100.0 | 3.4 |
| 대학강사 | (11) | 18.2 | 18.2 | 0.0 | 63.6 | 18.2 | 81.8 | 100.0 | 3.8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0.0 | 12.5 | 62.5 | 25.0 | 87.5 | 100.0 | 4.1 |

[표 16] 교육 관련 지원/진흥의 기준을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 는 것에 대한 태도
[문11] 교육 관련 지원/진흥의 기준을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여 법률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동의 <br> 하지 <br> 않는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동의 <br> 한다 | 매우 <br> 동의 <br> 한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9.0 | 9.0 | 20.0 | 63.0 | 8.0 | 71.0 | 100.0 | 3.7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9.2 | 9.2 | 21.1 | 59.2 | 10.5 | 69.7 | 100.0 | 3.7 |
| 교 육 | (24) | 8.3 | 8.3 | 16.7 | 75.0 | 0.0 | 75.0 | 100.0 | 3.7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5.9 | 35.3 | 58.8 | 0.0 | 58.8 | 100.0 | 3.5 |
| 정부기관 | (9) | 22.2 | 22.2 | 0.0 | 77.8 | 0.0 | 77.8 | 100.0 | 3.6 |
| 연구원 | (30) | 10.0 | 10.0 | 6.7 | 56.7 | 26.7 | 83.3 | 100.0 | 4.0 |
| 대학강사 | (11) | 0.0 | 0.0 | 36.4 | 63.6 | 0.0 | 63.6 | 100.0 | 3.6 |
| 석박사 <br> 과정 | (16) | 12.5 | 12.5 | 12.5 | 75.0 | 0.0 | 75.0 | 100.0 | 3.6 |

## [표 17]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필요방안

[문12] 이러한 방안 이외에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를 위 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Base=전체 | \% |
| :---: | :---: |
| 개별법에 의한 관련 법률의 통합 | 8.7 |
| 교육 진흥에서 참교육의 의미와 교육 현실을 반영 | 8.7 |
| 교육 활동의 공공서에 비추어 환경부담금 등 제반 부담금과 부 가세 면세 등을 부여하는 법률의 재정이 필요 | 8.7 |
| 구체적인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화 | 8.7 |
| 지역 내 주민 평생교육과 연관시켜 학생과 주민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대안문화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원 법령의 필요 | 8.7 |
| 다문화/탈북자 관련 교육 진흥 지원이 필요 | 8.7 |
| 법률 제/개정 시 실무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 | 8.7 |
| 자금 지원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8.7 |
| 큰 범위에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 후 자치교육행정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의 평가를 거쳐 후견자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 | 4.3 |
| 학교생활 중 급식, 교실, 활동 등을 조성하는 지원법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8.7 |
| 각 특별법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교육 기본법에 정하고 특별법에 서는 그 부분을 인용하던지 확인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함 | 8.7 |
|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진흥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수준의 지원 책이 담긴 규정이 필요함 | 8.7 |

## [표 18] 기관설치 근거 법률 정비에 대한 태도

[문 13] 교육 관계 법령 중 "자율성을 갖는 협의회 관련 사항을 별 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단위: \%)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동의 <br> 하지 않는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동의 } \\ & \text { 한다 } \end{aligned}$ | 매우 <br> 동의 <br> 한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4.0 | 4.0 | 36.0 | 56.0 | 4.0 | 60.0 | 100.0 | 3.6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5.3 | 5.3 | 36.8 | 57.9 | 0.0 | 57.9 | 100.0 | 3.5 |
| 교 육 | (24) | 0.0 | 0.0 | 33.3 | 50.0 | 16.7 | 66.7 | 100.0 | 3.8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5.9 | 38.2 | 50.0 | 5.9 | 55.9 | 100.0 | 3.6 |
| 정부기관 | (9) | 0.0 | 0.0 | 22.2 | 77.8 | 0.0 | 77.8 | 100.0 | 3.8 |
| 연구원 | (30) | 6.7 | 6.7 | 43.3 | 50.0 | 0.0 | 50.0 | 100.0 | 3.4 |
| 대학강사 | (11) | 0.0 | 0.0 | 18.2 | 81.8 | 0.0 | 81.8 | 100.0 | 3.8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0.0 | 37.5 | 50.0 | 12.5 | 62.5 | 100.0 | 3.8 |

[표 19]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국립학교의 공공성과 연계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한 태도
[문 14]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국립학교의 공공성과 연계하 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전혀 <br> 동의 <br> 하지 <br> 않는다 | 동의 <br> 하지 <br> 않는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동의 <br> 한다 | 매우 <br> 동의 <br> 한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4.0 | 13.0 | 17.0 | $\begin{gathered} 28 . \\ 0 \end{gathered}$ | $\begin{gathered} 47 . \\ 0 \end{gathered}$ | 8.0 | 55.0 | 100.0 | 3.4 |
| 전문분야 |  |  |  |  |  |  |  |  |  |  |
| 법 학 | (76) | 0.0 | 11.8 | 11.8 | $\begin{gathered} 31 . \\ 6 \end{gathered}$ | $\begin{gathered} 48 . \\ 7 \end{gathered}$ | 7.9 | 56.6 | 100.0 | 3.5 |
|  |  | 16.7 | 16.7 | 33.3 | $\begin{gathered} 16 . \\ 7 \end{gathered}$ | $\begin{gathered} 41 . \\ 7 \end{gathered}$ | 8.3 | 50.0 | 100.0 | 3.1 |
| 소 속 |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0.0 | 8.8 | 8.8 | $\begin{gathered} 32 . \\ 4 \end{gathered}$ | $\begin{gathered} 52 . \\ 9 \end{gathered}$ | 5.9 | 58.8 | 100.0 | 3.6 |
| 정부기관 | (9) | 0.0 | 11.1 | 11.1 | $44 .$ $4$ | $44 .$ $4$ | 0.0 | 44.4 | 100.0 | 3.3 |
| 연구원 | (30) | 0.0 | 3.3 | 3.3 | $\begin{gathered} 36 . \\ 7 \end{gathered}$ | $\begin{gathered} 40 . \\ 0 \end{gathered}$ | $\begin{gathered} 20 . \\ 0 \end{gathered}$ | 60.0 | 100.0 | 3.8 |
| 대학강사 | (11) | 0.0 | 0.0 | 0.0 | 0.0 | $\begin{gathered} 10 \\ 0.0 \end{gathered}$ | 0.0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100.0 | 4.0 |
| 석박사 과정 | (16) | 25.0 | 50.0 | 75.0 | $\begin{gathered} 12 . \\ 5 \end{gathered}$ | $\begin{gathered} 12 . \\ 5 \end{gathered}$ | 0.0 | 12.5 | 100.0 | 2.1 |

[표 20] 교육 관련 기관 설치 근거 법률 정비를 위한 필요방안
[문 15] 이러한 방안 이외에 "교육 관련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정 비"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Base=전체 |  |
| :--- | :---: |
| $\%$ |  |
| 보수화되고 관료화된 교육기관의 현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라 <br> 도 교육위원회 등 자치기관은 반드시 필요함 | 11.8 |
| 설치법령의 단일법전화 | 11.8 |
| 공통된 사항들의 통일적 제정이 필요함 | 11.8 |
| 일정한 주기마다 전면개정방식을 통해 근거가 되는 법률이 너 | 11.8 |
| 무 난잡하게 부분 개정되는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
| 입법영향분석 등과 같은 학제간 관점의 실증적 평가도구의 활용 | 11.8 |
| 통합된 운영체계 |  |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경쟁체계 구축이 필요함 | 11.8 |
| 학교생활과 학습권, 교육권 등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  |
| 기관의 설치와 동시에 이들을 공개/투명화하여 자율과 책임을 |  |
| 강화함 | 11.8 |
| 국공립이나 사립 또는 정치적 중립성 여부 등이 기준이 되어서 |  |
| 는 안되며,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 |  |
| 치구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법정 의무교육의 범위 등과의 |  |
|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함 | 5.9 |

[표 21]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관련 법률의 정비방안에 대한 태도
[문 16] "법률에 명시적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개정시 위임근거 마 련 혹은 폐지를 검토하는 정비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동의 <br> 하지 <br> 않는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동의 <br> 한다 | 매우 <br> 동의 <br> 한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2.0 | 2.0 | 7.0 | 54.0 | 37.0 | 91.0 | 100.0 | 4.3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2.6 | 2.6 | 6.6 | 52.6 | 38.2 | 90.8 | 100.0 | 4.3 |
| 교 육 | (24) | 0.0 | 0.0 | 8.3 | 58.3 | 33.3 | 91.7 | 100.0 | 4.3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0.0 | 0.0 | 2.9 | 76.5 | 20.6 | 97.1 | 100.0 | 4.2 |
| 정부기관 | (9) | 0.0 | 0.0 | 0.0 | 55.6 | 44.4 | 100.0 | 100.0 | 4.4 |
| 연구원 | (30) | 0.0 | 0.0 | 6.7 | 40.0 | 53.3 | 93.3 | 100.0 | 4.5 |
| 대학강사 | (11) | 0.0 | 0.0 | 18.2 | 45.5 | 36.4 | 81.8 | 100.0 | 4.2 |
| 석박사 <br> 과정 | (16) | 12.5 | 12.5 | 12.5 | 37.5 | 37.5 | 75.0 | 100.0 | 4.0 |

[표 22]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사항에

## 반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문 17]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사항에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필요 } \\ & \text { 없다 } \end{aligned}$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필요 <br> 하다 | 매우 <br> 필요 <br> 하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2.0 | 2.0 | 5.0 | 57.0 | 36.0 | 93.0 | 100.0 | 4.3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0.0 | 0.0 | 6.6 | 53.9 | 39.5 | 93.4 | 100.0 | 4.3 |
| 교 육 | (24) | 8.3 | 8.3 | 0.0 | 66.7 | 25.0 | 91.7 | 100.0 | 4.1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0.0 | 0.0 | 8.8 | 67.6 | 23.5 | 91.2 | 100.0 | 4.1 |
| 정부기관 | (9) | 0.0 | 0.0 | 0.0 | 55.6 | 44.4 | 100.0 | 100.0 | 4.4 |
| 연구원 | (30) | 0.0 | 0.0 | 6.7 | 46.7 | 46.7 | 93.3 | 100.0 | 4.4 |
| 대학강사 | (11) | 0.0 | 0.0 | 0.0 | 45.5 | 54.5 | 100.0 | 100.0 | 4.5 |
| 석박사 <br> 과정 | (16) | 12.5 | 12.5 | 0.0 | 62.5 | 25.0 | 87.5 | 100.0 | 4.0 |

[표 23]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개정 하는 것에 대한 태도
[문 18]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동의 <br> 하지 <br> 않는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동의 <br> 한다 | 매우 <br> 동의 <br> 한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1.0 | 1.0 | 3.0 | 64.0 | 32.0 | 96.0 | 100.0 | 4.3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1.3 | 1.3 | 3.9 | 57.9 | 36.8 | 94.7 | 100.0 | 4.3 |
| 교 육 | (24) | 0.0 | 0.0 | 0.0 | 83.3 | 16.7 | 100.0 | 100.0 | 4.2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2.9 | 2.9 | 2.9 | 76.5 | 17.6 | 94.1 | 100.0 | 4.1 |
| 정부기관 | (9) | 0.0 | 0.0 | 0.0 | 55.6 | 44.4 | 100.0 | 100.0 | 4.4 |
| 연구원 | (30) | 0.0 | 0.0 | 6.7 | 53.3 | 40.0 | 93.3 | 100.0 | 4.3 |
| 대학강사 | (11) | 0.0 | 0.0 | 0.0 | 63.6 | 36.4 | 100.0 | 100.0 | 4.4 |
| 석박사 과정 | (16) | 0.0 | 0.0 | 0.0 | 62.5 | 37.5 | 100.0 | 100.0 | 4.4 |

## [표 24] 교육 관계 법령의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 필요한 방안

[문 19] 이러한 방안 이외에 "교육 관계 법령의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 는지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Base=전체 |  |
| :--- | :---: |
| $\%$ |  |
|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나 조례로 <br> 위임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함 | 8.0 |
| 교육자치를 전제로 자치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은 <br> 복잡하게 정하지 않고 대령이나 부령에 의한 간섭은 가급적 배제 | 4.0 |
| 교육자치와 포괄적 위임에 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함 | 8.0 |
| 교육자치제도 정신에 맞추어 가급적 시도 조례로 위임함 | 8.0 |
|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를 의무화함 | 8.0 |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자체 자치법규 간의 충돌을 방지하 <br> 기 위한 위임의 명확화가 필요함 | 8.0 |
| 법률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 <br> 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필요가 매 <br> 우 있음 | 8.0 |
| 위임 규정 정비시 궁극적 목표인 학교자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 <br> 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마련인지 관련 교육 당 | 8.0 |
| 사자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 |  |


| $\mathrm{Base=}$ 전체 | $\%$ |
| :--- | :---: |
| 입법평가를 통한 개정 또는 폐지 결정이 필요함 | 8.0 |
| 전문가 조사 및 이해관계인들의 수범자 의견조사가 필요함 | 8.0 |
|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명령보다 대부분 사항을 시도 <br> 조례에 위임해야 함 | 8.0 |

## [표 25] [세부규정 정비방안] 1.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1항

[문20-1] (1) 해당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1 항 : 학교는 교 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정비방안 -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교육 과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률로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세부 적인 운영 및 실시의 기준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명시.
(단위 :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타당 <br> 하지 <br> 않다 | (1)+(2) | 그저 | $\begin{aligned} & \text { 타당 } \\ & \text { 하다 } \end{aligned}$ | 매우 <br> 타당 <br> 하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5.0 | 5.0 | 5.0 | 70.0 | 20.0 | 90.0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4.1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학 | (76) | 3.9 | 3.9 | 3.9 | 71.1 | 21.1 | 92.1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4.1 |
|  |  | 8.3 | 8.3 | 8.3 | 66.7 | 16.7 | 83.3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3.9 |
| 소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5.9 | 8.8 | 73.5 | 11.8 | 85.3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3.9 |
| 정부기관 | (9) | 0.0 | 0.0 | 0.0 | 77.8 | 22.2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begin{gathered} 100 \\ 0 \end{gathered}$ | 4.2 |
| 연구원 | (30) | 0.0 | 0.0 | 6.7 | 66.7 | 26.7 | 93.3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4.2 |
| 대학강사 | (11) | 27.3 | 27.3 | 0.0 | 54.5 | 18.2 | 72.7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3.6 |
| 석박사과정 | (16) | 0.0 | 0.0 | 0.0 | 75.0 | 25.0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4.3 |

[표 26] [세부규정 정비방안] 2. 초 • 중등 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 라 설치된 교육과정심의회 관련 법률
[문 20-2] (2) 해당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정심의회'의 경우 학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며 별도로 교육과정심의회를 둔다는 위임규정이 아님. 정비방안 - 교 과과정을 정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서 갖추도록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 는 것이 바람직함.
(단위 : \%)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타당 <br> 하지 <br> 않다 | (1)+(2) | 그저 | 타당 <br> 하다 | 매우 <br> 타당 <br> 하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3.0 | 3.0 | 8.0 | 73.0 | 16.0 | 89.0 | 100.0 | 4.0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1.3 | 1.3 | 5.3 | 75.0 | 18.4 | 93.4 | 100.0 | 4.1 |
| 교 육 | (24) | 8.3 | 8.3 | 16.7 | 66.7 | 8.3 | 75.0 | 100.0 | 3.8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5.9 | 8.8 | 73.5 | 11.8 | 85.3 | 100.0 | 3.9 |
| 정부기관 | (9) | 0.0 | 0.0 | 0.0 | 77.8 | 22.2 | $\begin{gathered} 100 . \\ 0 \end{gathered}$ | 100.0 | 4.2 |
| 연구원 | (30) | 0.0 | 0.0 | 10.0 | 83.3 | 6.7 | 90.0 | 100.0 | 4.0 |
| 대학강사 | (11) | 9.1 | 9.1 | 0.0 | 54.5 | 36.4 | 90.9 | 100.0 | 4.2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0.0 | 12.5 | 62.5 | 25.0 | 87.5 | 100.0 | 4.1 |

[표 27] [세부규정 정비방안] 3. 고등교육법 제 5 조 학교의 지도•감독

##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8 조

[문 20-3] (3) 해당 법령 • 고등교육법 제 5 조 학교의 지도•감독에 필 요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8 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 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비방안 -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자료제 출 규정으로 법 개정시 지도•감독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타당 <br> 하지 <br> 않다 | (1)+(2) | $\begin{gathered} \text { 그저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타당 } \\ & \text { 하다 } \end{aligned}$ | 매우 <br> 타당 <br> 하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6.0 | 6.0 | 11.0 | 69.0 | 14.0 | 83.0 | 100.0 | 3.9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5.3 | 5.3 | 9.2 | 69.7 | 15.8 | 85.5 | 100.0 | 4.0 |
| 교 육 | (24) | 8.3 | 8.3 | 16.7 | 66.7 | 8.3 | 75.0 | 100.0 | 3.8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11.8 | 11.8 | 14.7 | 61.8 | 11.8 | 73.5 | 100.0 | 3.7 |
| 정부기관 | (9) | 0.0 | 0.0 | 22.2 | 55.6 | 22.2 | 77.8 | 100.0 | 4.0 |
| 연구원 | (30) | 3.3 | 3.3 | 0.0 | 90.0 | 6.7 | 96.7 | 100.0 | 4.0 |
| 대학강사 | (11) | 9.1 | 9.1 | 0.0 | 72.7 | 18.2 | 90.9 | 100.0 | 4.0 |
| 석박사 과정 | (16) | 0.0 | 0.0 | 25.0 | 50.0 | 25.0 | 75.0 | 100.0 | 4.0 |

[표 28] [세부규정 정비방안] 4. 고등교육법 시행령 52조 박사학위 등 수여 취소 관련 법률
[문 20-4] (4) 해당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는 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정비방안 - 학위취소는 학위보 유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항을 주므로 모법의 위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타당 <br> 하지 <br> 않다 | (1)+(2) | 그저 | $\begin{aligned} & \text { 타당 } \\ & \text { 하다 } \end{aligned}$ | 매우 <br> 타당 <br> 하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3.0 | 3.0 | 5.0 | 71.0 | 21.0 | 92.0 | 100.0 | 4.1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3.9 | 3.9 | 6.6 | 67.1 | 22.4 | 89.5 | 100.0 | 4.1 |
| 교 육 | (24) | 0.0 | 0.0 | 0.0 | 83.3 | 16.7 | 100.0 | 100.0 | 4.2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5.9 | 2.9 | 76.5 | 14.7 | 91.2 | 100.0 | 4.0 |
| 정부기관 | (9) | 0.0 | 0.0 | 22.2 | 55.6 | 22.2 | 77.8 | 100.0 | 4.0 |
| 연구원 | (30) | 0.0 | 0.0 | 6.7 | 80.0 | 13.3 | 93.3 | 100.0 | 4.1 |
| 대학강사 | (11) | 9.1 | 9.1 | 0.0 | 54.5 | 36.4 | 90.9 | 100.0 | 4.2 |
| 석박사 과정 | (16) | 0.0 | 0.0 | 0.0 | 62.5 | 37.5 | 100.0 | 100.0 | 4.4 |

[표 29]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1. 교육기본법
[문 21-1] (1) 교육기본법 - 다음의 현행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단위: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문제가 } \\ \text { 있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문제가 } \\ & \text { 있다 } \end{aligned}$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문제가 } \\ & \text { 없다 } \end{aligned}$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6.0 | 61.0 | 67.0 | 31.0 | 2.0 | 2.0 | 100.0 | 2.3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5.3 | 61.8 | 67.1 | 32.9 | 0.0 | 0.0 | 100.0 | 2.3 |
| 교 육 | (24) | 8.3 | 58.3 | 66.7 | 25.0 | 8.3 | 8.3 | 100.0 | 2.3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11.8 | 50.0 | 61.8 | 32.4 | 5.9 | 5.9 | 100.0 | 2.3 |
| 정부기관 | (9) | 0.0 | 55.6 | 55.6 | 44.4 | 0.0 | 0.0 | 100.0 | 2.4 |
| 연구원 | (30) | 6.7 | 73.3 | 80.0 | 20.0 | 0.0 | 0.0 | 100.0 | 2.1 |
| 대학강사 | (11) | 0.0 | 45.5 | 45.5 | 54.5 | 0.0 | 0.0 | 100.0 | 2.5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75.0 | 75.0 | 25.0 | 0.0 | 0.0 | 100.0 | 2.3 |

[표 30]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2. 교육조직 관련 법령
[문21-2] (2) 교육조직관련 법령 - 다음의 현행 교육관계 법령 분야 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 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단위 :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 $\begin{aligned} & \text { 문제가 } \\ & \text { 있다 } \end{aligned}$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10.0 | 62.0 | 72.0 | 28.0 | 100.0 | 2.2 |
| 전문분야 |  |  |  |  |  |  |  |
| 법 학 | (76) | 7.9 | 60.5 | 68.4 | 31.6 | 100.0 | 2.2 |
| 교 육 | (24) | 16.7 | 66.7 | 83.3 | 16.7 | 100.0 | 2.0 |
| 소 속 |  |  |  |  |  |  |  |
| 대학교수 | (34) | 11.8 | 61.8 | 73.5 | 26.5 | 100.0 | 2.1 |
| 정부기관 | (9) | 0.0 | 77.8 | 77.8 | 22.2 | 100.0 | 2.2 |
| 연구원 | (30) | 13.3 | 50.0 | 63.3 | 36.7 | 100.0 | 2.2 |
| 대학강사 | (11) | 0.0 | 81.8 | 81.8 | 18.2 | 100.0 | 2.2 |
| 석박사 <br> 과정 | (16) | 12.5 | 62.5 | 75.0 | 25.0 | 100.0 | 2.1 |

[표 31]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3. 학교 교

## 육관련 법령

[문21-3] (3) 학교 교육관련 법령 - 다음의 현행 교육관계 법령 분야 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 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문제가 } \\ \text { 있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문제가 } \\ & \text { 있다 } \end{aligned}$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문제가 } \\ & \text { 없다 } \end{aligned}$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16.0 | 60.0 | 76.0 | 21.0 | 3.0 | 3.0 | 100.0 | 2.1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21.1 | 52.6 | 73.7 | 22.4 | 3.9 | 3.9 | 100.0 | 2.1 |
| 교 육 | (24) | 0.0 | 83.3 | 83.3 | 16.7 | 0.0 | 0.0 | 100.0 | 2.2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11.8 | 61.8 | 73.5 | 26.5 | 0.0 | 0.0 | 100.0 | 2.1 |
| 정부기관 | (9) | 44.4 | 33.3 | 77.8 | 22.2 | 0.0 | 0.0 | 100.0 | 1.8 |
| 연구원 | (30) | 26.7 | 56.7 | 83.3 | 13.3 | 3.3 | 3.3 | 100.0 | 1.9 |
| 대학강사 | (11) | 0.0 | 63.6 | 63.6 | 36.4 | 0.0 | 0.0 | 100.0 | 2.4 |
| 석박사 과정 | (16) | 0.0 | 75.0 | 75.0 | 12.5 | 12.5 | 12.5 | 100.0 | 2.4 |

[표 32]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4. 학력 인정 관련 법령
[문 21-4] (4) 학력 인정 관련 법령 - 다음의 현행 교육관계 법령 분 야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점 척도로 응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 문제가 <br> 있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문제가 <br> 없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16.0 | 52.0 | 68.0 | 30.0 | 2.0 | 2.0 | 100.0 | 2.2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18.4 | 50.0 | 68.4 | 28.9 | 2.6 | 2.6 | 100.0 | 2.2 |
| 교 육 | (24) | 8.3 | 58.3 | 66.7 | 33.3 | 0.0 | 0.0 | 100.0 | 2.3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17.6 | 58.8 | 76.5 | 23.5 | 0.0 | 0.0 | 100.0 | 2.1 |
| 정부기관 | (9) | 22.2 | 33.3 | 55.6 | 44.4 | 0.0 | 0.0 | 100.0 | 2.2 |
| 연구원 | (30) | 13.3 | 66.7 | 80.0 | 13.3 | 6.7 | 6.7 | 100.0 | 2.1 |
| 대학강사 | (11) | 36.4 | 9.1 | 45.5 | 54.5 | 0.0 | 0.0 | 100.0 | 2.2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50.0 | 50.0 | 50.0 | 0.0 | 0.0 | 100.0 | 2.5 |

[표 33]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5.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문 21-5] (5)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 다음의 현행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 점 척도로 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 문제가 <br> 있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문제가 <br> 없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8.0 | 72.0 | 80.0 | 18.0 | 2.0 | 2.0 | 100.0 | 2.1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10.5 | 71.1 | 81.6 | 15.8 | 2.6 | 2.6 | 100.0 | 2.1 |
| 교 육 | (24) | 0.0 | 75.0 | 75.0 | 25.0 | 0.0 | 0.0 | 100.0 | 2.3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79.4 | 85.3 | 14.7 | 0.0 | 0.0 | 100.0 | 2.1 |
| 정부기관 | (9) | 0.0 | 100.0 | 100.0 | 0.0 | 0.0 | 0.0 | 100.0 | 2.0 |
| 연구원 | (30) | 13.3 | 76.7 | 90.0 | 10.0 | 0.0 | 0.0 | 100.0 | 2.0 |
| 대학강사 | (11) | 18.2 | 45.5 | 63.6 | 36.4 | 0.0 | 0.0 | 100.0 | 2.2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50.0 | 50.0 | 37.5 | 12.5 | 12.5 | 100.0 | 2.6 |

[표 34]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6. 교원 관 련 법령
[문21-6] (6) 교원 관련 법령 - 다음의 현행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 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문제가 } \\ \text { 있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문제가 } \\ & \text { 있다 } \end{aligned}$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문제가 } \\ & \text { 없다 } \end{aligned}$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24.0 | 59.0 | 83.0 | 15.0 | 2.0 | 2.0 | 100.0 | 2.0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26.3 | 56.6 | 82.9 | 14.5 | 2.6 | 2.6 | 100.0 | 1.9 |
| 교 육 | (24) | 16.7 | 66.7 | 83.3 | 16.7 | 0.0 | 0.0 | 100.0 | 2.0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23.5 | 64.7 | 88.2 | 11.8 | 0.0 | 0.0 | 100.0 | 1.9 |
| 정부기관 | (9) | 44.4 | 11.1 | 55.6 | 44.4 | 0.0 | 0.0 | 100.0 | 2.0 |
| 연구원 | (30) | 33.3 | 56.7 | 90.0 | 10.0 | 0.0 | 0.0 | 100.0 | 1.8 |
| 대학강사 | (11) | 18.2 | 45.5 | 63.6 | 36.4 | 0.0 | 0.0 | 100.0 | 2.2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87.5 | 87.5 | 0.0 | 12.5 | 12.5 | 100.0 | 2.3 |

[표 35]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7. 장학관련

## 법령

[문 21-7] (7) 장학관련 법령 - 다음의 현행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 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문제가 } \\ \text { 있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문제가 } \\ & \text { 있다 } \end{aligned}$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문제가 } \\ & \text { 없다 } \end{aligned}$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4.0 | 54.0 | 58.0 | 40.0 | 2.0 | 2.0 | 100.0 | 2.4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2.6 | 57.9 | 60.5 | 36.8 | 2.6 | 2.6 | 100.0 | 2.4 |
| 교 육 | (24) | 8.3 | 41.7 | 50.0 | 50.0 | 0.0 | 0.0 | 100.0 | 2.4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0.0 | 58.8 | 58.8 | 41.2 | 0.0 | 0.0 | 100.0 | 2.4 |
| 정부기관 | (9) | 22.2 | 55.6 | 77.8 | 22.2 | 0.0 | 0.0 | 100.0 | 2.0 |
| 연구원 | (30) | 6.7 | 46.7 | 53.3 | 46.7 | 0.0 | 0.0 | 100.0 | 2.4 |
| 대학강사 | (11) | 0.0 | 45.5 | 45.5 | 54.5 | 0.0 | 0.0 | 100.0 | 2.5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62.5 | 62.5 | 25.0 | 12.5 | 12.5 | 100.0 | 2.5 |

[표 36]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8. 교육 재정

## 관련 법령

[문 21-8] (8) 교육 재정 관련 법령 - 다음의 현행 교육관계 법령 분 야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점 척도로 응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단위: \%)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 문제가 <br> 있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문제가 <br> 없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6.0 | 61.0 | 67.0 | 31.0 | 2.0 | 2.0 | 100.0 | 2.3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7.9 | 56.6 | 64.5 | 32.9 | 2.6 | 2.6 | 100.0 | 2.3 |
| 교 육 | (24) | 0.0 | 75.0 | 75.0 | 25.0 | 0.0 | 0.0 | 100.0 | 2.3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5.9 | 64.7 | 70.6 | 29.4 | 0.0 | 0.0 | 100.0 | 2.2 |
| 정부기관 | (9) | 22.2 | 33.3 | 55.6 | 44.4 | 0.0 | 0.0 | 100.0 | 2.2 |
| 연구원 | (30) | 6.7 | 70.0 | 76.7 | 23.3 | 0.0 | 0.0 | 100.0 | 2.2 |
| 대학강사 | (11) | 0.0 | 45.5 | 45.5 | 54.5 | 0.0 | 0.0 | 100.0 | 2.5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62.5 | 62.5 | 25.0 | 12.5 | 12.5 | 100.0 | 2.5 |

[표 37]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9. 평생교육

## 관련 법령

[문 21-9] (9) 평생교육 관련 법령 - 다음의 현행 교육관계 법령 분 야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점 척도로 응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mathrm{Base}=$ 전체 | 사례수 <br> (명)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 문제가 <br> 있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문제가 <br> 없다 | (4) + (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10.0 | 59.0 | 69.0 | 30.0 | 1.0 | 1.0 | 100.0 | 2.2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7.9 | 56.6 | 64.5 | 34.2 | 1.3 | 1.3 | 100.0 | 2.3 |
| 교 육 | (24) | 16.7 | 66.7 | 83.3 | 16.7 | 0.0 | 0.0 | 100.0 | 2.0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11.8 | 64.7 | 76.5 | 23.5 | 0.0 | 0.0 | 100.0 | 2.1 |
| 정부기관 | (9) | 0.0 | 77.8 | 77.8 | 22.2 | 0.0 | 0.0 | 100.0 | 2.2 |
| 연구원 | (30) | 20.0 | 43.3 | 63.3 | 33.3 | 3.3 | 3.3 | 100.0 | 2.2 |
| 대학강사 | (11) | 0.0 | 27.3 | 27.3 | 72.7 | 0.0 | 0.0 | 100.0 | 2.7 |
| 석박사 <br> 과정 | (16) | 0.0 | 87.5 | 87.5 | 12.5 | 0.0 | 0.0 | 100.0 | 2.1 |

[표 38]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 10. 학교 보

## 건/생활관련 법령

[문 21-10] (10) 학교보건/생활관련 법령 - 다음의 현행 교육관계 법 령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점 척도로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문제가 } \\ \text { 있다 } \end{gathered}$ | 문제가 <br> 있다 | (1)+(2)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문제가 <br> 없다 | (4)+(5) | 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12.0 | 63.0 | 75.0 | 22.0 | 3.0 | 3.0 | 100.0 | 2.2 |
| 전문분야 |  |  |  |  |  |  |  |  |  |
| 법 학 | (76) | 13.2 | 59.2 | 72.4 | 23.7 | 3.9 | 3.9 | 100.0 | 2.2 |
| 교 육 | (24) | 8.3 | 75.0 | 83.3 | 16.7 | 0.0 | 0.0 | 100.0 | 2.1 |
| 소 속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17.6 | 58.8 | 76.5 | 23.5 | 0.0 | 0.0 | 100.0 | 2.1 |
| 정부기관 | (9) | 0.0 | 77.8 | 77.8 | 22.2 | 0.0 | 0.0 | 100.0 | 2.2 |
| 연구원 | (30) | 13.3 | 50.0 | 63.3 | 33.3 | 3.3 | 3.3 | 100.0 | 2.3 |
| 대학강사 | (11) | 18.2 | 45.5 | 63.6 | 18.2 | 18.2 | 18.2 | 100.0 | 2.4 |
| 석박사 과정 | (16) | 0.0 | 100.0 | 100.0 | 0.0 | 0.0 | 0.0 | 100.0 | 2.0 |

## [표 39]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법률 1 순위

[문 22]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시급한 순서대로 3 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Base=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교육 } \\ \text { 기본법 } \end{gathered}$ | 교육 <br> 조직 <br> 관련 <br> 법령 | 학교 <br> 교육 <br> 관련 <br> 법령 | 학력 <br> 인정 <br> 관련 <br> 법령 | 학교의 <br> 설치/ <br> 시설에 <br> 관한 <br> 법령 | 교원 <br> 관련 <br> 법령 | 교육 <br> 재정 <br> 관련 <br> 법령 | 학교 <br> 보건/ <br> 생활 <br> 관련 <br> 법령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45.0 | 8.0 | 15.0 | 4.0 | 10.0 | 10.0 | 2.0 | 6.0 | 100.0 |
| 전문분야 |  |  |  |  |  |  |  |  |  |  |
| 법 학 | (76) | 46.1 | 7.9 | 17.1 | 2.6 | 10.5 | 7.9 | 0.0 | 7.9 | 100.0 |
| 교 육 | (24) | 41.7 | 8.3 | 8.3 | 8.3 | 8.3 | 16.7 | 8.3 | 0.0 | 100.0 |
| 소 속 |  |  |  |  |  |  |  |  |  |  |
| 대학교수 | (34) | 44.1 | 11.8 | 14.7 | 11.8 | 17.6 | 0.0 | 0.0 | 0.0 | 100.0 |
| 정부기관 | (9) | 33.3 | 0.0 | 22.2 | 0.0 | 22.2 | 22.2 | 0.0 | 0.0 | 100.0 |
| 연구원 | (30) | 30.0 | 13.3 | 16.7 | 0.0 | 0.0 | 20.0 | 6.7 | 13.3 | 100.0 |
| 대학강사 | (11) | 54.5 | 0.0 | 27.3 | 0.0 | 18.2 | 0.0 | 0.0 | 0.0 | 100.0 |
| 석박사 과정 | (16) | 75.0 | 0.0 | 0.0 | 0.0 | 0.0 | 12.5 | 0.0 | 12.5 | 100.0 |

[표 40]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법률 $1+2$ 순위
[문 22]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시급한 순서대로 3 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Base $=$ 전체 | 사례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교육 } \\ \text { 기본법 } \end{gathered}$ | 교육 <br> 조직 <br> 관련 <br> 법령 | 학교 <br> 교육 <br> 관련 <br> 법령 | 학력 <br> 인정 <br> 관련 <br> 법령 | 학교 <br> 의 <br> 설치/ <br> 시설 <br> 에 <br> 관한 <br> 법령 | 교원 <br> 관련 <br> 법령 | 장학 <br> 관련 <br> 법령 | 교육 <br> 재정 <br> 관련 <br> 법령 | 평생 <br> 교육 <br> 관련 <br> 법령 | 학교 <br> 보건/ <br> 생활 <br> 관련 <br> 법령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51.0 | 27.0 | 28.0 | 11.0 | 220 | 26.0 | 20 | 15.0 | 6.0 | 120 | 100.0 |
| 전문 <br> 분야 <br> 법 학 <br> 교 육 | (76) <br> (24) | $\begin{aligned} & 51.3 \\ & 50.0 \end{aligned}$ | $\begin{gathered} 30.3 \\ 16.7 \end{gathered}$ | $\begin{array}{\|c} 31.6 \\ 16.7 \end{array}$ | $\begin{aligned} & 9.2 \\ & 16.7 \end{aligned}$ | $\begin{aligned} & 21.1 \\ & 25.0 \end{aligned}$ | $\begin{array}{r} 18.4 \\ 50.0 \\ \hline \end{array}$ | $\begin{aligned} & 2.6 \\ & 0.0 \end{aligned}$ | $\begin{aligned} & 11.8 \\ & 25.0 \\ & \hline \end{aligned}$ | $\begin{aligned} & 7.9 \\ & 0.0 \end{aligned}$ | $\begin{aligned} & 15.8 \\ & 0.0 \end{aligned}$ | $\begin{aligned} & 100.0 \\ & 100.0 \end{aligned}$ |
| 소 속 <br> 대학 <br> 교수 | (34) | 44.1 | 29.4 | 23.5 | 23.5 | 32.4 | 20.6 | 0.0 | 8.8 | 5.9 | 11.8 | 100.0 |
| 정부 <br> 기관 | (9) | 33.3 | 0.0 | 22.2 | 0.0 | 55.6 | 44.4 | 0.0 | 44.4 | 0.0 | 0.0 | 100.0 |
| 연구원 | (30) | 43.3 | 30.0 | 43.3 | 3.3 | 6.7 | 33.3 | 0.0 | 13.3 | 6.7 | 20.0 | 100.0 |
| 대학 <br> 강사 | (11) | 72.7 | 36.4 | 27.3 | 0.0 | 36.4 | 9.1 | 0.0 | 18.2 | 0.0 | 0.0 | 100.0 |
| 석박사 <br> 과정 | (16) | 75.0 | 25.0 | 12.5 | 125 | 0.0 | 25.0 | 125 | 12.5 | 12.5 | 125 | 100.0 |

[표 41]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법률 $1+2+3$ 순위
[문22]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시급한 순서대로 3 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Base <br> = <br> 전체 | 사례 수 <br> (명) | 교육 <br> 기본 <br> 법 | 교육 <br> 조직 <br> 관련 <br> 법령 | 학교 <br> 교육 <br> 관련 <br> 법령 | 학력 <br> 인정 <br> 관련 <br> 법령 | 학교의 <br> 설치/ <br> 시설에 <br> 관한 <br> 법령 | 교원 <br> 관련 <br> 법령 | 장학 <br> 관련 <br> 법령 | 교육 <br> 재정 <br> 관련 <br> 법령 | 평생 <br> 교육 <br> 관련 <br> 법령 | 학교 <br> 보건/ <br> 생활 <br> 관련 <br> 법령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0) | 59.0 | 320 | 48.0 | 16.0 | 30.0 | 43.0 | 6.0 | 37.0 | 13.0 | 16.0 | 100.0 |
| 전문 <br> 분야 |  |  |  |  |  |  |  |  |  |  |  |  |
| 법 학 | (76) | 59.2 | 34.2 | 55.3 | 13.2 | 31.6 | 35.5 | 5.3 | 32.9 | 14.5 | 18.4 | 100.0 |
| 교 육 | (24) | 58.3 | 25.0 | 25.0 | 25.0 | 25.0 | 66.7 | 8.3 | 50.0 | 8.3 | 8.3 | 100.0 |
| 소 속 |  |  |  |  |  |  |  |  |  |  |  |  |
| 대학 교수 | (34) | 50.0 | 38.2 | 41.2 | 23.5 | 38.2 | 38.2 | 5.9 | 41.2 | 11.8 | 11.8 | 100.0 |
| 정부 <br> 기관 | (9) | 55.6 | 0.0 | 66.7 | 0.0 | 55.6 | 55.6 | 0.0 | 44.4 | 22.2 | 0.0 | 100.0 |
| 연구원 | (30) | 56.7 | 36.7 | 56.7 | 3.3 | 20.0 | 60.0 | 0.0 | 30.0 | 10.0 | 26.7 | 100.0 |
| 대학 강사 | (11) | 72.7 | 36.4 | 45.5 | 27.3 | 36.4 | 9.1 | 0.0 | 54.5 | 18.2 | 0.0 | 100.0 |
| 석박사 <br> 과정 | (16) | 75.0 | 25.0 | 37.5 | 25.0 | 12.5 | 37.5 | 25.0 | 25.0 | 12.5 | 25.0 | 100.0 |

[표 42]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교육

## 기본법

[문23] 귀하께서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선택하신 (문22의 1순위) 의 주요한 문제점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 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 Base=12명 |  |
| :--- | :---: |
| 계 |  |
| 교육기본법/초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비함 | 16.7 |
| 교육기본법은 교육법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육관련법 <br> 의 모범역할을 해야 함 <br> (건전한 성의식 함양 등의 조항은 불필요함) | 50.0 |
| 모법에서 규정할 부분과 구체적 시행법률에서 규정할 부분에 <br> 대한 구분이 필요함 | 8.3 |
| 헌법 제31조 교육헌법 다음으로 전반적인 교육관련 사항을 포 <br> 괄할 수 있는 내용을 조항으로 구성해야 함 | 16.7 |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법 자체의 완결정 정의 조항 필요 | 8.3 |
| 미래 사회는 풍부한 상상력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서는 영재교 <br> 육보다는 보편적인 지덕육을 강조하는 교육기본법으로 거듭날 <br> 필요가 있음 | 8.3 |

[표 43]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교육

## 조직관련 법령

[문23] 귀하께서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선택하신 (문22의 1순위) 의 주요한 문제점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 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 Base=6명 | 계 |
| :--- | :---: |
| 관련 법률의 간소화 | 33.3 |
| 교원의 기본권 보장 및 독립성과 책임성 강조 | 33.3 |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필요함 | 33.3 |

[표 44]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교육 조직관련 법령
[문23] 귀하께서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선택하신 (문22의 1순위) 의 주요한 문제점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 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 Base=8명 | $\%$ |
| :---: | :---: |
| 교육기본법/초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비함 | 75.0 |
| 법률에서 지나치게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점과 하위 법령 <br> 에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개정해야 함 | 25.0 |

[표 45]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학력 인정 관련 법령
[문23] 귀하께서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선택하신 (문 22 의 1 순위) 의 주요한 문제점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 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 Base=4명 | $\%$ |
| :--- | :---: |
|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에 대한 학력인정을 전향적으로 인정해 <br> 야 함 | 50.0 |
| 학력 인정에 따라 2년제/3년제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체계 및 <br> 학교별 교육 체계의 보편적인 부분을 마련함 | 50.0 |

[표 46]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학교의

##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문23] 귀하께서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선택하신 (문22의 1순위) 의 주요한 문제점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 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 Base=2명 | $\%$ |
| :---: | :---: |
| 원활한 학교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건축법 등에 대한 특 <br> 례를 제정하는 법이 필요함 | 100.0 |

[표 47]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교원

## 관련 법령

[문23] 귀하께서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선택하신 (문22의 1순위) 의 주요한 문제점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 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 Base=8명 | $\%$ |
| :--- | :---: |
| 관련 법률의 간소화 | 25.0 |
| 교원관련 단일법전 제정 | 25.0 |
| 교원의 기본권 보장 및 독립성과 책임성 강조 | 25.0 |
| 한시적 특별법 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25.0 |

## [표 48] 교육관례 법령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조언

[문24]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 관계 법령 입법 체계 정비를 위해 조언을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Base=전체 | $\%$ |
| :--- | :---: |
| 교원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질과 <br>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7.1 |
| 교육 관계 법률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계의 전문가, <br> 교육법 전문가, 현장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 수렴에 충실해야 함 | 7.1 |
| 지금은 지나치게 변문욕례이고 형식적이다. 특히 의원 개인입법 <br> 의 경우에는 견제 장치가 더 필요함 | 7.1 |
| 교육 입법평가의 제도화 | 7.1 |
| 규정 자체의 명료화 | 7.1 |
| 법조문 간 통일성 확보 및 유사/중복 규정의 정비 | 7.1 |
| 교육 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 사회적 공감 <br> 대 형성이 필요함 | 7.1 |
| 법령의 체계적 정비 필요(일관성) | 7.1 |
| 법 정비시 개정 목표를 공교육 정상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두고 <br>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맞추어 갔으면 함 | 7.1 |
| 의원입법에서부터 체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의안 <br> 발의 단계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7.1 |
| 입법체계를 조화롭게 해야함 | 7.1 |
| 전수조사가 필요함 | 7.1 |
| 체계 정합성이 우선되어야 함 | 7.1 |


| Base=전체 | $\%$ |
| :--- | :---: |
| 교육기본법의 보편성과 교권확립의 대전제하에 소수의 영재를 <br> 위한 특별법이 다양성을 전제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br> 미래의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 중등, 고등 및 대학교육의 장이 <br> 필요함 | 3.6 |
| 법령 개정시 충분히 교육당사자들과 소통 및 의견 수렴과정을 <br> 거쳤으면 함 | 7.1 |
| 위임규정이 책임 떠넘기기식 규정 또는 법령 조항이 현 교육활 <br> 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고민 과정이 필요함 | 7.1 |
| 없 음 |  |

## 부록 3 : 전문가 조사 설문지

##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관련 전문가 조사

##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한국리서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관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 의 개인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
\begin{array}{ll}
\text { 주관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 \text { 책임 연구자: 차현숙 박사 } \\
\text { 수행기관 : (주)한국리서치 } & \text { 담당자: 김기주 부장/이태훈 과장 } \\
& \text { (02)3014-1074 }
\end{array}
$$

선문1. 귀하의 연구분야 또는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1. 법학 분야
2. 교육 분야

선문2. 귀하의 직업 또는 소속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대학 교수
2. 정부기관
3. 연구원
4. 대학강사
5. 석•박사과정

## 교육관계 법령의 현황

-입법체계 정비 연구 대상 법률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률 중 교육 관 련 법률 약 60 개

- 일반 분류
- 행정조직 관련 법률 3 건
- 학교관련 법률 48 건
- 사회교육 관련 법률 6건
- 학교보건 및 학교생활 관련 법률 4건
- 특성별 분류
- 특별법•특례법 약 13건
- 지원•진흥법 약 11건
- 기관 설치 근거법 약 16 건
-입법체계 정비 연구 대상 하위법령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 약 170 개
- 위임관계 정비 필요 법령 약 11건


##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

문1.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 니까?

1. 매우 문제가 있다
2. 문제가 있다 3. 보통이다 4. 문제가 없다
3. 전혀 문제가 없다

문2. 현행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의 문제점 중 아래 보기에 제시 해 드린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구 분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br> (1) | 문제가 <br> 있다 | 보통 <br> 이다 | 문제가 <br> 없다 | 전혀 <br> 문제가 <br> 없다 |
| :---: | :---: | :---: | :---: | :---: | :---: |
| (4) |  |  |  |  |  |
| (5) |  |  |  |  |  |$|$


| 구 분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br> (1) | 문제가 <br> 있다 | (2) | 보통 <br> 이다 | 문제가 <br> 없다 |
| :---: | :---: | :---: | :---: | :---: | :---: |
| 전혀 <br> (4) | 문제가 <br> 없다 <br> (5) <br> 5.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 존재 <br> - 명시적 위임근거 부재 법령 <br> - 폐지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br> 있는 법령 <br> -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br> 규정하고 있는 법령 <br> (1) | (2) | (3) | (4) | (5) |

문2-1. 문2의 보기에서 제시하지 못한 교육법의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세요.

##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 방안

※ 다음은 교육 관계 법령의 분야별•특성별 정비 방안입니다. 각 분야별•특성별 법령의 정비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본법 정비]

문3. "교육기본법을 정비하기 위해서 교육기본계획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4. "교육기본법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적합하 지 아니한 규정들(ex: 교육의 정보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 무의 전자화 등)을 관련 법령으로 통합하여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5. 교육기본법의 정비에 관련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 [특별법/특례법의 정비]

문6. "특별법/특례법 중 현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폐지하는 한시법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7. "시혜적/은사적 특별법/특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입법영향분석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없다
2) 필요없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문8. 위의 교육 관련 특별법•특례법령 입법체계 정비 방안 이외에 같은 분야에서 시급하게 정비할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 니다.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

문9.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이 현재 실효성이 있는지를 분석•평 가하여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10. 교육 관련 지원/진흥의 기준을 교육기본법에 세부적으로 규정 하여 법률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11. 교육 관련 지원/진흥의 기준을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여 법률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12. 이러한 방안 이외에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 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직접 기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정비]

문13. 교육 관계 법령 중 "자율성을 갖는 협의회 관련 사항을 별도 의 법률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14.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국립학교의 공공성과 연계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15. 이러한 방안 이외에 "교육 관련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정비" 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직접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 관련 사항]

문16. "법률에 명시적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개정시 위임근거 마련 혹은 폐지를 검토하는 정비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예시 1. 사도장학금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 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시 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 관한 건[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시 3. 1945 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대통령령 제 4401 호] 제 1 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 3 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 3 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17.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사항에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시. 임시교원양성소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 1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혀 필요없다
2) 필요없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문18．＂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 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것에 대해 얼 마나 동의하십니까？

예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 인적자원부령 제 900 호］
제 1 조（목적）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
제 77 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1）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2）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 80 조제 1 항의 후기학교 입 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개정 2011．3．18＞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문19．이러한 방안 이외에＂교육 관계 법령의 하위법령 제정 및 위 임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관계 법령의 세부 조례 정비 방안

문20. 다음은 교육 관계 법령의 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정비방안입니 다. 각 규정에 대한 정비방안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령 | 정비방안 | 전혀 <br> 타당 <br> 하지 <br> 않다 <br> (1) | 타당 <br> 하지 <br> 않다 <br> (2) | 그저 <br> 그렇다 <br> (3) | 타당 <br> 하다 <br> (4) | 매우 <br> 타당 <br> 하다 <br> (5) |
| :---: | :---: | :---: | :---: | :---: | :---: | :---: |
|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제1항 : 학교 는 교육과정을 운 영하여야 한다. |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 는 교육과정에 대하 여는 원칙적으로 법률 로 그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 <br> -세부적인 운영 및 실 시의 기준에 대하여 는 하위법령으로 규정 하도록 하는 위임 근 거를 명시 | (1) | (2) | (3) | (4) | (5) |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 라 설치된 '교육과 정심의회'의 경우 학교의 종류를 규 정하고 있는 조항 이며 별도로 교육과 정심의회를 둔다는 위임규정이 아님. | -교과과정을 정하는 것 은 교육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 의 근거를 법률에서 갖추도록 위임관계를 명확히하는 것이 바람 직함 | (1) | (2) | (3) | (4) | (5) |


| 해당 법령 | 정비방안 | 전혀 <br> 타당 <br> 하지 <br> 않다 <br> (1) | 타당 <br> 하지 <br> 않다 <br> (2) | 그저 <br> 그렇다 <br> (3) | 타당 <br> 하다 <br> (4) | 매우 <br> 타당 <br> 하다 <br> (5) |
| :---: | :---: | :---: | :---: | :---: | :---: | :---: |
| 고등교육법 제5조 학교의 지도•감독 에 필요한 관련 자 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 면서 그 범위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등교 육법 시행령 제 18 조는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 상황등 국가 의 교육정책 수립 에 특히 필요한 통 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자료제출 규정으로 법 개정시 지도•감독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 료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 (1) | (2) | (3) | (4) | (5)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는 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학위취소는 학위보유 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항을 주므로 모법 의 위임관계를 명확 히 할 필요가 있음 | (1) | (2) | (3) | (4) | (5) |

문21. 다음의 현행 교육관계 법령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 다고 보십니까?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br> (1) | 문제가 <br> 있다 <br> (2) | 보통 <br> 이다 <br> (3) | 문제가 <br> 없다 <br> (4) | 전혀 문제가 없다 (5) |
| :---: | :---: | :---: | :---: | :---: | :---: |
| 1) 교육기본법 | (1) | (2) | (3) | (4) | (5) |
| 2) 교육조직관련 법령 <br>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법 등 | (1) | (2) | (3) | (4) | (5) |
| 3) 학교 교육관련 법령 <br> - 유아교육법,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 법 등 | (1) | (2) | (3) | (4) | (5) |
| 4) 학력 인정 관련 법령 <br>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 (1) | (2) | (3) | (4) | (5) |
| 5)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br>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 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시 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한 특례법 등 령•조례로 위임된 사항 을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 (1) | (2) | (3) | (4) | (5) |
| 6) 교원 관련 법령 <br>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 무원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대 | (1) | (2) | (3) | (4) | (5) |


| 구 분 | 매우 <br> 문제가 <br> 있다 <br> (1) | 문제가 <br> 있다 <br> (2) | 보통 <br> 이다 <br> (3) | 문제가 <br> 없다 <br> (4) | 전혀 <br> 문제가 <br> 없다 <br> (5) |
| :---: | :---: | :---: | :---: | :---: | :---: |
| 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 한 특별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국사 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 법 등 |  |  |  |  |  |
| 7) 장학관련 법령 <br>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 (1) | (2) | (3) | (4) | (5) |
| 8) 교육 재정 관련 법령 <br>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 (1) | (2) | (3) | (4) | (5) |
| 9) 평생교육 관련 법령 <br>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평생 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등 | (1) | (2) | (3) | (4) | (5) |
| 10) 학교보건/생활관련 법령 <br>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 (1) | (2) | (3) | (4) | (5) |

문22.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시급한 순서대로 3 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begin{array}{lll}\text { 1) 교육기본법 } & 2) \\ \text { 2교육조직관련 법령 } & 3) \text { 학교 교육관련 법령 }\end{array}$
4) 학력 인정 관련 법령
5) 학교의 설치/시설에 관한 법령
6) 교원 관련 법령
7) 장학관련 법령
8) 교육 재정 관련 법령
9) 평생교육 관련 법령
10) 학교보건/생활관련 법령

문23. 귀하께서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선택하신 문22의 1순위의 주요한 문제점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24.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 계 정비를 위해 조언을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 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1）현재＂교육（教育）＂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단어로서 영어의＇education＇， 독일어의＇Erziehung＇，프랑스어의＇éducation＇은 다 같이 라틴어의＇educatio＇에서 유래 한 것으로 빼낸다는 의미와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부적 능력을 개발 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두산백과사전，교육，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 $=1065539$ \＆mobile\＆categoryId $=200000288$（2012．3．4．검색）참조．
    2）김윤섭，한국교육법，한올출판사，2003，19면．

[^1]:    4) 공병호, 교육법제의 전개와 그 평가, 한국교육사학 14호, 2001, 14면.
[^2]:    5）공병호，앞의 글， $15-16$ 면；안기성，교육법 체제의 변천사，교육법학연구 11 ，대한 교육법학회，1999，179－183면．

[^3]:    6) 안기성, 앞의 글, 184 면.
    7) 공병호, 앞의 글, 17-20면; 안기성, 앞의 글, 185-189면.
[^4]:    9）공병호，앞의 글，21－22면．

[^5]:    10) 공병호, 앞의 글, 23 면.
    11) 안기성, 앞의 글, 196면.
[^6]:    13) 정종섭,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601-604면.
[^7]:    26) 이형석, 앞의 논문, 72-74면.
    27) 1992. 11. 12. 89헌마 88.
[^8]:    31）법제처，교육기본법 해설，2011．9．，17－18면．

[^9]:    37) 이 절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 중에서 특히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10]:    39）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1 만 1060 개의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사서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서 학교도서관은 있으나 도서관에 사서가 724 명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고，이에 대하여 법을 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경기일보，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너무 적다，2012년 6월 21 일자，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333 참조．
    40）이경희 외 3 인，과학기술혁신관련 법률의 조사•분석 및 효율적 법체제 운영방안 연구，과학기술부，2005，131면．

[^11]:    41) 전진영,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 8 권제 2 호, 한국정당학회, 2009, 56-60면.
[^12]:    4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07, 381-382면.
    44) 뉴시스, '서울대 법인화법' 헌재서 치열한 공방, 2012. 6. 14.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554806 참조(2012년 9월 14일 검색)
    45) 한국경제, 외형만 ‘법인 서울대'‥자율성 강화 '미지수', 2012. 6. 10. http://www.hankyung.com/ news/app/newsview.php?aid=2012061055231 참조(2012년 9월 14일 검색)
[^13]:    4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일반현황 참조. http://www.kcue.or.kr/index.htm (2012. 10.3. 검색)
[^14]:    48）임시교원양성소의 경우 현재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 등 몇몇 대학교의 사범대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현직 교원의 타과목 전환배치을 위한 과정 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체 교원 정원 운영과의 관계 정립 등 정책적 결정이 필 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15]:    49）임시교원양성소의 경우 현재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 등 몇몇 대학교의 사범대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현직 교원의 타 과목 전환 배치를 위한 과 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체 교원 정원 운영과의 관계 정립 등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50）고등교육법 제 46 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수요• 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 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51）교육기본법 제 28 조（장학제도 등）（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지급받 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2호，대한교육법학회，2009，111면．
    62）박영도，앞의 책，346－347면．

[^17]:    72) 이형석, 앞의 논문, 2011, 200면.
    73) 정종섭, 앞의 책, 2006, 612면.
    74) 하봉운, 지방분권시대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과 과제, 교육비평 제 27 호, 교육비평, 2010, 24-26면.
